

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V

- 조선귀족과 중추원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V

초판 1쇄 발행 2008년 12월 1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련사료집 IV

- 조선귀족과 중추원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 간 사

옛사람들은 역사를 ‘거울[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 이름에 ‘감(鑑)’이라는 글자를 붙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인식하여 후세 사람들의 경계거리가 되기를 기대했던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지난 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분명히 밝혀 국민 대중과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하자는 우리 위원회 활동 목적은 서로 그 끈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3년 반 동안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 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크게 세 시기, 즉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를 제1기,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를 제2기,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를 제3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특위가 좌절한 후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증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또한 제1기 조사 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두 권의 사료집도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에 힘써서 대체로 금년 말까지 조사대상자 선정을 매듭짓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의 계획대로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작년에 이어 제2기에 해당하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를 중심으로 모두 5권의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의 첫 번째 책(제3권)에는 조선총독의 훈시(訓示)와 유고(諭告), 치안유지법령, 주요 경제기구와 제도, 조선교육령과 시학관제도, 언론계의 상황과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조선인의 서간 등을 수록했습니다. 제4권에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던 ‘조선귀족’의 약력 자료와 관련 단체,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였던 총독부 중추원의 회의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5권에는 일제가 편찬했던 조선반도사 원고 일부,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 관련 자료를 넣었습니다. 제6권에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실시한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인 친일파 양성책에 놀아난 국민협회·동민회·대정친목회 등 주요 친일단체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권에는 중국·일본·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 해외 조선인 사회의 친일 단체와 인물에 대한 자료를 끓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민족의 과거 속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 모두가 겪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다섯 권의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려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등이다.
다만, 일제 당국이나 일본인이 주변민족을 비하하고 자민족을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오늘날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국왕, 일본, 조선, 중국, 일본어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차례

* 발간사	4
* 해제 : '조선귀족'과 중추원 파악의 기본자료	15

1부

I. 조선귀족 개관

1. 이왕가(李王家) 외척(外戚) 계보도 55
2. 조선귀족의 약력 60
3. 조선귀족 관련 기타자료 147
 - 1) 조선인 수작 표준 난정(難定)(기사) 147
 - 2) 귀족론(사설) 147
 - 3) 조선귀족(사설) 149
 - 4) 곤궁한 조선귀족, 창경원 매각을 책동(기사) 152
 - 5) 조선귀족(1944) 152

II. 조선귀족의 단체

1. 조선귀족회(朝鮮貴族會) 159
 - 1) 귀족회 조직(기사) 159
 - 2) 망국귀족회(기사) 159
 - 3) 조선귀족회(사설) 159
 - 4) 귀족과 삼립경영(기사) 161
 - 5) 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 161
 - 6)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165
 - 7) 무산군 소재 귀족회 소유 임야 경영방침 보고 172

8) 귀족회 모범립에 관한 건	173
2. 조선임업조합 보식원(普殖園, 朝鮮普殖園組合)	175
1) 보식원 설립 관련기사	175
2) 보식원의 사업과 경영 관련기사	176
3) 한창수(韓昌洙), 삼립효용과 보식원	179
3. 창복회(昌福會)	185
1) 조선귀족 구제금 사용방도 결정(기사)	185
2) 귀족구제재단 창복회 사무개시(기사)	185
3) 전(前) 종로경찰서 청사 창복회에서 대부(貸付) 요청(기사)	186
4)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 진행상황 보고	186
5) 교부금 지급의 건	188
6)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상황 보고의 건	191
7) 귀족보호자금으로 궁민구제설 대부(기사)	198
8) 보호받는 까닭에 도리어 나태생활(기사)	199
9) 창복회 폐쇄설(시평)	199
4. 동요회(同耀會)	201
1) 동요회 설립 관련기사	201
2) 국방현금 1만 원 현납 관련기사	203
3) 동요회의 동향(1937~1938)	205

2부

III. 중추원회의 의사록 · 담신서 발췌

1. 1930년 9월 25~27일, 제10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09
1) 사이토(齋藤) 총독 훈시	209
2) 참의 강필성(姜弼成)	210
2. 1931년 9월 7~9일, 제11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12
1) 우가키(宇垣) 총독 훈시	212
2) 참의 선우순(鮮于鍾)	213
3) 참의 김명준(金明濬)	214

- 4) 우가키(宇垣) 총독 답변 215
3. 1932년 3월 3~4일, 제12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17
- 1) 우가키 총독 훈시 217
 - 2) 참의 선우순(鮮于鏞) 218
 - 3) 참의 박종렬(朴宗烈) 219
4. 1932년 9월 19~20일, 제13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21
- 1) 우가키 총독의 훈시 221
 - 2) 참의 유진순(劉鎮淳) 223
 - 3) 참의 선우순(鮮于鏞) 223
5. 1933년 7월 18~19일, 제14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225
- 1) 우가키 총독 훈시 225
 - 2) 참의 유태설(劉泰弼) 226
 - 3) 참의 장대익(張大翼) 229
6. 1934년 4월 26~27일, 제15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230
- 1) 우가키 총독 훈시 230
 - 2) 참의 김명준(金明濬) 231
 - 3) 참의 최연국(崔演國) 232
 - 4) 참의 윤갑병(尹甲炳) 233
 - 5) 참의 이명구(李明求) 234
 - 6) 참의 한상룡(韓相龍) 235
 - 7) 참의 최윤주(崔允周) 236
 - 8) 참의 박종렬(朴宗烈) 237
 - 9) 참의 박희옥(朴禧沃) 238
 - 10) 참의 장직상(張稷相) 239
 - 11) 참의 서병조(徐丙朝) 240
7.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242
- 1) 우가키 총독 훈시 242
 - 2) 참의 한규복(韓圭復) 244
 - 3) 참의 현현(玄懸) 245
 - 4) 참의 박상준(朴相駿) 246
 - 5) 참의 신희련(申熙璉) 247
 - 6) 참의 원덕상(元惠常) 248

- 7) 참의 김사연(金思演) 249
 8) 참의 유태설(劉泰禹) 251
 9) 참의 박철희(朴喆熙) 252
 10) 참의 최린(崔麟) 254
 11) 참의 어담(魚潭) 255
8.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256
- 1) 참의 김병규(金炳奎) 256
 - 2) 참의 신희련(申熙璉) 258
 - 3) 참의 김사연(金思演) 260
 - 4) 참의 유태설(劉泰禹) 261
 - 5) 참의 어담(魚潭) 262
 - 6) 참의 한규복(韓圭復) 263
 - 7) 참의 정관조(鄭觀朝) 265
 - 8) 참의 정대현(鄭大鉉) 266
 - 9) 참의 장대익(張大翼) 267
 - 10) 참의 이경식(李敬植) 269
 - 11) 참의 엄준원(嚴俊源) 271
 - 12) 참의 박용구(朴容九) 271
 - 13) 참의 정영모(鄭領謨) 273
 - 14) 참의 이진호(李軫鎬) 276
 - 15) 참의 서병조(徐丙朝) 277
 - 16) 참의 이택규(李宅珪) 279
 - 17) 참의 최린(崔麟) 281
 - 18) 참의 박종렬(朴宗烈) 283
 - 19) 참의 최양호(崔養浩) 284
 - 20) 참의 오태환(吳台煥) 286
9. 1937년 6월 7~8일, 제18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288
- 1) 참의 이진호(李軫鎬) 288
 - 2) 참의 유진순(劉鎮淳) 289
 - 3) 참의 황종국(黃鍾國) 292
 - 4) 참의 신석린(申錫麟) 293
 - 5) 참의 최남선(崔南善) 295
 - 6) 참의 유정수(柳正秀) 297

- 7) 참의 노영환(盧泳煥) 299
 8) 참의 안종철(安鐘哲) 301
 9) 참의 이교식(李敎植) 302
 10) 참의 한규복(韓圭復) 305
 11) 참의 조성근(趙性根) 307
 12) 참의 최지환(崔志煥) 309
 13) 참의 유태설(劉泰禹) 311
 14) 참의 박희옥(朴禧沃) 314
 15) 참의 이승우(李升雨) 316
 16) 참의 죄린(崔麟) 317
10. 1938년 5월 20~21일, 제19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319
- 1) 참의 조희문(趙羲聞) 319
 2) 참의 석명선(石明瑄) 319
 3) 참의 서병조(徐丙朝) 322
 4) 참의 김윤정(金潤晶) 324
 5) 참의 인창환(印昌桓) 325
 6) 참의 황종국(黃鍾國) 326
 7) 참의 김명준(金明濬) 329
 8) 참의 박영철(朴榮喆) 331
 9) 참의 원덕상(元德常) 332
 10) 참의 정난교(鄭蘭教) 333
 11) 참의 김관현(金寬鉉) 334
 12) 참의 이종섭(李鍾燮) 335
 13) 참의 장직상(張稷相) 337
 14) 참의 현현(玄愼) 339
 15) 참의 김사연(金思演) 343
 16) 참의 한규복(韓圭復) 344
 17) 참의 김상형(金相亨) 345
 18) 참의 노영환(盧泳煥) 347
 19) 참의 이근수(李瑾洙) 348
 20) 참의 이승우(李升雨) 350
 21) 참의 최지환(崔志煥) 351
 22) 참의 유진순(劉鎮淳) 353

- 23) 참의 이은우(李恩雨) 354
- 24) 참의 박희옥(朴禧沃) 355
- 25) 참의 최준집(崔準集) 356
11. 1940년 10월 24~25일, 제21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359
- 1) 참의 김한목(金漢睦) 359
 - 2) 참의 김관현(金光副臣, 가네미쓰 후쿠신) 362
 - 3) 참의 김진수(金松晋洙, 가나마쓰 신슈) 364
 - 4) 참의 이기찬(李基燦) 365
 - 5) 참의 방의석(方義錫) 367
 - 6) 참의 장직상(張稷相) 368
 - 7) 참의 박상준(朴澤相駿, 호자와 소슌) 372
 - 8) 참의 김명준(金田明, 가네다 아키라) 374
 - 9) 참의 홍치업(南陽致業) 376
 - 10) 참의 서병조(徐丙朝) 378
 - 11) 참의 손재하(廣原平成) 381
 - 12) 참의 김경진(金慶鎮) 382
 - 13) 참의 김영진(金英鎮) 388
 - 14) 참의 장현근(張閻憲四郎, 하리마 겐지로) 390
 - 15) 참의 최준집(崔準集) 394
 - 16) 참의 김신석(金信錫) 398
 - 17) 참의 김기홍(金川基鴻) 403
 - 18) 참의 이경식(李敬植) 404
 - 19) 참의 유태설(劉泰禹) 406
 - 20) 참의 김상회(金尙會) 410
 - 21) 참의 현준호(玄俊鎬) 415
 - 22) 참의 김상형(金相亨) 418
 - 23) 참의 정교원(鄭喬源) 423
 - 24) 참의 김사연(金思演) 425
 - 25) 참의 조병상(夏山茂) 426
12. 1941년 6월 10~11일, 제22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431
- 1) 참의 장현근(張閻憲四郎, 하리마 겐지로) 431
 - 2) 참의 이경식(李敬植) 433

- 3) 참의 김진수(松宮晋洙) 435
 4) 참의 하준석(河本駿錫) 435
 5) 참의 김정석(金山韶能) 437
 6) 참의 김관현(金光副臣) 442
 7) 참의 정난교(海平蘭敎) 445
 8) 참의 김상형(金子相亨) 446
 9) 참의 장용관(安本龍官) 449
 10) 참의 박기양(江原基陽) 452
 11) 참의 주영환(本城秀通) 453
 12) 참의 유태설(邦本泰高) 454
 13) 참의 홍치업(南陽致業) 458
 14) 참의 문명기(文明琦一郎) 462
 15) 참의 최준집(丸山隆準) 463
 16) 참의 한규복(井垣圭復) 466
 17) 참의 유만겸(俞萬兼) 468
 18) 참의 정교원(鳥川僑源) 471
 19) 참의 김상회(豊原以尙) 474
 20) 참의 방의석(方義錫) 476
 21) 참의 조병상(夏山茂) 477
 22) 참의 김경진(金子典幹) 479
 23) 참의 최재엽(高山在燁) 481
 24) 참의 김사연(金思演) 482
 25) 참의 이병길(李丙吉) 484
13. 1942년 6월 29~30일, 제23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486
- 1) 참의 신석린(平林麟四郎) 486
 2) 참의 한규복(井垣圭復) 487
 3) 참의 윤갑병(平沼秀雄) 488
 4) 참의 고원훈(高元勳) 489
 5) 참의 홍종국(德山善彦) 490
 6) 참의 김연수(金季洙) 492
 7) 참의 김화준(金海化俊) 494
 8) 참의 김태집(金井泰漸) 495
 9) 참의 김원근(金海元根) 497

- 10) 참의 이종덕(江本鍾惠) 498
- 11) 참의 박지근(松山清) 499
- 12) 참의 차남진(德山南鎮) 500
- 13) 참의 이갑용(大田一夫) 501
- 14) 참의 최형직(佳山定義) 502
- 15) 참의 이승구(三島承一) 504
- 16) 참의 권덕용(田原德龍) 505
- 17) 참의 조상옥(古山尙鉉) 507
- 18) 참의 이익화(西原翊華) 508

IV. 기타 중추원 관계 자료

- 1. 중추원 개혁에 관한 의견서 513
- 2. 중추원 관제 개정에 관한 참고자료(1933) 530
- 3. 복면생(覆面生), 중추원 지방 참의 평판기 600
- 4. 중추원과 참여관 제도의 개폐(기사) 611
- 5. 일파생(一波生), 조선총독의 자문기관 중추원 해부 612

* 찾아보기 619

해제： ‘조선귀족’과 중추원 파악의 기본자료

1부 : 심재욱(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2부 : 이승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관)

1부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파악을 위하여

‘조선귀족’이란 일제가 자신들의 ‘화족제도(華族制度)’와 유사한 제도를 강점 직후 식민지 조선에 실시함으로써 ‘창출(創出)’된 일단의 ‘친일인사’들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선귀족 개개인의 친일 행각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연구가 그 주를 이루다가 최근 들어 조선귀족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책의 1부는 ‘조선귀족’ 개개인에 대한 약력 및 이들에 대한 총독부의 평가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조선귀족약력(朝鮮貴族略歷)』과 이들이 결성한 단체들인 ‘조선귀족회’, ‘창복회(昌福會)’ 및 ‘동요회(同耀會)’ 등과 관련된 조선총독부 문서 및 당시의 신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은 ‘조선귀족회’ 및 그 사업으로 전개된 ‘보식원(普殖園)’ 관련 신문기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1920년대 후반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한편 이들의 활동이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1910년대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무단통치’하에서 한글신문으로서 유일하게 발간된 『매일신보』에는 이들 조선귀족과 관련된 다수의 사설 및 기사들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당시 이들의 활동 내용 및 일제의 지향점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활동에 대한 기사는 그 빈도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1929년 창복회 결성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조선귀족들은 일정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들 조선귀족의 활동이 일정한 침체기에 있었던 1920년대 후반기 이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

및 지원,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조선귀족’의 창출과 일제의 지향

1910년 8월의 강점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진행된 조선에 대한 침략을 일단락 맺은 일제는 이후 이른바 ‘무단통치’라 불리는 강압적인 식민지배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강점에 협조적이었으며 조선사회의 ‘최상위 계층’의 인사들에 대해 논공행상을 단행함으로써 지배정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 방책으로 삼았다.¹⁾ 즉 1910년 10월 7일 76명의 조선인에게 자신들의 화족과 유사하게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의 작위를 수여하여 ‘창출’한 ‘조선귀족’이 그것이다.

이 ‘조선귀족’은 강점 직후인 1910년 8월 29일 황실령(皇室令) 제14호로 공포된 「조선귀족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한일병합조약문(韓日併合條約文)」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강점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²⁾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勳功)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恩級)을 부여한다.

「조선귀족령」에 나타난 수작(授爵) 기준은 제2조에 언급된 ① ‘황족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왕족, ② 구한국 시기 유력한 문벌 관계자, ③ 강점에 ‘기여’한 인물 등의 세 가지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②와 ③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사들을 위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강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일진회(一進會)’의 이용구가 당시 세간의 기대와 달리 수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6·7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사자를 비롯하여 ‘부인,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장남 또는 적출(嫡出) 남자, 혹은 서장자(庶長子) 및 배우

1)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한 『매일신보』에 게재된 ‘조선귀족’에 대한 ‘권고성’ 사설들의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졸고, 「1910년대 매일신보의 식민지배론」, 『식민지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2003). 한편 조선총독부는 『매일신보』를 통해 ‘조선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위한 ‘권고성’ 사설을 게재하였다.

2) 일제의 국권침탈 관련 각종 조약문의 내용, 조선귀족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내용은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I (2007)에 번역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자’ 등이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조선귀족에는 수작자 이외에 이 조항에 해당하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 이들이 ① 정신질환, ② 귀족 체면의 손상, ③ 국적 상실, ④ 금고(禁錮)나 금옥(禁獄) 이상의 형, ⑤ 충순(忠順)을 결(缺)하는 행위, ⑥ 궁내 성(宮內省) 명령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예우정지’ 혹은 ‘실작(失爵)’을 당하는 제재규정도 명시되어 있다.³⁾

이와 같은 「조선귀족령」에 근거하여 일제는 강점 직후 곧바로 ‘조선귀족’의 선발 심의에 착수하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인사들은 바로 구한국시대의 전(前) 내각대신들이었다. 즉 강점 이전 시기에 조선에서 일제의 세력 확장 및 강점에 협조적이며 동시에 유력한 문벌 출신들이 대다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우선적으로 수작 선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제 측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손쉬운 작업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1910년 10월 8일 총독부에서 거행된 수작식을 통해 아래와 같은 76명의 ‘조선귀족’이 탄생하였다.

* 1910년 10월 8일 수작자 명단⁴⁾

공작 : 대상 없음

후작 : 박영효(朴泳孝), 윤택영(尹澤榮), 이재각(李載覺), 이재완(李載完), 이해승(李海昇), 이해창(李海昌)

백작 : 민영린(閔泳璘), 이완용(李完用), 이지용(李址鎔)

자작 : 고영희(高永喜), 권중현(權重顯), 김성근(金聲根), 김윤식(金允植), 민병석(閔丙奭), 민영규(閔泳奎), 민영소(閔泳韶), 민영휘(閔泳徽), 박재순(朴齊純), 송병준(宋秉畯), 윤덕영(尹德榮), 이근명(李根命), 이근택(李根澤), 이기용(李基容), 이병무(李秉武), 이완용(李完鎔), 이용직(李容植), 이재곤(李載崑), 이하영(李夏榮), 임선준(任善準), 조민희(趙民熙), 조중응(趙重應)

남작 : 김가진(金嘉鎮), 김병익(金炳翊), 김사준(金思濬), 김석진(金奭鎮), 김영철(金永哲), 김종한(金宗漢), 이주영(李胄榮), 김춘희(金春熙), 김학진(金鶴鎮), 김사철(金思轍), 남정철(南廷哲), 민상호(閔商鎬), 민영기(閔泳綺), 민영달(閔泳達), 민종묵(閔種默), 민형식(閔炯植), 박기양(朴箕陽), 박용대(朴容大), 박제빈(朴齊斌), 성기운(成岐運),

3) ‘조선귀족’에 대한 제재규정은 제8·13·14·16·17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8조에서는 조선귀족들의 부적격 행위를 심사·규제할 심사기구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1912년 3월 1일 「조선귀족에 관한 심사위원회 규정」(조선총독부령 제17호, 『조선총독부관보』 제451호, 1912년 3월 1일)을 공포하여 조선총독 직속하에 ‘조선귀족심사위원회(朝鮮貴族審查委員會)’의 설치를 법제화하였다.

4) 「授爵, 故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第38號, 1910년 10월 12일.

유길준(俞吉濬), 윤용구(尹用求), 윤웅렬(尹雄烈), 이건하(李乾夏), 이근상(李根湘), 이근호(李根鶴), 이봉의(李鳳儀), 이용원(李容元), 이용태(李容泰), 이윤용(李允用), 이재극(李載克), 이정로(李正魯), 이종건(李鍾健), 장석주(張錫周), 정낙용(鄭洛鎔), 정한조(鄭漢朝), 조경호(趙慶鎬), 조동윤(趙東潤), 조동희(趙同熙), 조정구(趙鼎九), 조희연(趙羲淵), 최석민(崔錫敏), 한규설(韓圭禹), 한창수(韓昌洙), 홍순형(洪淳馨)

물론 일부 인사들은 제외되어야 하겠지만, 이 명단을 통해 결국 일제가 수작의 기준으로 가장 우선시 한 것은 역시 '강점에 기여한 공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을사늑약에 관계하여 이후 '을사오적'이라 불린 이지용, 이근택, 이하영, 이완용, 권중현과 강점 조약에 관계한 박재순,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웅, 이재곤, 송병준 등과 강점 당시 궁중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민병석, 윤덕영 등이 선정되었음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외의 대다수 인물들 역시 일제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적극적이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수작에 거부감을 표현한 인사들도 있었다. 한규설, 조정구, 김석진, 윤용구, 민영달, 조경호, 홍순형 등과 같은 인사들은 '일본의 벼슬아치 되기를 외면'하였다고 한다.⁶⁾

한편 일제는 수작과 더불어 이들에게 거액의 은사금(恩賜金)을 주어 이들에게 '명예와 부귀'를 동시에 누리게 하였다. 이들에게 수여된 은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강점 당시 조선귀족에게 지급된 은사금⁷⁾

	은사금(円)	성명
후작	504,000	윤택영
	336,000	이재완
	280,000	박영효
	168,000	이해창, 이해승, 이재각

5) 한편 조선귀족의 등급을 결정지은 기준은 강점조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이왕가(李王家)의 종친(宗親)·척족(戚族)'은 후작·백작을, 제5조에 따른 '보호정치시대부터 병합 전에 걸쳐 당시 보국(輔國) 정1품(正一品), 종1품(從一品), 훈1등(勳一等), 칙임1등(勅任一等) 이상 급에 속하는 지위'에 있던 자들에게는 자작·남작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한다. (『齋藤實文書』842; 「조선인에 대한 수작에 관한 의견」,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44쪽에서 재인용)

6) 「(秘)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929. 이들은 총독부의 '계속되는 강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작하지 않았다고 한다(宋相燾, 『騎驢隨筆』, 198쪽).

7) 「(秘)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929; 강동진, 앞의 책, 146쪽 참조.

백작	150,000	이완용
	120,000	민영린
	100,000	이지용
자작	100,000	고영희, 송병준, 민병석, 박제순, 조중응, 이용직
	50,000	윤덕영, 이재곤, 권중현, 이근명, 임선준, 민영규, 이하영, 김성근, 민영휘, 이근택, 민영소, 이병무, 김윤식
	30,000	이완용, 이기용
남작	50,000	조민희, 조희연
	25,000	한창수, 민상호, 이윤용, 박기양, 김사철, 민형식, 김종한, 남정철, 이용원, 민영기, 이봉의, 이건하, 이근호, 최석민, 이용태, 정낙용, 이정로, 김영철, 김학진, 박용대, 정한조, 이주영, 성기운, 김춘희, 장석주, 조동윤, 민종묵, 이재극, 이근상, 김사준, 김가진, 김병익, 조동희, 조경호, 윤웅렬(기록 없음)
	50,000	유길준(은사금만 수령)
	25,000	홍순형, 윤용구, 김석진, 한규설, 민영달, 조정구(수작 거부 & 실작자)

이 은사금은 강점 직후 발행한 3천만 엔의 5분리 국채증권으로서 지급되었다. ‘정부 인가 없는 양도 또는 저당’이 금지된 것으로서 원금은 5년 가치 50년 이내 상환되는 것이며 이자는 매년 3월과 9월에 조선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지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은사공채는 조선귀족의 경제면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당시 사채금리가 연 100~120%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액면 가격의 2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서 ‘50년 이내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원금은 받지도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매국증권’이라 경멸당했기에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낮았다는 시각들이 그것이다.⁸⁾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는 저당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사례로는,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김윤식 사후에 들통 난 사기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⁹⁾ 이는 은사공채가 분명하게 저당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에서는 어느 정도 담보로 기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은사공채가 조선귀족들의 경제적인 면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재력이 뒷받침되는 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경제력이 미약한 귀족들은 20년

8) 문정창, 『軍國日本朝鮮占領36年史』 상, 65쪽.

9) 이는 김윤식의 제자 조석구(趙錫九)가 김윤식 몰래 5천 원짜리 은사공채권을 빼내어 이를 담보로 한일은행 동대문지점에 가서 현금 3천 원을 대출하였다가 발각된 사건이다(「故金雲養先生의 恩賜公債券을 竊取」, 『毎日申報』, 1922년 3월 15일 3면).

대에 가서는 몰락하여 “처참한 지경에 빠져 들었다”고 한다.¹⁰⁾

이렇게 조선귀족을 창출한 일제가 이들을 통해 얻고자 했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자신들의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할 ‘친일세력’의 확보임은 분명하다. 즉 일제는 조선강점은 의병전쟁으로 대표되는 조선 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겪고 난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에 식민정책의 효과적인 선전과 이를 통한 식민지 사회의 안정화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일제는 민중들에게 식민지배의 시혜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역할을 조선귀족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이는 『매일신보』에 게재된 사설들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일제는 조선귀족제의 시행을 “서구의 근대적인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하여 그 시혜성과 근대성을 강조하면서, 위로는 ‘성은(聖恩)에의 감읍(感泣)’이라는 지배체제의 철저한 복종과 아래로는 식민정책의 혜택성을 상징하는 한 모델로서 ‘인민의 모범’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발전’과 ‘산업의 진흥’과 같은 사업에 투신함으로써 ‘인민의 모범’을 이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귀족부인들에게는 부인계의 모범을, 자제들에게는 학생·청년계의 모범을 이루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에 대한 요구는 수작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제와 부인들에게도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일제의 요구는 조선귀족을 통한 일제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¹¹⁾

2. 본서 1부의 구성과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1부는 『조선귀족약력』과 조선귀족들이 결성한 단체인 조선귀족회, 보식원, 창복회, 동요회 등과 관련된 문서나 신문 잡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조선귀족약력』에 할애되어 있다.

먼저 『조선귀족약력』은 『사이토문서(齋藤實文書)』에 포함된 문서로 현재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현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그 서문에서 “위정(爲政) 상에 얼마간의 참고”가

10) 조선총독부, 『施政25年史』, 1935, 658쪽. 한편 일제는 몰락하는 조선귀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1929년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재단법인 ‘창복회’를 조직하여 그 이자(매년 25만 원)를 가지고 가산정리, 자제교육, 가계궁핍 보조, 재액·질병·사망 등에 보조하였다.

11) 조선귀족에 대한 『매일신보』의 사설 내용 및 이들의 1910년대 활동에 대해서는 심재욱, 「1910년대 조선귀족의 실태」, 『史學研究』 76호, 2004 참조.

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이 아닌 통치자, 즉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작성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작성자나 작성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192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87쪽으로 이루어진 이 문서는 먼저 4면에 걸쳐 「이왕가외척약계(李王家外戚略系)」를 삽입하여 이들 조선귀족과 이씨조선 왕조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총 77명의 조선귀족 개개인의 본관, 가계, 약력, 성품과 세간의 평 및 자산 규모, 그리고 ‘실작(失爵)’, ‘습작(襲爵)’ 등과 같은 작위의 변경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초 『조선총독부관보』에 나타난 76명의 ‘조선귀족’ 중 본인이 ‘사작(辭爵)’하여 포함되지 않은 유길준이 남작으로 기술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작위의 승급이 이루어진 인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陞爵)’한 이완용과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작’한 송병준과 고희경이 있다. 또한 이완용의 둘째 아들 이항구가 새로이 남작을 수여 받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귀족약력』에 기재된 조선귀족의 명단 및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후작 : 이재완(사망→이달용(李達鎔)),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 이택영, 박영효, 이완용(李完用)

백작 : 이지용, 민영린, 송병준(사망→송종현(宋鐘憲)), 고희경

자작 : 이완용(李完鎔), 이기용, 박제순(사망→박부양(朴富陽)), 조중옹(사망→조대호(趙大鎬)), 민병석, 이용직(상실, 형별), 김충식(상실), 권중현, 이하영, 이근택(사망→이창훈(李昌薰)), 임선준(사망→임선재(任宣宰)), 이재곤, 윤덕영, 조민희, 이병무, 이근명(사망→이충세(李忠世)), 민영규(사망→민병삼(閔丙三)), 민영소(사망→민충식(閔忠植)), 민영휘, 김성근(사망→김호규(金虎圭))

남작 : 윤용구(辭爵), 홍순형(辭爵), 김석진(辭爵), 한창수, 이근상(사망→이장훈(李長薰)), 조희연(辭爵), 박제빈(사망→박서양(朴敍陽)), 성기운(사망→성주동(成周綱)), 김춘희(사망→김교화(金教華)), 조동희(예우정지), 박기양, 김사준(失爵), 장석주(사망→장인원(張寅源)), 민상호, 조동윤(사망→조중구(趙重九)), 최석민(사망→崔正源(崔正源)), 한규설(辭爵), 유길준(사작), 남정철(사망→남장희(南章熙)), 이건하(사망), 이용태(사망→이중환(李重桓)), 민영달(辭爵), 민영기, 이종건, 이봉의(사망→이기원(李起元)), 윤웅렬(사망, 失爵), 이근호(사망→이동훈(李東薰)), 김가진(습작 불능), 정낙용(사망→정두화(鄭斗和)), 민종묵(사망→민규현(閔奎鉉)), 이재극, 이윤용, 이정노(사망→이능세(李能世)), 김영철(사망→김영수(金英洙)), 이용원(사망→이원호(李原鎬)), 김종한, 조정구(辭爵), 김학진(사망→김덕한(金德漢)), 박용대,

조경호(返爵), 김사철, 김병익(사망, 승계 후 실작), 정한조(사망), 이주영(사망→○)
규식(李奎植), 민형식, 이항구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조선귀족약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들 조선귀족 개개인의 성품이나 세간의 평 등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귀족의 모습 및 그들의 친일행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이 문서가 참고를 하였다고 밝힌 1910년에 발간된 『조선귀족열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조선귀족열전』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출판된 것이라면, 『조선귀족약력』은 조선의 통치자 즉 조선총독의 정책추진을 위한 내부자료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 『조선귀족약력』은 귀족들의 수작배경, 가계, 자산 등이 기술되어 있기에, 그들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특히 이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당시 조선총독부 및 재조(在朝) 일본인이 지닌 인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조선귀족약력』에서 나타나는 귀족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는 일정한 사료 비판이 요구되어진다. 이는 작성 목적이 조선총독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였기에, 철저하게 지배당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재각의 경우 “방탕하여 도박을 좋아하고 매우 협량(狹量)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그 부인의 병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완용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행동하며 결단력이 있어 한번 마음을 정하면 강담강실(剛膽堅實) 즉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결행한다”고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자신들에 대한 협조 내지는 이용가치에 따라 차이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귀족약력』에서 나타나는 귀족 개개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귀족 관련 단체들에 대한 신문 잡지의 기사들 및 총독부 문서들은 조선귀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경제활동, 친일활동 등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지원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조선귀족회(이하 귀족회)는 일본의 화족회를 모방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수작 직후 조직된 ‘조선귀족관광단(朝鮮貴族觀光團)’¹²⁾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환영을 받고 화

12) 조선귀족관광단은 수작 직후 일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수작 당사자 일부와 그 부인들을 구성원으로 총독부의 지원하에 조직된 것으로 조선귀족이 행한 최초의 단체활동이었다. 조선귀족 20명과 동 부인 10여 명, 종자(從者)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귀족관광단’은 1910년 10월 23일 조선을 출발하여 17박 18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시찰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 귀족관광단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 파생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귀족관광단 일행이 행한 감상담의 내용을 통해 그 효과가 상당히 컸음이 확인된다(「新貴族의 謝恩使」(2면),

족회관에 초대를 받았던 경험을 모방하여 귀족회 조직과 귀족회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장선 인물은 조중응으로, 그는 ‘관광단’의 귀국 때 이미 그 초안을 작성한 상태였다.¹³⁾ 총독부와의 협의를 거쳐 1911년 9월 9일 대동구락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간부진은 회장 박영효, 부회장 민영휘, 후작이사 윤택영, 백작 이사 이완용, 자작이사 조중응, 남작이사 김종한·장석주 등이었다.¹⁴⁾ 이 귀족회를 중심으로 귀족들은 그 내부에서 친목 도모와 자제의 지식 계발 등을 목적으로 부속 구락부 신설, 기관지 발행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귀족회 자체 내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귀족회의 대표적인 활동은 일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일본왕실의 중요 행사 때마다 대표를 파견하는 일이었다. 귀족관광단을 필두로 하여 귀족회가 1910년대 파견한 귀족대표단 중 현재 확인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1911년 4월 : 조중응 – 귀족회 설립 보고
1911년 10월 : 이완용, 조중응, 박제순 – 천장절
1912년 8월 : 박영효, 이완용, 조중응, 장석주(각 작 대표) – 명치일왕 장례식
1912년 10월 : 고영희, 이용직 – 명치일왕 백일제
1914년 7월 : 이용직 – 소현왕후(명치왕후) 백일제
1915년 4월 : 조민희, 조동윤 – 소현왕후 1주기
1915년 6월 : 박영효, 이완용, 조중응 – 지구절(총독부 방문)
1915년 7월 : 송병준, 윤택영, 민영린, 민영소, 이배용, 한창수, 조동윤, 이근상 외 4명
– 명치일왕 3주기
1916년 10월 : 이용직 – 데라우치(寺内) 내각 성립 축하
1916년 11월 : 이완용, 민병석 – 입황태자식

한편, 귀족회의 경제활동 및 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식원

「貴婦人日本觀光」(3면), 『毎日申報』, 1910년 10월 15일). 한편 귀족관광단을 비롯한 ‘내지시찰단(內地視察團)’이 지니는 의의 및 효과에 대해서는 조성운의 「1910년대 日帝의 同化政策과 日本視察團－1913년 日本視察團을 中心으로」(『史學研究』 제80호, 2005)가 참조된다.

13) 「貴族會館創立」, 『毎日申報』, 1910년 11월 9일 2면. 조중응 이 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윤택영, 이완용, 김종한 장석주 등이었다.

14) 이후 총 2만 원을 각출하여 전 상공부(商工部) 건물을 매입·수리하여 1912년 1월 22일 발회식을 통해 귀족회관으로 삼았다(「貴族會의 發會式」; 「貴族會와 天恩」, 『毎日申報』, 1912년 1월 23일 2면).

(普植園)과 관련된 부분을 들 수 있다. 보식원은 귀족회가 총독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주도적으로 설립했으나, 형식상으로는 귀족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보식원조합에는 제한된 소수의 조선귀족들 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반 유자들도 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임업조합 보식원’ 혹은 ‘조선귀족단 보식원조합’ 등으로 불리는 보식원의 식림(植林)사업은 1913년 4월부터 박영효 외 7명이 1,000원씩 출자하여 설립한 원예연구회를 기초로 한다. 이후 여타의 조선귀족과 기타 인원이 참여하여 자본금 50만 원을 목표로 한 ‘조선귀족의 임업조합’으로 설립되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귀족 창출의 한 목적이었던 ‘일반의 모범’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10년대 『매일신보』 기사들에 의하면, 처음에 민병석, 송병준 등이 동대문 밖 홍수동(紅樹洞) 일대에 설치를 계획한 이후 보식원은 그 범위를 전국 각지로 확대하였다. 1915년 2월에는 해운대 일대의 동래군 지역에 자본금 10만 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식림을 계획한 것과, 5월에 시흥군 안양리 일대에 보식원을 설치한 것, 그리고 1917년 6월에 조선귀족회 보식원회총회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안을 만장 일치로 가결하여 충청북도 청주군에 묘포(苗圃) 설치, 전라남도 진도의 약 1,900여 정보의 토지에 보식원을 설치한 것 등이 그것이다.¹⁵⁾

또한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회령영림서장 → 조선총독, 1942.4.8)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귀족회와 보식원의 식림사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즉 1940년과 1942년 현재 귀족회는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에 ‘모범림’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모범림의 규모는 9,650여 정보로 당시 시가로는 28,950여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범림에서 1939~1940년 사이 약 18,5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이 확인된다. 한편 이 모범림을 포함한 부동산, 기타 동산 등 귀족회의 자산규모가 확인되는 점도 주목된다. 1940년 현재 귀족회는 포천군 소흘면(蘇屹面) 90,840여 평, 시흥군 신동면 66,960여 평, 과촌면 38,390여 평, 서이면 16,620여 평, 수원군 일왕면 20,630여 평, 성호·동탄면 22,390여 평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들 농장을 통해 같은 기간 모범림에서 생산되는 수익과 유사한 18,700여 원의 수입을 얻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귀족회의 주 수입원이 모범림과 농장 경영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동산 및 유가증권, 현금 등

15) 심재욱, 「1910년대 조선귀족의 실태」 참조.

16) 1910년대 확인되는 여러 지역의 보식원이 1940년대 들어 함경도 무산군 일대의 임야 소유로 변경된 것인지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자료발굴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을 포함하여 1940년 현재 총 52만 8,000여 원의 자산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 자료들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추후 계속적인 자료발굴이 요구되는 하나, 특정 시기라 할지라도 귀족회의 자산규모 및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창복회(昌福會)의 경우 몰락한 조선귀족의 구제와 품위유지를 위해 조선총독부가 1929년 9월 28일 설립한 단체이다. 주지하다시피 1910년대 후반 이후 조선귀족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창복회를 조직하였다. 설립 당시의 임원진 구성을 볼 때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가 이사장을, 총독부 내무국장과 재무국장이 이사를 담당했으며, 사무실이 조선총독부 내에 위치하고 있었음은 창복회가 총독부의 직접적인 경영 밑에 있었음을 확인케 해준다. 창복회를 통해 조선귀족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은 가산정리 및 귀족 자제의 교육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교부금의 항목을 두어 화재·질병·사망 등에 지급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교부금은 작위에 따라 그 액수에 차등을 두었는데, 후작 월 300원 이내, 백작 월 250원 이내, 자작 월 200원 이내, 남작 월 150원 이내에서 지급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창복회 관련 자료들의 내용은 1920년대 말 조선총독부가 조선귀족을 구제·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동요회(同耀會) 관련 자료는 당시 신문자료 위주로 되어 있다. 동요회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전쟁 수행을 찬양·선전하기 위해 조직된 다수의 친일협력단체 중 하나인데, 조선귀족들로만 구성되었다는 특성을 지닌다. 1937년 8월 25일 조선훌륭에서 “시국(時局)의 인식을 깊이하며 애국(愛國)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황운(皇運)을 부의(扶翼)함”이라는 주지 아래 창립총회를 개최한 동요회는 이사장에 후작 이병길(李丙吉), 이사에 자작 이홍묵(李鴻默), 박부양(朴富陽), 김호규(金虎圭), 남작 한상억(韓相億)의 간부진을 구성하였다. 수록된 자료를 통해 이들이 라디오 방송 등으로 ‘총후(銃後)’의 결속을 다짐하는 방송을 행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에 1만 원의 현금을 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의 1부는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조선귀족약력』과 같은 비공개 내부문서, 공문서 및 신문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귀족약력』의 경우 조선귀족 개개인의 가계, 경력, 서위, 공훈, 성격, 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조선총독부 내지는 재조(在朝) 일본인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귀족 전체 및 개개인의 분석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조선귀족회, 보식원, 창복회, 동요회 관련 자

료들을 통해, 비록 특정 시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조선귀족회들이 전개한 경제활동 및 그 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그들이 소유하였던 토지의 규모와 위치가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일제말 전시체제기에 보여준 조선귀족의 친일협력 활동에 주목한 점도 의미가 있다.

물론 1부에 수록된 사료들은 자료수집 상의 한계로 인해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친 조선귀족의 전체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처음으로 조선귀족과 관련된 사료집이 발간된다는 것은 향후 조선귀족 전체 및 개개인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2부 조선총독부 중추원 파악을 위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구성과 성격

중추원은 한일합병 직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합병 이후 일본의 헌법은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우리 민족의 참정권과 기본권도 실현되지 않았다. 조선총독은 정무총괄권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전일적으로 지배한 절대 권력자였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 민족의 어느 집단과도 권력을 분첨하려 하지 않았으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를 식민통치에 반영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서 그러한 역할의 정점에 있었다.

1) 1910년대 중추원과 찬의 · 부찬의

중추원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이하 관제) 공포로 설치되었다. 1910년대 중추원은 관제 “제1조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 총독에 속하여 조선총독의 자순(諮詢)에 응하는 바로 한다”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제2조 중추원의장은 정무총감으로 하고, 부의장 1인, 고문 15인, 찬의 20인, 부찬의 35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의 임기는 제한이 없었으며 “제7조 부의장과 고문에게는 연액 2,500원 이내를, 찬의에게는 1,200원 이내를, 부찬의에게는 800원 이내

를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상당한 경제적 대우가 주어졌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은 무단통치기로서 우리 민족의 정치·사회단체를 모두 해산하고 헌병경찰제를 통해 민족적·정치적 요구를 철저히 억압하였다. 이에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조직된 중추원 회의는 총독 훈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되었으며, 조선인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자문회의로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관제 규정과는 달리 1910년대 중추원은 자문기구의 성격보다 합병 과정에서 협력한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을 식민지 통치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였다. 1910년대 고문을 비롯해 중추원 의관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은 약 9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고문 15명은 모두 을사조약이나 정미7조약, 합병조약 체결에 앞장선 매국세력들로서 또한 일제에 의해 작위를 받은 귀족들이었다. 찬의·부찬의도 합병 과정에서 차관급, 국장급 내지 서기관급으로 재직하였던 인물 중에서 통감부시기 적극 협력한 친일경력 인물 내지 매국세력과 연계가 있었던 인물들을 주로 임용하였다.

중추원 찬의는 대한제국의 차관급 이하 관료로서 통감부시기에 일제에 적극 협력한 위치에 있던 인사들로서, 이후 일본 식민통치의 실질적 지지세력이 되었다. 중추원 부찬의 역시 대한제국 관료 중 일제에 협력하며 식민통치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가 발탁되었다. 중추원 찬의·부찬의는 이후 도지사나 참여관, 군수 등 총독부 고위관리로 임명되기도 했고, 역으로 총독부 관리의 퇴관(退官) 이후 예우에 해당하는 직위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초기의 중추원 찬의·부찬의는 한일합병 과정과 이후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1920~1930년대 중추원 참의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은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변화되었다. 특히 무단통치기에 전면적으로 억압되었던 우리 민족의 정치적 욕구를 일부 수용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중추원과 지방의 자문기구 정비를 시도하였다.

1921년 4월 26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개정을 통해 1910년대 중추원이 고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형식적 자문기구였던 것에 비해, 참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의사(議事) 심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였다.

개정된 관제에서 “제2조 부의장 1인, 고문 5인, 참의 65인”으로 규정하였다. 1910년 관제와 비교하여 고문이 15인에서 5인으로 줄은 대신 지위는 칙임대우에서 친임대우로 상

승했다. 찬의·부찬의를 없애고 참의로 통일하여 그 수를 55인에서 65인으로 증원했다. 참의 내부는 칙임관 대우와 주임관 대우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은 중추원 내에서의 역할과 권한에는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한 의결권을 지녔다. 칙임관급과 주임관급의 구분은 이전의 사회 경력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 관계에서 “제6조 부의장·고문·참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기제를 실시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임기제는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7조 부의장에게는 연액 4,000원 이내, 고문·참의에게는 3,000원 이내를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대우가 상승했다.

1920년대 중추원 참의는 대략 126명 정도였는데, 이 중 83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새로 발탁된 인물은 고위관리 경력자로서 일제에 대한 충성이 검증된 자들이었고, 또한 수작자의 후예(습작자), 친일 성향의 개화파 출신들이 주로 임용되었다. 그리고 국민협회, 동민회 등 대표적 친일단체의 간부, 친일 부호 등의 민간유력자가 발탁되었다.

1920년대 이후 중추원 참의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도지사 추천에 의한 지방대표 격의 참의가 임명된 것이다. 이들은 지방행정 자문기구였던 도 평의회(도회), 부 협의회(부회)와 면장, 금융조합장, 농회 간부 등의 경력을 거친 자들이었다. 도지사는 이들 후보자의 자세한 경력과 신상정보를 적어 한 도(道)에서 3~10명 정도의 후보자를 올려 총독의 추천을 거쳐 일본 내각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지방의 유력자·대표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에 참의가 되고자 총독부 고관이나 일본 내각의 고관 등을 찾아 수천만 원의 경비를 사용하며 중추원 참의 선임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관력(官歷)이 없는 지방의 민간 유력자들은 고등관(주임관 이상) 경력을 획득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하였다. 또한 중추원 참의 임명은 조선인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참의로서 회의에 참가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급정보를 획득하고 인맥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확대시켜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특히 지방대표 참의들은 지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벗어나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30~1940년대에는 중추원의 기본 성격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제는 중추원 참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1930년 9월 사이토 총독은 훈시에서 “중추원은 반도 현 정세의 총력기구로 기능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을 이루하며 산업과 교육의 진작에 힘쓸 것이며 인심(人·心)의 안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다. 이어 부임한 우가키(宇

垣) 총독 역시 “총독부의 통치 목표인 문교진흥, 산업진흥, 민력함양을 이루함에 있어 중추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중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일선기관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중추원 참의들은 ‘황군위문단’을 조직해 북중국 전선을 돌며 선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시기 중추원 고문 윤치호를 비롯한 여러 참의들이 침략전쟁 및 황민화정책 선전, 그리고 징병·징용 등의 강연·선전에 참여하였다.

1930~1940년대 임명된 참의는 195명으로서, 특히 민간 유력자로서 지방대표 참의가 된 자가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했다. 이는 민간유력자를 적극적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선전에 동원하려는 의도에서였으며, 1920년대 지방의 도 평의회, 부회 등 식민통치에 협력 순응하며 성장한 지방세력을 포섭하여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2. 1930~1940년대 중추원회의 의사록 · 답신서

중추원의 기본 활동은 총독의 자문기구로서 총독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다. 1921년 관제 개정 이후에는 매년 며칠씩 정례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실상은 형식적 측면이 강해서 조선민중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후반 들어 중추원 개혁론이 제기되었다.

살펴볼 1930년부터 1942년까지의 중추원회의 의사록과 답신서는 중추원이 총독의 자문기관에서 한걸음 나아가 적극적으로 총독부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케 하려는 총독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중추원 참의들의 대응과 반응,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총독부가 중추원 참의를 전시 통제와 동원에 적극 활용하려 하고 이에 중추원 참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 1930년 9월 25~27일, 제10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제10회 중추원회의는 1930년 9월 2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회의 제1일은 총독부 각 국장들의 보고가 있고, 제2일·제3일에 자문사항에 대한 참의들의 답변이 있었다. 이 의사록에는 사이토 총독¹⁷⁾ 훈시 및 고다마(兒玉秀雄) 정무총감의 인사말, 회

17) 사이토총독은 1919년 8월 12일부터 1927년 4월 15일까지 조선총독에 재임하였고, 이후 제네바 군축회의 전권위원에 임명되었다가, 1929년 8월 17일 다시 조선총독에 임명되어 1931년 6월 17

의에서 발언한 33명 참의의 발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지방 실정에 비추어 특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었다.

회의에서 발언한 참의는 박종렬, 강필성, 원덕상, 유흥세, 윤갑병, 이경식, 한영원, 김상섭, 정란교, 이희덕, 박경석, 한상룡, 신석린, 진희규, 김상설, 유익환, 장대익, 오태환, 선우순, 김병원, 정건유, 김제하, 박기양, 양재홍, 박기동, 김창한, 장응상, 장현식, 박상준, 이항직, 상호, 유승흠, 이택규 등이었다. 이들은 각 지방을 대표하여 임명된 참의로서 각 지방 실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기관, 제도 포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강필성(姜弼成)¹⁸⁾의 발언을 보면 ① 사상선도 및 청년지도 문제, ② 수산업 장려 문제, ③ 삼림의 자본화 문제, ④ 화전 정리 문제, 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선에서는 1920년대를 거치며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황의 여파로 각 지역, 각계각층에서 항일운동이 전개되자, 일제는 이를 막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참의들은 이러한 총독부의 요구에 따라 소위 ‘사상 선도’ 방책을 제시하였다.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하여 ‘불온’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도덕 교육을 강화하여 사상적인 선도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식민지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농촌 피폐 구제(농촌 진흥, 부업 장려, 곡가 조절 등), 치산치수, 만주로의 정책적 이주 등이 제기되었다.

2) 1931년 9월 7~9일, 제11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제11회 중추원회의는 1931년 6월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이 부임하고 처음 열린 회의로, 지방제도 개정과 함께 중추원 개혁론이 비등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931년 9월 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1. 현재 상황에 비추어 민중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2. 소작관행의 개선 및 소작입법에 관한 의견”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25명의 참의가 발언하였고(윤갑병, 오태환, 원덕상, 장직상, 박종렬, 김상섭, 강필성, 진희

일 건강상의 이유로 면관되었다.

18) 강필성은 함경남도 덕원 출신으로 1914년 풍산군수를 시작으로 1924년까지 정평군수, 안변군수를 지내고, 1930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그는 참의로 재직 중인 1932년 함경남도 참여관으로 발탁되었고, 이어 전라남도 참여관을 거쳐 1937년 황해도 지사에 임명되었다.

규, 이택규, 김윤정, 한영원, 정건유, 선우순, 장대익, 이기승, 김상설, 양재홍, 김병원, 김명준, 현준호, 이경식, 상호, 박기동, 유익환, 장응상), 10명의 참의(신석린, 송종현, 김명준, 유승흠, 김창한, 이종렬, 오태환, 김병원, 홍종철, 김성규)가 서면 답신을 하였다.

발언 내용 중 선우순¹⁹⁾은 위 자문사항에 대해 “물질적 방면의 안정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정신적 위안이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향상(조선인의 의회 진출), 사상 방면의 선도와 엄중한 단속, 근로정신의 진작, 정치자유단체 필요”를 제안했다. 김명준²⁰⁾은 위 자문사항과는 별개로 ‘내선융화’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 학교에서의 내선공학(內鮮共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1932년 3월 3~4일, 제12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제12회 중추원회의는 1932년 3월 3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사변을 도발하고 열린 회의인 만큼 우가키 총독은 훈시를 통해 조선인이 내선융화를 통해 전쟁에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열사의 ‘사쿠라다몬(櫻田門) 천황 폭탄투척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인의 ‘불온’한 사상 선도에 중추원 참의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특별히 없고 “안팎으로 시국이 중차대해진 상황에서” 참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었다. 회의에서는 16명의 참의가 발언하였고(장직상, 선우순, 박상준, 윤갑병, 박종렬, 장응상, 이항직, 김명준, 오태환, 진희규, 장대익, 양재홍, 한영원, 정순현, 김상설, 상호), 9명의 참의(박기양, 신석린, 김영진, 민건식, 김창한, 정란교, 오태환, 김상설, 이경식)가 서면 답신을 하였다.

회의 시작과 함께 장직상은 “지난번 중추원 의관들이 만주에 출정 중인 황군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고, 최근 두세 명의 참의가 위문 방문과 현지 시찰을 다녀온 것”을 보고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에 대한 보고는 중추원 수요 예회(例會)에서 하겠다는 의장(정무총

19) 선우순은 1921년 4월 28일부터 1933년 8월 8일 사망할 때까지 중추원 참의를 5회 연임하며 활동 했다. 그는 1920년 사이토 총독에게 기밀비를 받고 조선 내 각계각층이 정보 및 이에 대한 탄압 책을 보고하고, 평양에서 친일단체 대동동지회를 창설하여 ‘내선일체’를 표방하며 일제의 내선 융화 및 황민화정책에 적극 협력한 ‘직업적 친일파’였다.

20) 김명준은 1921년 4월 28일부터 1945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다. 그는 민원식이 1920년 조직한 국민협회에 적극 참여하여 민원식이 동경에서 암살된 후 1921년부터 국민협회 회장을 맡아 참정권 청원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친일협력행위를 인정 받아 1945년 6월 제국의회 귀족원 칙선위원회에 임명되었다.

감)의 답변이 있었다. 중추원 참의들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앞장서 침략전쟁에 지지를 보내고 현지 위문 등의 활동을 하였다. 중추원 참의들의 일제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활동은 중일전쟁 이후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참의들의 발언 내용 중 선우순은 일본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성립을 적극 찬양하며 만주국 지역 주민에 대한 선도에 조선인이 최첨단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라 호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주국 신정부에 ‘내선인’을 많이 채용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대우를 동일하게 할 것, 만주에서 조선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만주에 조선인 집단부락을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박종렬²¹⁾은 이봉창 열사의 폭탄투척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교육 실시와 사상 선도에 적극 힘쓸 것을 주장했다. 사상 선도를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신민(臣民)으로서의 의무를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 즉 황민화 교육을 강화하여 조선인을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1932년 9월 19~20일, 제13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중추원회의는 1년 1회 열리는 것이 정례이지만, 1932년에는 2회 개최되었다. 3월에 이어 9월 19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13회 중추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사상 선도 및 민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었다. 회의에서는 16명의 참의가 발언하였고(한영원, 박종렬, 오태환, 이경식, 장직상, 박상준, 장대익, 장응상, 양재홍, 유진순, 심활진, 선우순, 박기동, 김명준, 이병렬, 김한승), 12명의 참의(조희문, 장현식, 신석린, 유혁로, 민건식, 송종현, 이동우, 정란교, 이희덕, 이기승, 김한승, 박기양)가 서면 답변을 하였다.

유진순²²⁾은 자문사항에 대해 총독부의 지방교회를 위한 순회강연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고, 각 부락마다 충청남도의 진흥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농민들을 교화해 나가는 것이 사상 선도와 민력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사상

21) 박종렬은 1921년 4월 28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를 5회 연임하였다. 중추원 참의 임명 전에는 총독부 취조국 위원, 조선어사전 심사위원, 구관 및 제도 조사위원을 역임하였다.

22) 유진순은 1932년 5월 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칙임관 대우로 중추원 참의를 5회 연임하였다. 1910년 평북 위성군수에 임명된 이후 1921년까지 위원군수, 괴산군수 등 평안북도 각 군의 군수를 역임했고, 1921년 평안북도참여관에, 1928년 강원도참여관에 임명되었다가, 1929년 충청남도지사에 임명되었다. 도지사 퇴관 이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해방될 때까지 참의로서 활동하였다.

선도는 나쁜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말로만 부르짖기보다 실제 조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설 묘지 허가’, ‘자가용 연초 재배’ 등을 제시했다. 선우순은 현재까지 총독부 정책이 잘 되고 있으나, 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좌경파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상 악화’의 원인을 고려한 각종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의견 외에 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작농 창정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 향약이나 계 등 전통적인 사상과 조직을 활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궁민구제사업에 대해서는 고식적 수단으로 실효가 없다는 주장과 ‘너무 친절히 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사상 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 1933년 7월 18~19일, 제14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제14회 중추원회의는 1933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출석한 중추원 의관은 고문 5명과 참의 60명(결석 5명)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총독부 각 국장들의 정책에 대한 연술(演述)이 상세하고 장황하게 이루어져 제1일 전부와 제2일의 오전 일정을 그것에 할애하고, 참의들의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한 나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회의 자문사항은 “1. 지방 상황에 비추어 농, 산, 어촌 진흥 상 특히 시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의례의 준칙제정에 관한 사항”이었다.

회의에서 각 자문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한 참의와 서면 답변을 제출한 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문사항 제1항			자문사항 제2항		
답변	서면답신		답변	서면답신	
이경식	염중모	조희문	김윤정	서상훈	송지현
원덕상	신석린	김영진	박영철	류정수	조희문
최연국	송지현	한영원	김명준	박영철	한영원
최창조	박종렬	선우순	이동우	윤갑병	선우순
유태설	유승흠	이병렬	오태환	이동우	오태환
김종흡	김상설	석명선	이희덕	김명구	이기승
신희련	이기승	정석모	박희옥	정석모	김종흡
이명구	최양호	신희련	김병규	박희옥	김한승
장직상	김종흡	김한승	서병조	박상준	장직상
				김두찬	서병조
					장대익

김두찬	장대익 정관조	이충건 김성규	박기석 이근우		박기석 이근우 신희련	정관조 최양호 김병규
10명		33명		5명		24명

제14회 중추원회의가 개최된 시점은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괴뢰 만주국이 건설된 때였는데, 조선에서는 192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인 몰락과 사회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이 격렬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 향후 침략전쟁의 후방기지로서 물적·인적자원의 전쟁 동원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농촌진흥운동과 조선공업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자문사항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먼저 이경식²³⁾은 답변에서 “농촌진흥, 자력갱생 운동은 아직 예전에 그 예를 못 보았을 만큼 성행하고, 지방의 도처에서 관민이 협력 일치하여, 차차 그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모두 우가키 총독 각하를 비롯해서 단행한 통치상의 획기적 진전이고, 2천만 동포의 일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농민만의 복음이 아니고, 전 조선이 받는 이익이 큰 것을 물론이고, 시정 아래로 20여 년 아래 비로소 참 갱생, 견실한 발전을 향한 제1보를 힘차게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농촌진흥운동 실시에 대해 대단히 찬양하였다. 또한 이 운동은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충분하게 농민의 자각을 촉구하고, 지도 훈련을 계속 실시하며, 농촌에 확고한 중심기관을 만들고 중심인물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양성하는 것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총독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유태설²⁴⁾은 농, 산, 어촌 진흥 상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① 농산어촌 피폐에 미치는 일체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 설치 ② 농산어촌민의 교화 및 지도 ③ 이자 제한령 개정 ④ 소작령의 제정 실시 ⑤ 농량자금 대부 확대 ⑥ 화전민 지도원 증원 ⑦ 함남 평지대의 화전민 지도시설 ⑧ 화전민의 계몽시설 ⑨ 수산시험장 및 수산학교 설립”

23) 이경식은 한일합병 이후 1911년 충주군서기로 출발하여 1913년 단양군수에 임명된 후 괴산군수, 충주군수, 진천군수를 역임하고 퇴관하였다. 퇴관과 동시에 1930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45년 8월 15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다. 참의 임명 이후 경학원 사성과 명륜 학원 강사를 역임하며 유교의 친일화에 앞장섰다.

24) 유태설은 1914년 재판소서기겸 통역생으로 출발하여 1918년 함흥지법판사에 임명된 후 청진지청 판사, 원산지청판사를 거쳐 1923년 평양복심법원판사를 역임했다. 1926년 퇴관하여 함흥변호사로 등록하여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33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42년 6월 2일까지 3차례 연임하며 활동하였다. 참의 재직기간 동안 함남도회의원(1933~1937), 함흥부회의원(1935~1945)도 겸임하였다.

등을 주장했다. 그는 함경남도 출신의 지방 참의로서 함남지역의 특수성에 입각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민정에 대해서 함경남도가 사회주의 사상이 강하고 항일운동이 활발한 상황에 대해 변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 선상에서 생활개선운동도 추진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그간 혀례허식이 많았다고 판단되는 의례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참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중한 연구고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추원 시정연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례준칙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약간의 발언이 이루어졌고, 많은 참의들이 서면답신을 제출했다. 그중 장대익²⁵⁾은 서면답신에서 의례 개선을 위해서는 “국례를 만들어 강제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의례는 국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조선에는 일정한 예식이 없고, 때문에 신례(新禮)에 따라 구례(舊禮)를 행하는 등, 거의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조선을 위한 안타까움이 심하다. 그리하여 총독부가 이에 대한 준칙을 제정함은 가장 적절한 조치이다. 국례를 정한다 해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조선의 통치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결여하는 것이 되니, 반드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유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중추원 참의 중에서 의례준칙 제정에 관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이윤용(고문), 위원에는 참의 류정수, 서상훈, 원웅상, 한상룡, 박승봉, 신석린, 박상준, 송지현, 김두찬, 최창조, 유태설, 김종흡이 임명되었다.

6) 1934년 4월 26~27일, 제15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제15회 중추원회의는 1934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1. 농가생계계획의 실시 상황으로 볼 때 장래 본 계획의 관철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방책, 2. 도시에서 민심의 작용을 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책”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18명의 참의(박상준, 원덕상, 신희련, 장현식, 한규복, 김두찬, 이경식, 유진순, 박중양, 김명준, 최창조, 현준호, 유태설, 최연국, 윤갑병, 이명구, 한상룡, 최윤주)가 답변하였고, 27명의 참의(염종모, 류정수, 김윤정, 신석린, 조성근, 박영철, 김관현, 박종렬, 정란교, 이병렬, 오태환, 김상설, 김종흡, 정석모, 박희옥, 김한승, 장직상, 서병조, 장대

25) 장대익은 황해도 출신 지방 참의로서 1921년부터 1941년까지 황해도평의회원(도회 의원)을 역임 했으며, 1930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2회 연임하며 1936년 6월 2일까지 활동하였다.

익, 이충건, 박기석, 정관조, 김성규, 이근우, 최양호, 신희련, 김병규)가 서면 답신서를 제출하였다.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실시된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 제정 등 식민지 조선 농촌의 궁핍상을 조정하기 위한 농촌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중추원회의 자문사항 역시 이에 맞춰졌고,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총독부가 주민들의 삶과 사상을 통제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자문도 구하였다.

제1 자문사항인 농가생계계획에 대해서는 1933년 제14회 중추원회의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이고,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라 대부분의 답변은 총독부 정책의 기조하에서 지역별로 그에 대한 약간의 특징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많은 참의들이 중견 인물의 양성과 자작농창정사업의 확대, 읍면기구 개편 및 진흥회 등의 농촌조직의 활용 등을 제기하고 있다. 서면 답신 내용은 대부분 총독부가 제시하고 있는 농촌진흥운동과 농가생계계획의 각종 시책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조선공업화 정책의 여파와 1920년대를 거치며 근대적 문물과 사상이 받아들여지면서 도시는 소비적이고 근대적인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군국주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제는 도시의 이러한 문화적·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참의들의 답변 중 제2 자문사항이 도시 민심을 작동시킬 방책에 대해 김명준은 “경성부에서는 정동회(町洞會)·방면위원회·교화단체연합회·교화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각각 규약을 정하였고, 중추원에서는 명덕연구회 규약을 설치하자고 진언한 일도 있다”면서 이미 제시된 방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국²⁶⁾은 “물질문명에 너무 편중한 결과 의식주의 미화가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방면에서도 점점 실속 없이 화려하고 경솔한 기분이 농후하게 되어 결국 타락 혹은 불량 상태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량 현상을 말하자면 농촌에서 실업한 사람이 방황하는 자, 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취직난에 고민하고 있는 소위 고등 유민들의 집단지로서, 자칫하면 유식·무식 계급에 상관없이 가끔 사상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현대의 사실”이라 하면서,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구²⁷⁾는

26) 최연국은 경상남도 사천 출신의 지방 참의로서 경남도평의회원(1920~1924, 1930~1933), 사천금융조합장, 사천수리조합장 등을 역임하였고,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

27) 이명구는 충북 청주 출신의 지방 참의로서 총독부의전을 졸업하고 청주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의사로 활동하였으며, 1930~1937년 충북도평의회원(도회의원)을 역임했고, 1933년 6월 3일부터

청소년단체, 부인단체를 조직하여 교화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강연회, 강습회를 통해 소비절약, 근검에 대한 선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및 참의 답신서

제16회 중추원회의는 1935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1. 반도의 현상에 비추어 민중에게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줄 가장 적당한 신앙심의 부흥책 여하, 1)반도에 있어서 선량한 고유신앙을 부활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 2)현존 제 종교의 진흥선도책 여하, 2. 각지의 민심 추이 및 이의 선도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1 자문사항에 대해 답변한 참의는 10명(한규복, 현현, 김두찬, 박영철, 정대현, 박상준, 박용구, 김명준, 신희련, 원덕상)이었고, 제2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14명(유진순, 김사연, 유태설, 박철희, 최창조, 이경식, 현준호, 최윤주, 최린, 어담, 오태환, 이택규, 박상준, 김두찬)이 하였다.

총독부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조선인들에 대한 황민화정책을 강화해 가고자 했다. 그것은 심전개발정책으로 가시화되었는데, 사상·신앙적으로 일본의 신도(神道) 사상을 조선인들에게 전파하고, 조선의 전통신앙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본의 신도 사상과 다르지 않음을 선전하여 사상적 저항감을 줄여가며 황국신민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16회 중추원회의의 자문사항에 신앙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현²⁸⁾은 “조선 고유 신앙에 있어서 신사(神事)의 내용이 내지(内地)의 고신도(古神道)와 공통되는 점이 많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특히 그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전에 내지에 가서 산사에 참배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제신(祭神)의 존칭에 존(尊), 명(命), 주(主), 영신(靈神), 신령(神靈), 주(柱) 등의 명칭은 조선 신앙의 대상신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라고 하였다. 또한 신희련²⁹⁾은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각종 신앙을 국가·사회·가정에 관련시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고유의 신앙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즉 일본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

- 28) 현현은 1911년 경성고보 교유로 출발하여 1921년부터 1931년까지 총독부 학무국 시학관 겸 편수관을 지낸 조선인으로서는 교육계 최고위 관리였다. 1931년 강원도 참여관에 임명된 후 퇴관하여 1934년 4월 17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 29) 신희련은 1920년 경원군수에 임명된 후 단천군수를 지냈고, 함남도회의원(1933~1937)을 역임했다. 또한 내선일체 및 참정권운동을 주창했던 국민협회의 상담역, 상의원을 지냈다.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

정신·황도정신과 연결시킴에 실행이 용이한 방식에 따라, 신도를 보급하는 것이 역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장현식의 발의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신앙 심사위원’은 위원장에 한상룡, 위원은 장현식, 박상준, 박영철, 한규복, 박용구, 이진호, 김명준, 김서규, 원덕상, 장직상, 현현, 정대현, 김사연, 김두찬, 김정호, 현준호가 임명되었다. 이처럼 중추원 참의들은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대부분 동조하며 식민통치 방침을 정당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제2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내선융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내선인 간의 결혼, 잡거(雜居), 내선공학(共學) 등이 내선융화의 방안을 제기되었다. 한편 최린³⁰⁾은 총독부가 농어촌갱생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자력갱생’을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총독부의 지원 등 ‘타력갱생’이 더욱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회의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고 서면 답신서를 제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한승, 박상준, 김윤정, 김상설, 김영진, 어담, 한규복, 정란교, 정관조, 박영철, 장직상, 한상룡, 정대현, 장대익, 이경식, 김관현, 박희옥, 엄준원, 이근우, 김명준, 박용구, 정석모, 유진순, 이진호, 이병렬, 이겸제, 조성근, 원덕상, 김종흡, 서병조, 이택규, 유혁로, 최린, 윤갑병, 박중양, 박종렬, 신석린, 현현, 최창조, 최양호, 최연국, 장현식, 박철희, 김두찬, 오태환, 류정수, 이명구, 이기승, 김병규, 서상훈, 조희문, 석명선, 신희련, 김사연, 유태설, 김한규, 현준호

〈총 57명〉

8) 1937년 6월 7~8일, 제18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937년 제18회 중추원회의부터는 의사록은 남아있지 않고 참의 답신서만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답신서를 보내온 순서대로 철을 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제18회 중추원 회의의 자문사항은 “1. 사회교화 시설 중 조선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 특히 강조 실시를 요한다고 생각되는 사항 및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하게 하는 데 적절 유효한 방책 여하. 2. 동본동성(同本同姓) 상혼금지제(相婚禁止制)는 여전히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가”였다. 답신서는 1937년 현재 중추원 참의에 재직 중인 자 63명이 모두 보냈다.

30) 최린은 천도교 신파의 지도자로서 매일신보사장(1938~1941)을 역임했으며, 1934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재임기간 1934.4.17~1938.4.30, 1941.5.12~1945.8.15)

	성명	제1문	제2문
1	김관현	각도 · 군 · 읍면에 문화포시소(文化布施所) 설치	20촌 이상은 가능
2	김윤정	부락마다 남녀 각각의 단체 조직	미풍양속의 하나로 유지
3	윤갑병	총독부내에 독립된 전문선전기관 설치하여 교회 사업 전담 실시	8촌 이내로 축소 실시
4	최준집	문묘 및 사찰을 개방하여 초등교육 실시	서서히 축소 개정
5	박상준	청년훈련소 설치, 청소년 지도, 부인의 교양시설 장려	20촌 이상의 결혼을 혀락
6	이범익	청년단의 조성과 지도, 유행가의 개량	금호범위 존중, 직계혈족 및 방계의 3종까지 타당
7	이진호	각면당 한 개의 신사 봉제, 신사취급자 양성, 가정마다 신단 봉제 장려, 신도사상으로 교화운동 통일	용이하게 타파하기 어려운 관습
8	유진순	사회교화지도기구 정비확충, 사회교화 관계직원 확충, 사회입법에 의한 교화 철저, 각종시설에 의한 교화	20촌 이상은 무방
9	유혁로	진흥회 진작, 의례준칙 철저 실시	10촌 이상은 무방
10	김영진	경학원의 조선중앙교화원으로 개조, 서원을 신사로 개칭, 도군의 교화직원 증설 등	불가
11	황종국	심전개발시설의 쇄신진흥, 국어의 적극적 보급 장려, 부인교양사업 진흥, 청년훈련소 확장, 근검장려운동의 적극 실시	동성결혼의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함
12	신석린	신사참배 강화, 경학원 성묘에 일본의 성현위인 합사, 내선공학, 내선교흔 등	시기상조
13	이겸제	내지어장려, 유림 및 승려의 교양, 사교(邪敎) 단속, 면동집회 단속, 그림에 의한 선도	동성결혼 개방, 일본민법을 같이 시행
14	장석원	행정기관의 계통있는 지도위원회 설치, 문맹퇴치, 국어 · 산술 강습	당분간 존속
15	이경식	향약계 제도 모방 등	당분간 존속(자연에 맡김)
16	석명선	사회교화 자료의 강독회를 각 마을에 설치	동성동본도 이종(異宗)일 경우 가능
17	정석용	성인교육 철저보급, 청소년운동 적극 장려, 강화 사업 철저한 보급	당분간 존속(자연에 맡김)
18	최남선	민의 자발적참여 유도, 의료 · 보건방면 강화, 심전개발의 실효성 강화	금제를 축소하는 것에 찬성
19	류정수	교양지도 강화	금호범위 축소는 시기상조

20	박중양	일본의 시설을 참작하여 조선에도 설치	통치상 긴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맡겨둘 것
21	서병조	서당교화의 개선, 사회사업의 적극화, 부인교화의 촉진, 사회과 설치와 사회교화사업 연구조사 회 창설	제한 축소
22	노영환	심전개발운동 강조 실시	금호범위 축소
23	조희문	학교중심으로 청년단, 부인회 설치, 문묘 및 지역향교 중심으로 유도정신 진흥	동파계(同派係)가 아닌 자에 한해 상호 협력
24	안종철	국체관념 명징(신사참배, 국기게양장려, 강연회 개최), 부녀자교양 강화	당분간 유지
25	서상훈	학교교육에서 덕육 강조	존속
26	정대현	국체관념 명징, 선량한 고유신앙부활, 경제생활과 도덕생활의 일원화 도모	금지범위를 8촌까지 축소
27	이교식	보통학교 확충, 청년훈련소 확충, 심전개발	금호 범위 축소
28	김사연	일본정신 고취, 도덕교양 진흥, 인재양성기관 설치	8촌 이내 외에 상호 인정
29	한규복	국체명징시설 설치, 명륜사업에 대한 통제기관 조직, 산업합리화, 근검사상 고취	신중하게 연구 필요
30	박용구	색복 및 단발 장려강조, 육영사업 장려 실시	종전대로 인정
31	엄준원	농촌 문맹퇴치, 종래 인습에 의한 연중행사 조사 연구, 도시에서 시민체육제 실시	원칙적으로 인정, 취급방법은 다소 고려
32	김정호	청년훈련소 확충, 청년단 확충, 방면제도, 국민정신진흥운동 도모	금호 범위 축소
33	이희적	취첩의 악습 교정	동성동본 혼인 금지 필요 없음
34	김기수	향교를 중심으로 사회교화 강조	자연적 흐름에 맡길 것
35	이기찬	유교 진흥	8촌 이내로 범위 축소
36	조성근	국기게양장려, 신사 보급, 사대절(四大節) 의식 철저, 병역의무(징병제) 실시, 의무교육 실시, 참정권 부여, 내선차별 제거	완화
37	김명준	국체관념 명징, 생활개선운동, 민간사업단체 보조 등	사실상 동성결혼 인정, 현실에 따라 법규 제정
38	박철희	청소년지도기구 확충, 개풍역속(改風易俗) 도모	신중 연구 필요
39	장현식	국민정신 통일 수양하는 도장 설치, 의례준칙 개정, 근면성실 강조	일본 민법 제756조에 규정하는 범위에서 허용
40	현준호	사회교화위원회 설치하여 최고지도기구로 삼을 것,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	존속 필요

41	현현	부인교양사업 철저, 미성년자 금주금연 단행 등	존속
42	고일정	사회교육관 건설, 고유신앙 지도, 문예 부흥	폐지할 필요 없음
43	어담	유교 진흥	자연스런 추이에 맡길 것
44	방태영	사회교화기관의 계통적 동원 및 설비 완성	10촌 이내로 한정
45	남궁영	언문강습회 장려, 진흥회·교풍회 증설, 청년단 조직 장려, 부인회장려 증설, 순회강연회 개최 등	동성동본 혼인 불허
46	최지환	국어(일어)보급, 자작농창정 계획 확충, 부역제도 개선	금흔 범위 축소
47	정란교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중추인 중견청년양성기관, 농민훈련소 확대 강화	금흔 범위 축소
48	이은우	윤리도덕 천명, 신앙심 개발, 국체관념 명징	금흔 범위 축소
49	유태설	문교쇄신, 계몽운동 철저 강화, 심전개발기관 확충	그대로 인정
50	장직상	사회교화시설 확충, 학교 중심의 사회교화단체 성립 요망	금흔 범위 제한
51	강번	공덕심 함양, 책임감 자각, 근로 애호	금흔 범위 축소
52	최윤	중견청년 훈련기관 확충, 종교에 의한 정신교화 확충, 부녀자지도기관 설치, 의례준칙 발포	혼인제도 개선 필요
53	박희옥	농촌진흥운동, 심전개발운동 철저 강화	시기상조
54	인창환	유곽공창 폐지, 종교존중, 교화기구 혁정과 개선, 제2국민양성을 위한 특수아동 보호	당분간 인정
55	이승우	국체명징 관념 강조, 심전개발, 색복장려, 허례폐지, 경비절약, 이중생활 개량 등	금흔 범위 축소
56	한상룡	신앙정신 함양, 윤리적 신앙 조장하여 공덕정신 함양, 근검저축장려 철저 등	금흔 범위 축소
57	박영철	청년, 부인에 대한 교화지도, 고유신앙의 조장계도	10촌 이상 상혼 허가
58	김상형	조선고유의 정신문화 부활	금흔 범위 축소
59	최린	국체명징, 교학진작 강화, 신앙생활 향상, 경제적 생활과 도덕적 생활 융합일치	금흔 범위 축소
60	원덕상	국체명징관념 고취, 경신승조 관념 고취, 사회연대 정신 함양, 계몽운동시설 확충, 사교음사 박멸	존속, 신증 연구 필요
61	이근수	청년지도, 부녀자 지도, 유교도의 지도 장려	당분간 현행 관습 유지
62	손조봉	향교개선, 청년단 조성	금흔 범위 축소
63	성원경	공인종교 지도 계발하여 올바른 신앙 보편화,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사회교화시설 연구	존속

9) 1938년 5월 20~21일, 제19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938년 제19회 중추원회의의 참의 답신서 역시 보내온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제19회 중추원회의의 자문사항은 “1. 시국에 비추어, 농·산·어촌 진흥운동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책은 무엇인가? 2. 내선일체 정신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천·구현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3. 은퇴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가?”였다. 답신서는 1938년 현재 중추원 참의에 재직 중인 자 60명이 보냈다. 답신서를 보면 참의는 다음과 같다.

김기홍, 박상준, 신석린, 안종철, 조희문, 석명선, 김영진, 서병조, 장현식, 김윤정, 박중양, 인창환, 유혁로, 오세호, 정석용, 이경식, 박용구, 장석원, 현준호, 이겸제, 주영환, 정대현, 황종국, 윤갑병, 김명준, 박영철, 월덕상, 정란교, 김관현, 한규복, 박봉진, 김기수, 서상훈, 방태영, 최윤, 김상형, 노영환, 이근수, 한상룡, 이승우, 유태설, 최지환, 유진순, 박철희, 이은우, 강번, 이진호, 박두영, 박희옥, 남궁영, 이종섭, 이기찬, 장직상, 현현, 김사연, 최준집, 성원경, 이희적, 어담, 손조봉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일제는 조선에 대해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선인의 ‘자발적’인 전쟁협력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런 의도에서 중추원 참의에 대한 자문사항 중 “내선일체를 위한 방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 자문사항에 대해 참의들의 답신 내용을 보면, 중추원 참의들의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한 생각 및 협력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총독부 정책을 그대로 주장하며 이를 보다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	제2문
조희문	학교에서 가정을 통한 인식 철저 방책 마련
석명선	경신승조의 정신 함양, 내선결혼 장려, 시국표어 간판 개선, 일본국사의 철저보급
서병조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 봉사(奉祀), 조서 봉독과 황국신민 서사 제창, 신사와 사당 건립참배, 국기게양식 거행
김윤정	황거망매의 보급 철저, 내지거주 조야(朝野) 명사 초빙 유도
인창환	정회 또는 동리회의 집회기관에 긴장감 유도, 내선인 결혼 촉진
황종국	내선결혼 장려, 내선합자사업 장려, 조선의 신문사 내선융합, 국어보급 철저 등
박영철	내선결혼의 적극 장려, 내선여성을 단원으로 하는 근로보국 단체 조직, 내선사찰의 상호 참배

정란교	국민3대의무제도 실시와 참정권 부여, 유능한 조선인 발탁, 내선결혼 장려, 내선인 간의 상호 이해 철저
김관현	경신승황의 정신 함양, 전쟁뉴스 영화 상영, 소비절약과 저축
한규복	국가관념의 함양, 일상생활의 일본화, 경제생활의 내선 진밀 제휴
김상형	단체관념의 양성과 대마(大麻)의 봉재(奉齋), 생활양식의 내지화와 국어 보급
노영환	국체명징과 경신승조, 내선결혼 장려, 일상용어 단속, 단발장려, 내선인 관리의 차별대우 철폐
이근수	강습회 개최, 국어보급 강조, 내선결혼 장려, 유적의 정화 보존, 초등학교 공학, 신단 봉재
이승우	신앙의 통일, 내선결혼 장려, 친족상속의 성문화(成文化)와 내선 통일
최지환	면단위 신당 설치, 국어보급 장려, 초등학교 내선공학, 내선결혼 장려, 내선인 합동청년단 조직
유진순	국체관념 명징, 내선결혼 장려, 내선공학 촉진, 황국신민 서사 철저
박희옥	신사증설과 참배 장려, 내선 접촉 밀접, 내지인 지덕겸비한 자의 각지 배치, 내선 결혼 및 양자들이기 적극 장려
남궁영	신궁 및 신사참배 장려, 청년회 및 청년훈련소 내선 공동조직, 초등학교 내선공학, 지원병 수 증가, 내선공동사업 장려, 내지의 내선일체 정신운동
이종섭	황국신민서사 철저 봉독, 내선일체 교육 철저, 내선관리정원제도 철폐, 내선결혼 장려, 특별지원병 제도 취지 철저히 주지
장직상	경신승조관념 함양, 국어보급, 내선결혼 장려, 내지사정 시찰, 풍습의 내지화, 이론보다 실행
최준집	미나미(南)총독의 정책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항구적 국민 생활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책임

10) 1940년 제21회(10월 24~25일), 1941년 제22회(6월 10~11일),
1942년 제23회(6월 29~30일)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조선에서는 1939년 큰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제는 군수식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어려워졌다. 일제는 1938년 조선에서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실시하여 내선일체 통치방침을 철저히 하고, 조선인의 급속한 황국신민화를 도모하였다. 일제는 1940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하면서 각 부문의 민간운동까지 통합하며 보다 강력한 군국주의적 전쟁 동원체제를 구축해갔다. 일제는 중국침략에 그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의 일원으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확대시켰다. 이처럼 전쟁의 확대와 그로 인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물적·인적 자원의 전쟁 동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자, 중추원 참의들을 전쟁 동원을 독려하는 선전대로 활용하였다. 대다수 중추원 참의들은 그러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특히 1940년 2월부터 실시된 창씨개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참의 답신서 명단에도 1940년부터는 창씨명으로 기재되고 있다.

21, 22, 23회의 자문사항과 중추원 참의들의 창씨명을 살펴보자. 제21회 회의에 답신서를 제출한 참의는 64명, 제22회는 61명, 제23회는 61명으로 재직 중인 참의들은 거의 모두 자문사항에 대한 답신서를 제출하였다.

〈중추원 회의 자문사항〉

회의	자 문 사 항
21회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황 및 운동의 강화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취해야 할 방책은 무엇인가? 2. 법정(法定)의 추정 호주상속인 폐제(廢除)의 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가?
22회	1. 시국하에 있어서 민정(民情)에 대해 시정 상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여하 2. 남자의 법정추정 호주상속인이 없을 경우 여자로서 호주상속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가부(可否) 여하
23회	시국하에 있어서 민정에 비추어 장래 시정 상 고려해야 할 사항 여하

자문사항을 보면 21, 22, 23회 모두 침략전쟁 확대와 그로 인한 전쟁 동원 및 수탈을 강화해야 할 사항에서 민심의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자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답신서에서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을 지지하며 한일합병의 대의를 철저히 주지하여 내선일체를 사상적으로도 체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설치와 선전활동 강화, 물자 통제 및 식량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총독부는 사법상으로도 내선일체를 추진하여 창씨개명, 내선연조를 통해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도모하였지만, 민사 부문에서는 일본민법의 ‘전반적’ 의용이 아닌 조선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법제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친족·상속 관습에 대해서도 법전화(성문화)를 추진했는데, 특히 1940년 이후에는 상속제도에 대한 조사 심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미나미 총독)는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을 구상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³¹⁾ 이런 상황에서 21회(1940년), 22회(1941년) 중추원 회의

에 제2 자문사항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의들의 의견은 21회는 답변자 중 55명은 호주 상속인 폐제 제도에 대해 찬성 55명, 반대 2명이었다. 22회는 여자의 호주상속에 대한 찬성이 54명, 시기상조 등으로 반대가 7명이었다.

〈제21~23회 회의 답신서 제출자와 중추원 참의 창씨명〉

성명	창씨명	21회	22회	23회	성명	창씨명	21회	22회	23회
신석린	平林麟四郎	○	○	○	조병상	夏山茂	○	○	
장현식	張閏憲埴	○	○	○	남백우	南百祐	○	○	
김관현	金光副臣	○	○	○	강동희	姜東曦	○	○	
박용구	朴山容九	○	○	○	홍치업	南陽致業	○	○	
서상훈	徐川相勛	○	○	○	최지환	富士山隆盛	○	○	
유진순	玉川鎮淳	○	○	○	장석원	大池龍藏	○	○	
고원훈	高元勳	○	○	○	유태설	邦本泰禹	○	○	
안종철	廣安鍾哲	○	○	○	어담	西川潭一	○	○	
한규복	井垣圭復	○	○	○	위기철	白石基喆		○	○
정란교	海平蘭敎	○	○	○	최형직	佳山定義	○	○	
이겸제	福田謙治	○	○	○	이병길	李丙吉		○	○
장현근	張閏憲四郎	○	○	○	문명기	文明琦一郎		○	○
박두영	木下斗榮	○	○	○	정연기	草本然基		○	○
현준호	玄俊鎬	○	○	○	조희문	松原義聞	○		
정교원	鳥川僑源	○	○	○	조경하	青橋鏡夏	○		
윤갑병	平沼秀雄	○	○	○	오세호	松川正德	○		
김사연	金思演	○	○	○	지희열	中原健	○		
원덕상	元村肇	○	○	○	박중양	朴忠重陽	○		
이기찬	安城基	○	○	○	이진호	李家軫鎬	○		
방의석	方義錫	○	○	○	한상룡	韓相龍	○		
장직상	張元稷相	○	○	○	박봉진	木山鳳鎮	○		
홍종국	德山善彥	○	○	○	이종섭	松谷平雄	○		
박상준	朴澤相駿	○	○	○	김기홍	金川基鴻	○		
김윤정	清道金次郎	○	○	○	최재엽	高山在燁		○	
김명준	金田明	○	○	○	장용관	安本龍官		○	
서병조	大峯丙朝	○	○	○	김화준	金海化俊			○

31)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법제정책에 대한 연구－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성문법화를 중심으로」, 한양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253~266쪽.

최준집	丸山隆準	○	○	○	권중식	山本重夫			○
김신석	金信錫	○	○	○	이종덕	江本鍾惠			○
이승우	梧村升雨	○	○	○	원병희	元村炳喜			○
주영환	本城秀通	○	○	○	박지근	松山清			○
이경식	李敬植	○	○	○	차남진	德山南鎮			○
김상회	豊原以尙	○	○	○	이갑용	大田一夫			○
정해봉	日鄭海鵬	○	○	○	이승구	三島承一			○
유만겸	俞萬兼	○	○	○	조상옥	古山尙鉉			○
김경진	金子典幹 (金子慶鎮)	○	○	○	김연수	金季洙			○
김한목	平野漢睦	○	○		장준영	張永俊英			○
문종구	平文鍾龜	○	○		이익화	西原翊華			○
김정석	金山韶能	○	○		황종국	中山富雄			○
김창수	金山敬	○	○		송문화	山木文華			○
김진수	松宮晋洙	○	○		김원근	金海元根			○
손재하	廣原平成	○	○		전덕룡	田原德龍			○
김영진	金英鎮	○	○		박필병	松井英治			○
하준석	河本駿錫	○	○		김태집	金井泰漸			○
김상형	金子相亨	○	○		강번	豊田藩			○
박보양	江原基陽	○	○		신현구	申鉉			○
민병덕	鉢山丙德	○	○		위정학	三山鶴市			○

3. 기타 중추원 관계 자료

1) 『중추원 개혁에 관한 의견서』

이 자료는 총독부가 1930년 12월 지방제도 개정(도제, 부제, 읍면제 실시)으로 소위 지방자치를 한층 강화하여 지방행정상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 행정은 유일한 자문기관인 중추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이다. 1933년 6월 2일 중앙 참의 45명 중 34명, 지방 참의 28명 중 15명이 임기 만료되는 시점이므로 이때가 중추원 개혁의 호기라는 것이다. 이 자료의 작성 주체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중추원 내부에서 마련한 의견서

로서 1931~1932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의견서는 현재 미국 하와이대학 해밀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수집한 것이다.

의견서에서는 중추원을 개혁하여 “중추원의 조직을 개량하여 권한을 확장시켜 명실상 부하게 민론(民論)의 대표기관답게 하는 것이 중앙행정상 긴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민심의 안정상에서도, 사상 선도 상으로 보더라도 매우 긴요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참정권 획득운동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의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의 방향은 “중추원을 폐지하여 조선의회라 해야 한다’, ‘자문기관을 개량하여 결의기관으로 해야 한다’, 또는 ‘중추원에 정치적 기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그대로가 좋다. 개정의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 종류의 설이 있지만……본 안(案)은 양자의 중간자 입장을 취하며 한편으로는 특별한 세력의 진운민심의 경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디까지나 현실에 입각하여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입안하는 것”이라 하였다. 개혁안에서 제시한 개정 항목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내지인(일본인) 의관의 선임 : 중앙 참의 43명 중 5명, 지방 참의 42명 중 15명,内外의
내지인(재조 일본인) 참의 선임
- (2) 지방 참의의 증원 : 참의 총수를 65명에서 85명으로, 이 중 중앙 참의는 45명에서 43명
으로 줄이고, 지방 참의는 20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한다.
- (3) 지방 참의 배당 숫자의 개정 : 지방 참의의 각도 배정 수는 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도·읍 평의원 수를 참작하여 정한다.
- (4) 참의 전형방침의 확립
- (5) 보선(補選) 의관의 임기개정
- (6) 참의의 대우 및 수당의 개선 : 참의 대우는 중앙 참의는 모두 칙임 대우로 한다. 수당
은 중앙 참의 수당은 현재대로(3,000~1,200엔)하고, 지방 참의는 전부 없애거나 반액
으로 한다.
- (7) 자문 사항 및 보고사항의 명기
- (8) 건의권의 부여 : 대한제국기 중추원은 건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만총독부 평의회
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의권
을 인정해야 한다.

2) 『중추원 관제 개정에 관한 참고자료』³²⁾

이 자료는 1933년 발행된 것으로 작성 시점, 주체 및 목적은 확실치 않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총 180쪽의 분량이다. 이 자료에 인용되어 있는 『경성일보(京城日報)』 1932년 12월 23일 사설에서는 “중추원 개혁을 위한 적당한 구체안 작성을 명하여 중추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것이 최근 완성되어 현재 심의실에서 최후의 심의가 진행 중인 모양이다. 심의가 끝나면 법제국을 거친 연후에 명문화되어 실현될 것이기에, 이미 중추원 개혁은 시기만 문제일 뿐이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추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안(案)을 마련”한다는 것의 기초 작업이 이 자료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중추원 관제개혁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추원의 구관제(舊官制) 및 연혁, 중추원 관제 개혁에 대한 중추원 참의 및 일반 유지, 신문 사설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추원 설치의 이유 (최초)
2. 이후 동원(同院) 관제 개정의 연혁 (시기 · 요지 · 개정의 이유)
: 1912년 3월 27일 1차 개정부터 1924년 12월 25일 5차 개정까지
3. 부의장, 고문, 참의 선임의 내규, 관례, 선임사유 (귀족, 관리 출신, 유식자(有識者)로 구별하여 설치 당초와 다른 것)
: 1910~1932년간 중추원 의관의 이동(異動)을 출신별(귀족, 관리, 민간유력자), 사람별 (관직, 성명)로 표를 작성하였다. 의관의 이동 분석은 1921년 전후로 나누어 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1921년의 3차 개정은 “공로자 우대의 관청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총독의 자문에 응하며 그것을 활용하여 총독정치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중추원으로 하여금 자문기관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3차 개정으로 찬의 · 부찬의에서 참의로 의관제도가 변하였고, 특히 참의 인선에서 지방 참의 선출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중추원의 제도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조선인 측의 의향 (참의, 유식자 등의 의견, 신문 잡지의 논조와 그 논지 등)
: 중추원 제도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중추원 참의, 유식자의 의견 및 신문 사설 등을 정리하였다. 참의에게는 중추원의 조직 및 기능, 의관의 선임 및 배치, 대우, 권한 등에

32) 이 자료에 대한 해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도서/중추원조사자료 해제 <일제의 식민지 '調査事業'과 朝鮮總督府 中樞院 조사자료> 중 '중추원의 기타활동과 자료'(장용경)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관한 사항을, 유식자에게는 존치와 폐지 양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이유를 물었다. 신문 사설은 『동아일보』, 『민중신문(民衆新聞)』, 『조선신문(朝鮮新聞)』, 『경성일보(京城日報)』에서 중추원의 개혁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5. 참정권 문제에 대한 조선인의 의향·견의, 지금까지 총독부의 취급

: 중추원회의에서 조선인 참의들이 보고한 참정권(자치론 포함)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놓았다

6. 지방자치의 연혁 및 그 실적

: 지방자치의 연혁을 서술하고, 각 도평의회원의 임명 상황(1920~1929), 부협의회원·부회의원 당선자의 지방별, 내선인 별 비교, 1931년의 부회의원 선거권자의 지방별 유권자수 및 당선자 관련 상황(조선인, 일본인 비교), 지정면협의회나 읍회 등의 1931년 선거 상황(투표수, 득표수) 등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중추원 관제를 ‘조선의회’ 등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응하여, 도(道)·부(府)·읍(邑)·면(面) 등의 선거에서의 유권자·득표수 등의 상황을 내선인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 듯하다.

3) 신문, 잡지에 실린 중추원 관련 기사

① 복면생(覆面生), 「중추원 지방참의 평판기」(1930)

중추원의 지방 참의는 나름대로 각 지방에서 조선인을 대표하는 역할로 뽑힌 것임에도 이들의 인선 실적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 참의는 “지방부호의 사활열(仕宦熱), 권세욕(權勢慾)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등용문”이 되고 있고, 이들은 그 지위를 얻기 위해 “허다(許多)의 운동에 몰두하고 여러 추문을 일으켜 曰 호피(虎皮)참의, 마작(麻雀)참의” 등으로 불리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1930년 6월 3일 3년 임기의 중추원 참의가 새로 선임되어 발표되었는데, 이에 그 면면에 대해 평을 하고 있다. 이 글에 소개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원덕상(경기, 47세), 이경식(충북, 48세), 이기승(충남), 김병원(충남), 유익환(전북, 50세), 현준호(전남, 42세), 장직상(경북, 48세), 진희규(경북, 53세), 정순현(경남, 57세), 장옹상(경남, 50세), 장대익(황해, 54세), 선우순(평남, 40세), 박기동(강원, 58세), 김제하(평북, 52세), 강필성(함남, 46세), 양재홍(함북, 53세)

② 「중추원과 참여관 제도의 개폐(中樞院と參與官制度の改廢)」(1936)

1936년 미나미(南次郎) 총독이 새로 부임하여 행정기구 개혁과 더불어 중추원 제도 개

혁 및 참여관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③ 일파생(一波生), 「조선총독의 자문기관 중추원 해부」(1938)

이 글은 한일합병 이후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중추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중추원관제 중 제2조·제3조의 직원 구성에 대한 설명과 1937년 8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중추원 참의 명단을 적고 있다. 다음으로 1919년 제1회 중추원회의에서부터 1938년 제19회 중추원회의까지의 총독의 자문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수	개최일	자문사항
제1회	1919. 8.	묘지, 화장장, 매장 및 취체규칙 개정의 건
제2회	1920. 5.	성년, 청, 능력, 금치산, 준금치산에 관한 규정 설정 친권자, 후견인, 보좌인, 친족회 등의 제도 설정
제3회	1921. 12.	1. 남자는 만 17년, 여자는 만 15년에 이르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설정하는 건 2.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게 하고, 또 한편 민법 제815조의 원인 있는 때에 한하여 일방으로부터 혼인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할 수 있게 규정을 설정하는 건
제4회	1923. 7	자문사항 없음
제5회	1924. 9.	1.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는 자는 그 여자에게 타성 남자를 서양자(婿養子)로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양가의 성(姓)을 칭호하게 하는 제도를 설정하는데 대한 요부(要否) 2. 가(家)에 칭호를 부치게 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데 대한 요부 3. 지방문묘 중 상당한 격식있는 자에 사성(司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요부 4. 시설개선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회	1926. 1.	자문사항 없음
제7회	1927. 8.	1. 국유임야 모경화전(冒耕火田)의 정리 및 화전민구제에 관한 방책 2. 지방개선에 관한 의견 여하
제8회	1928. 1.	자문사항 없음
제9회	1929. 5.	1. 산업진흥에 관해 장래 본부에서 시설을 요하리라고 인정하는 사항 2. 최근 지방민정 중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의견
제10회	1930. 9.	지방 실정에 비추어 특히 시설을 요하리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11회	1931. 9.	현시 정세에 비추어 민중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회	1932. 3.	자문사항 없음
제13회	1932. 9.	지방 실정에 비추어 사상 선도, 민력 함양 상 특히 시설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회	1933. 7.	1. 지방상황에 비추어 농산어촌 진흥 상 특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의례의 준칙제도에 관한 사항
제15회	1934. 9	1. 농가생계계획의 실시 상황에 비추어 장래에 있어서 본 계획 관찰을 필기할 방책 2. 도시에 있어서의 민심 작용을 도모하는 구체적 방책
제16회	1935. 10.	1. 반도 현상에 비추어 민중에게 안심입명을 주는 가장 적당한 신앙심의 부흥책 여하 2. 각지의 민심 추향(趨向)과 그것을 선도하는 의견 여하
제17회	1936. 10.	자문사항 없음
제18회	1937.	1. 시국에 비추어 농산어촌진흥운동의 확충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책 여하 2.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반국민의 일상에 실천 구현시킬 방책 여하 3. 은거제도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제19회	1938.	1. 사회교화시설 중 조선현상에 비추어 특히 강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이것을 일반민중에게 철저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 유효한 방책 여하 2. 동본동성 상호금지의 제도는 여전히 이것을 인정해야만 되겠는가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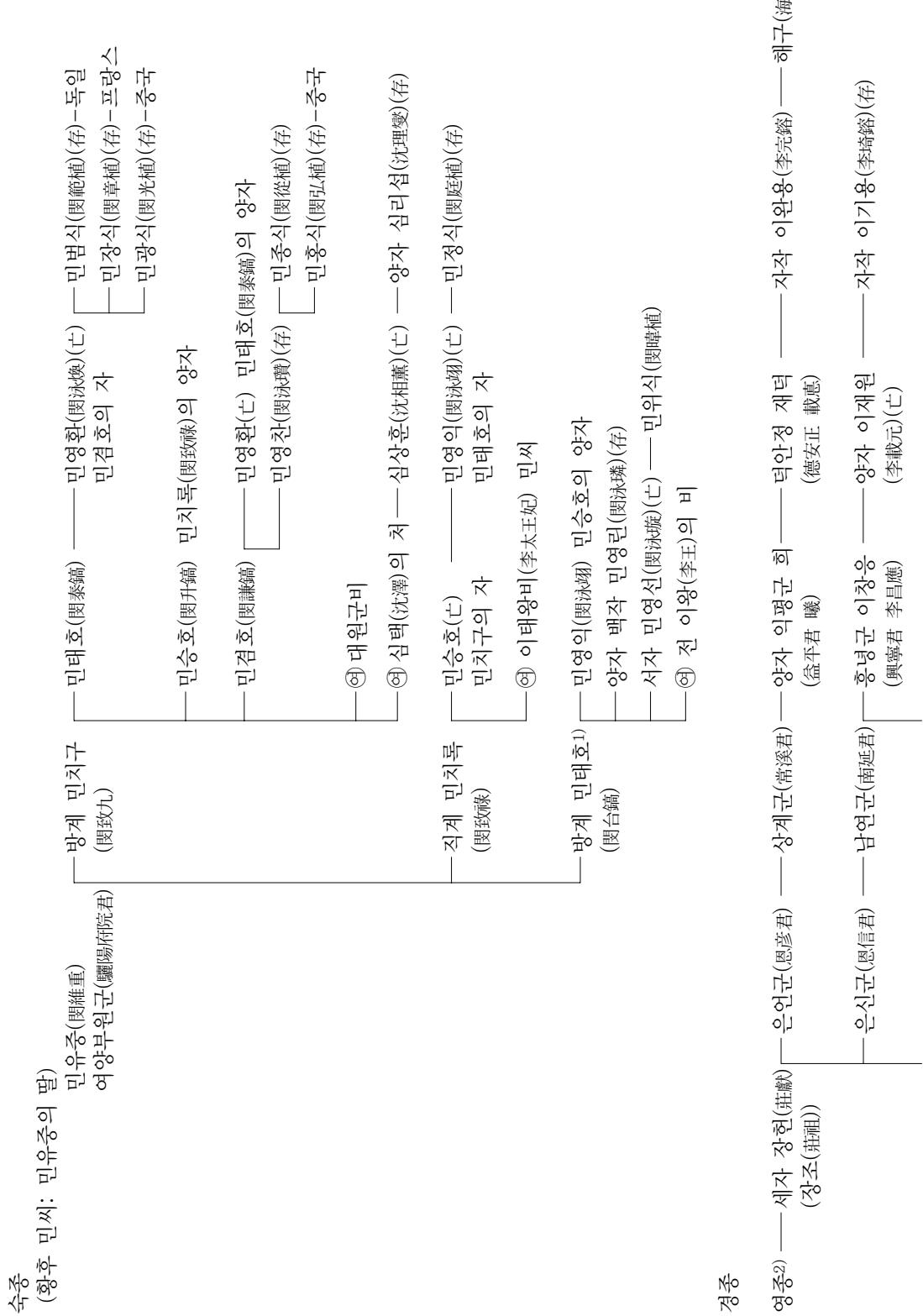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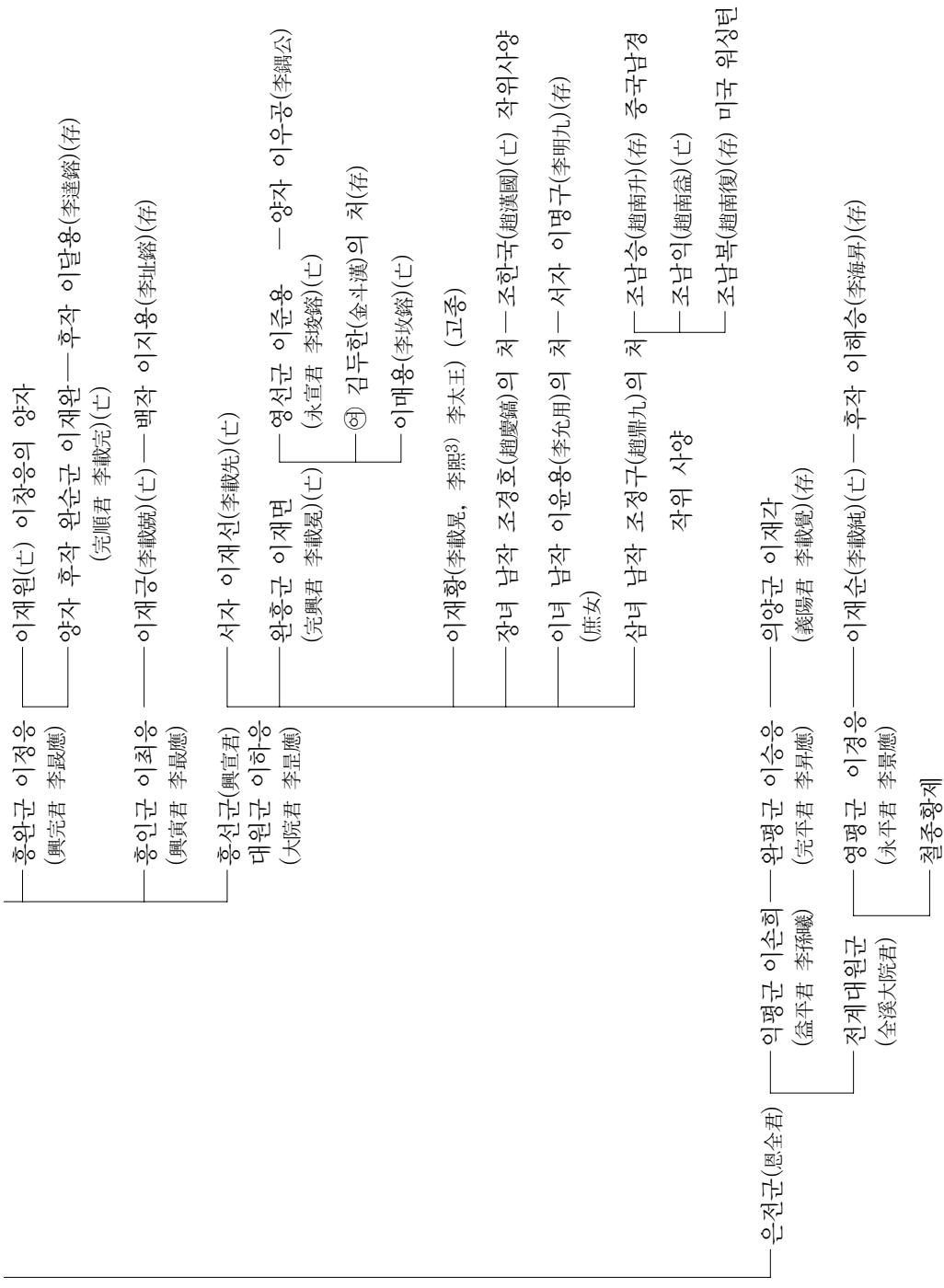
I. 조선귀족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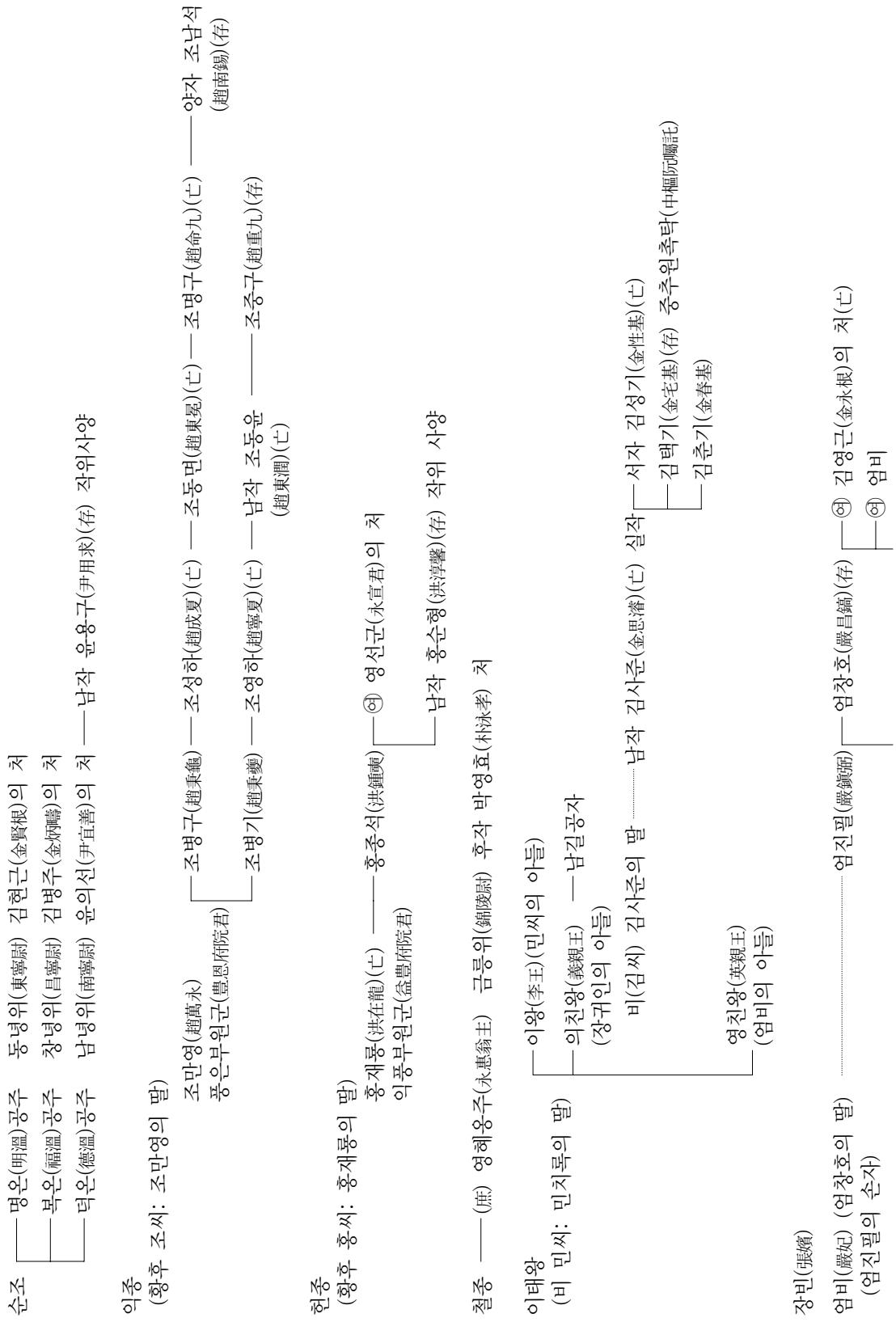
1. 이왕가(李王家) 외척(外戚)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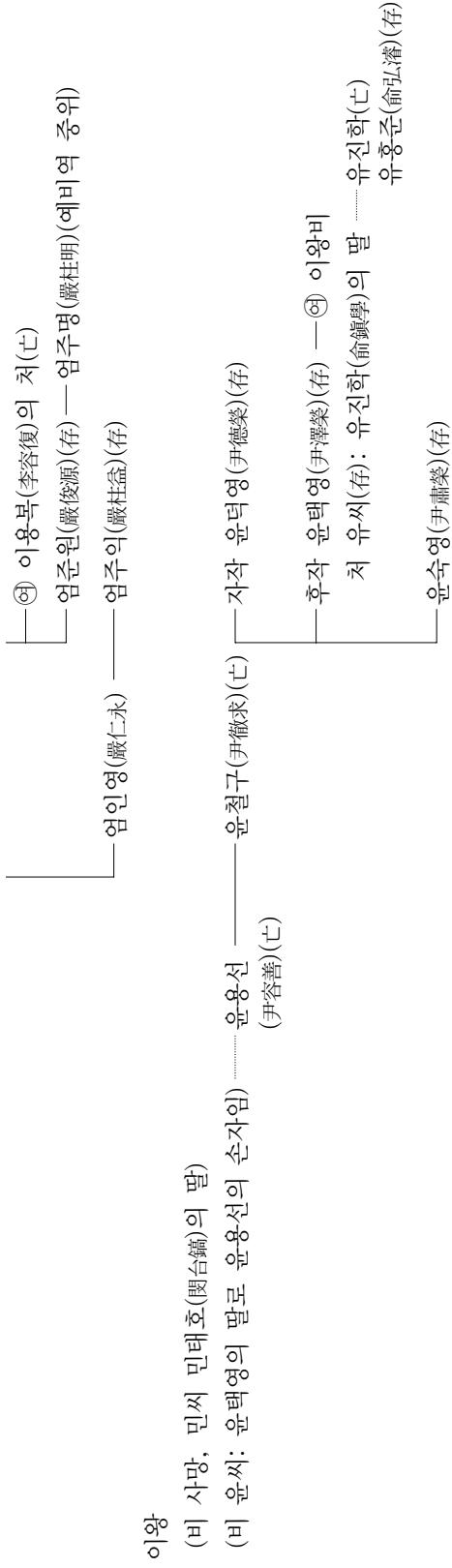
범례: (亡)사망, (存)생존의 의미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덕종 예종 성종
연산군(~1506)
중종 —— 턱홍대원군(德興大院君) 장자 — 12대손 이하전(李夏誥) — 후작 이해창(李海昌) 창산군(昌山君)(存)
인종 명종 선조 광혜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출전 : 李王室外戚略系, 『朝鮮貴族略歷』(『朝鮮實文書』 100-3-850)〉

- 민태호를 민치구, 민치록과 같은 항렬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일본 측의 오류이다. 민태호(閔台鎬)는 민치오(閔致五)의 아들로서, 민치삼(閔致三)에게 양자로 입적되었으며, 여양부원군 민유중(閔維重)의 차남인 민진원(閔鎭遠)의 5대손이다. 그의 말이 순종이 왕세자였을 당시 정비로 간택된 순명효황후 민씨이다. 민태호는 사내당의 영수로서 활동하였으며, 1884년 12월 잡신3경에 당시 민영복(閔泳穆)·조영복(趙泳穆)·이조연(李祖淵)·한규직(韓圭翼) 등과 함께 경우궁(景祐宮)에 입궐하다가 개화당 사람들에게 참살당했다.
-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음.
- 고종의 휴이다.

2. 조선귀족의 약력

이조(李朝) 말 조선귀족의 경력은 한·일(韓日), 청·러(淸·露) 간 외교관계 당사자 이외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 없고 착종(錯綜)되어 있다. 비밀사항이 많아 그런 것으로, 그 진상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 이 편저는 『조선귀족열전』 및 『조선신사명감』을 참고로 하여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대관(大官) 혹은 그들 사이의 통역 임무를 담당하여 다소나마 그에 접촉했던 사람들의 견문을 통해 노골적으로 기탄없이 적으려 한다. 자료의 취사선택에 매우 노력했으며 또한 진위에 관해서는 다소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단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조선귀족이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얻고, 위정(爲政)상에 얼마간의 참고가 되면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조선귀족열전 목차〉

- 후작 이재완(李載完: 사망) 승계 이달용(李達鎔)
후작 이재각(李載覺)
후작 이해창(李海昌)
후작 이해승(李海昇)
후작 윤택영(尹澤榮)
후작 박영효(朴泳孝)
후작 이완용(李完用)
백작 이지용(李址鎔)
백작 민영린(閔泳璘: 실작, 실형)
백작 송병준(宋秉峻: 사망) 승계 송종현(宋鐘憲)
백작 고희경(高羲敬)
자작 이완용(李完鎔)
자작 이기용(李基鎔)
자작 박제순(朴齊純: 사망) 승계 박부양(朴富陽)
자작 조중응(趙重應: 사망) 승계 조대호(趙大鎬)
자작 민병석(閔丙奭)
자작 이용식(李容植: 실작, 실형)
자작 김윤식(金允植: 실작, 실형)
자작 권중현(權重顯)
자작 이하영(李夏榮)

자작 이근택(李根澤: 사망) 승계 이창훈(李昌薰)
자작 임선준(任善準: 사망) 승계 임선재(任宣宰)
자작 이재곤(李載崑)
자작 윤덕영(尹德榮)
자작 조민희(趙民熙)
자작 이병무(李秉武)
자작 이근명(李根命: 사망) 승계 이충세(李忠世)
자작 민영규(閔泳奎: 사망) 승계 민병삼(閔丙三)
자작 민영소(閔泳韶: 사망) 승계 민충식(閔忠植)
자작 민영휘(閔泳徽)
자작 김성근(金聲根: 사망) 승계 김호규(金虎圭)
남작 윤용구(尹用求) (작위 사양)
남작 홍순형(洪淳馨) (작위 사양)
남작 김석진(金奭鎮) (작위 사양)
남작 한창수(韓昌洙)
남작 이근상(李根湘: 사망) 승계 이장훈(李長薰)
남작 조희연(趙羲淵) 작위 반납(빈곤이 원인)
남작 박제빈(朴齊斌: 사망) 승계 박서양(朴敍陽)
남작 성기운(成岐運: 사망) 승계 성주경(成周綱)
남작 김춘희(金春熙: 사망) 승계 김교신(金敎莘)
남작 조동희(趙同熙) (예우 정지)
남작 박기양(朴箕陽)
남작 김사준(金思濬) (실작, 실형)
남작 장석주(張錫周: 사망) 승계 장인원(張寅源)
남작 민상호(閔商鎬)
남작 조동윤(趙東潤: 사망) 승계 조중구(趙重九)
남작 최석민(崔錫敏: 사망) 승계 최정원(崔正源)
남작 한구설(韓圭尗) (작위 사양)
남작 유길준(俞吉濬) (작위 사양)
남작 남연철(南延哲: 사망) 승계 남장희(南章熙)
남작 이건하(李乾夏: 사망) 승계 이완종(李完鍾)
남작 이용태(李容泰: 사망) 승계 이중환(李重桓)
남작 민영달(閔泳達) 작위 사양
남작 민영기(閔泳綺)
남작 이종건(李鍾健)

남작 이봉의(李鳳儀: 사망) 승계 이기원(李起元)
남작 윤웅렬(尹雄烈: 사망, 실작, 실형)
남작 이근호(李根皓: 사망) 승계 이동훈(李東薰)
남작 김가진(金嘉鎮) (습작 불능)
남작 정낙용(鄭洛鎔: 사망) 승계 정두화(鄭斗和)
남작 민종목(閔種默: 사망) 승계 민규현(閔奎鉉)
남작 이재극(李載克)
남작 이윤용(李允用)
남작 이정로(李正魯: 사망) 승계 이능세(李能世)
남작 김영철(金永哲: 사망) 승계 김영수(金英洙)
남작 이용원(李容元: 사망) 승계 이원호(李原鎬)
남작 김종한(金宗漢)
남작 조정구(趙鼎九) (작위 반환)
남작 김학진(金鶴鎮) 사망 승계 김덕한(金德漢)
남작 박용대(朴容大)
남작 조경호(趙慶鎬) (작위 사양)
남작 김사철(金思軸)
남작 김병익(金炳翊: 사망) 승계 후 작위를 잊음
남작 정한조(鄭漢朝: 사망) 승계 정천모(鄭天謨)
남작 이주영(李胄榮: 사망) 승계 이규환(李圭桓)
남작 민형식(閔炯植)
남작 이항구(李恒九)

훈1등 후작 이재완(李載完) (본관 전주, 사망)

씨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태어나 이조 제22대 장조 의(莊祖 懿)황제 현손의 양자(養子)가 되었다. 이태왕 전하(李太王殿下)의 종형이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마침내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각부 요직을 역임하였다. 1899년 완순군(完順君)에 봉작(封爵)되었고, 직후에 바로 정1품 보국(輔國)에 오르고 궁내부내대신(宮內府內大臣)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09년 9월 한국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綏章)에 특진하였다.

씨는 학식이 높고 명망이 높아 이태왕 전하의 신임이 두터우므로, 1899년경 경성 주재 일본공사관부 무관(武官) 노즈(野津) 대좌는 일찍이 이에 착안하여 일한외교의 친밀을

도모하기 위하여 씨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개인적으로 친교를 맺고 자주 왕래하여 세계의 대세(大勢)에서 일한관계는 지세, 인종, 문학 상 순치보차(脣齒輔車)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하며 크게 양해를 얻은 이후 일한 외교상의 커다란 효과를 올렸다.

즉,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을 발행하여 전 조선에 통용시킨 것도 이 사람이고, 현재의 경성의 대은행인 한성은행(漢城銀行)의 기안도, 한국의 도량형(度量衡)을 일본과 일치시킨 것도, 경의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준 것도, 영남지선(嶺南支線) 철도 부설권을 제일은행에 준 것도 모두 이 사람이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공로가 커서 노즈 무관의 활동 또한 경탄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러일전쟁의 이전으로 일한 간의 관계가 가장 혐약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노즈 대좌는 일찍이 이씨(李氏)가 금전에 무한한 욕심이 있는 것을 간파하여 이를 활용하여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이토(伊藤) 공이 전권대사로 발령받아 경성으로 돌아왔다. 한일의정서를 개정하고 한국의 시정개선에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며, 그 답례로 대사가 되어 일본에 갔다. 1906년 1월 훈1등 육일동화대수장(勳一等 旭日桐花大綬章)을 수여받았다. 1907년 4월에 육군부장(陸軍副將)에 임명되었으며, 이태왕 전하 양위 후 승녕부(承寧府) 총관을 맡았다.

씨는 언뜻 보기에도 그 풍채에 위엄과 예의가 있으며 왕족다움이 있으나 실제로는 대단한 이기주의자인데 다만 사업을 통해 금전을 얻으려 하는 탐욕주의는 없었다. 그러나 포탄을 막을 철을 제조하라고 이태왕 전하에게 비밀리에 주청하여 내탕고를 짜내어 북일영(北一營, 군기창과 같은 것)을 설립하여 10세기 이전의 활과 화살 등을 제조하고 대포 소총의 무용론을 선전하며 현대의 군비제도에 크게 반대했다. 이 때문에 고(故) 민영환 씨와 궁중의 대신 대기실에서 크게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민영환 씨는 유럽을 시찰하고 귀국하여 시정의 개선과 군제 개혁에 대해 열심히 주창하지만 이재완 씨의 반대 상소에 의해 전부 부결되어 그 실행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민씨(閔氏)가 이씨에게 국가의 중신이 사리 탐욕을 위해 거짓을 고하여 국가의 대계를 방해하는 것은 과연 씨의 본의인가 하며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씨가 말하기를 나는 종제의 금전을 취하는 것이지, 남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가족사업을 하는 것으로 국정에는 관계가 없다고 폭언을 토하면서 민씨를 가리키며 당신은 세력이 대단하여 금전이나 의식주가 천하일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소리를 일부러 하는 것이며 나와 같은 공복(空腹)의 정직한 자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하여 이곳에서 한바탕 다툼이 일어났다.

한일합방 당시에는 쳐자식과 문인식객에게 자신은 종사(宗社)를 위해 이번에 순사(殉死)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죽지 못하고 후에 후작(侯爵)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순사하려고 해도 쳐와 자식이 만류하여 수행하지 못했다. 참으로 분하기 그지없었으나 점차 나는 원래 국무대신이라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망국의 죄인이 되며, 또한 나는 병합조약에 관여한 것도 있다. 나는 조선황족의 고위자라서 후작을 수여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탄 난 것은 고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국가가 망하고 가정이 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단 하나 경성에서의 전설이다. 이이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이다. 자산은 약 200만 원 내외이다.

1916년 동생 이재곤(李載崑)과 공모하여 이씨 집안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계황당(係皇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은밀히 불평분자를 규합하여 고 김윤식, 유길준 등에게 부단히 연락을 취하던 가운데 1923년 사망했다. 이 당파는 현재 보종당(保宗黨)이라 칭하며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에 상당한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왕직(李王職)에서 때때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이 당파에 속한 중심인물들이다. 따라서 박영효 후작, 윤덕영 자작도 대체적으로 이에 찬동하였다. 고 송병준도 이 조직의 일원이다.

1922년 10월 아들 이달용(李達鎔)에게 습작되었고 현재 종4위(從四位), 훈3등(勳三等)이다.

종3위 훈1등 후작 이재각(李載覺) (육군소장 예우)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다. 철종대왕(哲宗大王)의 종손(從孫)으로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씨의 양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가문이(門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덕궁 이왕직 전하와 동갑이라고 하여(실은 전하보다 한 살 위이다) 갑술과(甲戌科, 전하와 동갑인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문과에 급제하여 삼품(三品) 이하의 각 요직을 역임하였다. 이후 1899년 마침내 종2품에 오르고 의양군(義陽君)에 책봉되었다. 1910년 마침내 종1품에 오르고 대훈위금척장(大勳位金沢章)에 올라 병합에 즈음하여서는 후작을 수여받았다. 현재 경성 북부의 계동(桂洞)에 살고 있다.

씨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방탕하였으며, 도박을 좋아하고 매우 도량이 좁은 사람이었다. 철종의 계통을 이어받고 있는 일파라서 대원군과 민비의 총애가 없어 다소 불평불만이 있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세력이 별로 없었는데, 일청전쟁 이후 민비의 밀정(密偵)으로 대원군의 동향과 당시 김홍집 내각을 정탐 밀고하여 민비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 후 민비 사건 이후에는 이태왕 전하의 밀정이 되어 러시아 공사관에 이어하시는 음모에 관여한 공로로 1902년에 특명영국대사로 발령받아 런던으로, 1905년 특명일본대사로 발령받아 동경에 파견되었으며, 육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받았다.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희망에 의해 일본 적십자사 사원이 되었고, 대사(大使)로서 동경의 적십자사 본부에서 간인노미야(閑院宮) 총재 전하 앞에서 사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금 1,000원을 기부목록에 적었다. 이에 따라 유공훈장을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귀국한 후에는 자신이 희망하여 입사한 것이 아니라며 상소하고 외부대신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기부금 납부에 대해 누차 재촉을 받아도 납부하지 않자 마침내 양국 간의 문제가 되었다.

통감부 시기에 들어서서 이 기부금을 궁내부(宮內府)가 변제(辨濟)하는 좋지 못한 일이 생기자 씨는 당시 대사의 교제비로서 2만 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태를 부린 것이라고 한다.

씨는 조선귀족 중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 일례를 하나 들 들면, 그의 부인 유씨가 콜레라에 걸려 자택에서 신음하던 것을 관내의 경찰관이 발견하게 되었다. 경기도 위생과(衛生課)는 귀족의 체면을 중시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려고 교섭하였는데 이재각 씨는 자신은 알지 못하는 바이며 병은 자신이 처방할 수 있다며 마음대로 약을 먹였다. 완전히 남처럼 병자를 대하면서 첨의 집에 편안히 피병해 있어서 경찰관도 크게 분노하여 후작 집안의 체면을 존중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마침내 병원으로 옮기어 일각의 노동자들과 함께 수용하였다. 이 당시 유씨 부인은 경찰관에게 매우 감사해한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친형 이재현 씨의 부채 때문에 60만 원의 자산을 파산하게 되어 경성에서 조선의 내로라하는 유자들이 모여 이를 처분해 주었다. 씨에게 4,000원의 공채(公債)를 6개월간 대여하면 씨의 재산은 안전하게 정리를 하고도 30만 원이 남는다고 예상하여 정리위원회가 간청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은 파산을 당했다. 당시 위원으로 있던 은행가, 변호사, 기타 지명도가 있는 신사들 다수가 매우 격앙하여 사회의 여론에 알리려고까지 하였다. 당시 이재현 씨의 부채는 부동산(토지가옥)을 매점하여 갑자기 금융 고정이 이루어진 것이지 방탕한 생활의 결과는 아니어서 일반인의 동정을 샀다. 파산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금융 유통이 순조롭게 회복되어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부동산은 처분하였다. 그 후 씨에 대해 몰인정한 사람이라 하여 접근해오는 사람은 적어졌다.

현재 이가종약소(李家宗約所)⁴⁾의 부총재인 이강공(李岡公, 의친왕) 전하의 추천에 의해 이에 종사했고 철종대왕 계통의 관계상 박영효 후작과 친밀하게 지냈고 술은 마시지는 않지만 이강공 전하의 술자리에 참석하는 대우를 받아 자주 출입하였다. 현재는 도박으로 자산을 거의 잃고 곤궁하게 살고 있다.

종3위 후작 이해창(李海昌) (본관 전주)

씨는 경기도 포천군 출생으로 이왕가의 먼 친척이다. 도정궁(都正宮) 경원군(慶原君) 이하전(李夏誼) 씨의 양자가 되어 경성으로 왔다. 성격이 온화하고 군자의 기품이 있으며 사람과 접할 때는 겸손하게 처신하고 근엄함이 있었다. 그래서 60년 동안 한 번도 관해(官海)의 풍파를 만난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해창은 귀족 중에서도 보기 드문 근검, 소박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에게 알려질 정도로 야심도 없고 세상사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는 지극히 냉정한 지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천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들 수 있다. 그 양부 이하전(李夏誼) 씨는 철종이 왕위를 계승할 당시 후보자의 한 사람이었으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제주도에 유배되어 일생을 보내다가 왕명에 의해 사약을 받았다. 이 사건에는 더 복잡한 내막이 있다. 지금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철종의 선대 즉 현종(憲宗)이 붕어하자 왕실의 가까운 친척 중에 적당한 후보자를 물색할 당시, 일시(약 2개월) 왕위가 공석이 되어 김 대비(金大妃)가 수렴정치를 하면서 잠시 여왕 형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김씨가 외척권을 주장하여 그 어떠한 후보자도 김씨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정권을 자유로이 하려고 욕심을 내었다. 결국 강화도에 침거하는 철종(한 농가에서 생활을 함)을 경성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당시 철종은 농가의 일개 평민이었고 그 조상은 옛날에 강화도로 퇴거된 왕족의 자손이었다. 김씨가 이하전과 절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면 친족인 철종을 그것도 면 섭에서 불러들인 것은 자신의 권력으로 농단한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세상에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하전 같은 명망 높은 인물을 살려두는 것은 장래의 화근을 남기는 것이라 하여 마침내 살해하게 된 것이다.

이하전 같은 명문에서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자 참혹하게도 경기도 포천군에서 면 친

4) 이씨종약소를 말함.

족인 이해창 씨를 맞이하여 양자로 삼아 이하전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해창 씨는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갑자기 대가(大家)의 후계자가 되었고 양부의 생전에 당한 일을 생각하여 항상 온화함과 미덕을 함양하여 일신의 안전을 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과시험에 급제하여 조상(문별) 덕분으로 특별임용 발령을 받아 임관하여 구한국시대의 위풍당당한 관직을 역임하고 1907년에 이르러 시세의 변화에 편승하여 일약(一躍) 종1품에 오르게 된다. 1910년에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을 수여받고 한일합방 당시에 조선귀족령에 의해 후작을 수여받았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

현재는 사직동의 구(舊) 도정궁에 조용히 살며 독서와 바둑에 빠져 살고 있다. 자산은 약 340만 원 이내라 한다.

종4위 후작 이해승 (본관 전주)

씨는 경성 출생으로 육군부장 1품보국전궁내대신(一品輔國前宮內大臣)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풍선군(豐善君) 이한용(李漢鎔)이다. 영친왕(英親王)(왕세자)의 학우로 이미 수학원(修學院)에 입학, 졸업하여 조상의 후광을 업고 특별 임용령에 의해 임관하게 되었다. 참봉시강(參奉侍講)⁵⁾ 등을 역임하고 1910년 6월 정2품에 오르고 같은 해 8월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을 받았다.

씨는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 씨의 어머니 홍씨(洪氏)의 여동생의 자손에 해당한다. 철종 대왕의 계통으로 박 후작과도 친척관계이다. 조선귀족 중 가장 연소자인데, 천성은 냉철하고 영리했지만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고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엄한 가정교육이 없어서 그런지 방탕한 생활에 빠져 발전의 기대가 없었다. 자산은 100만 원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박 후작은 서둘러서 재산을 정리했는데 그 결과 부동산은 전부 은행의 담보로 잡혔다. 이왕직을 비롯해 윤덕영, 송병준, 박영효 씨

5) 고종 31년(1894) 7월 22일 궁내부 관제를 제정할 때 세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옛날과 같이 시강원(侍講院)을 그대로 두고 서연관(書筵官)으로 사(師) · 부(傅) · 이사(貳師) · 빈객(賓客) · 찬선(贊善) · 보덕(輔德) · 필선(弼善) · 진선(進善) · 문학(文學) · 사서(司書) · 설서(說書) · 자의(諮議) 등 직도 그대로 두었다. 광무 6년(1902) 3월 2일 시강원 직제를 개정하여 일강관(日講官) 5인(칙임)을 두었는데 홍문관 대학사(弘文館大學士)와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가 이것을 겸하고, 그 밑에 첨사(詹事)(칙임) · 부첨사(副詹事)(주임)와 시강관(侍講官) · 시독관(侍讀官)(판임)을 두었으며, 7년(1903)에는 다시 서연관을 두어 유현(儒賢)으로 이에 임명하였다.

등의 보증과 상당한 보조에 의해 빛 갚는 성적이 매우 양호해졌다고 한다. 한일합방 당시에는 후작을 수여받게 되었다. 조부(祖父) 고 이재순 씨는 유명한 배일자(俳日者)로 세상에 알려졌었으며, 전에 일본대사로서 동경에 외유했던 적이 있다. 이태왕 전하가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실 때의 음모의 거두(巨頭)로 크게 활약했다.

종3위 훈1등 후작 윤택영(尹澤榮) (본관 해평(海平), 노론, 서인)

씨는 경성에서 태어나, 의정대신(議政大臣) 고 윤용선(尹容善) 씨의 손자로서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 윤철구(尹徹求) 씨의 셋째이다. 형제가 다섯 명이었지만 장남은 일찍 죽고 둘째 형은 자작 윤덕영이다. 창덕궁 이왕비 전하의 친정아버지(國舅)에 해당한다.

씨는 연령관계상 문과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특별임용령에 의해 임관되었다. 시종, 영친왕부령(英親王府令), 혜민원총무(惠民院總務), 영친왕부총판(英親王府總辦) 등을 역임하고, 1905년 이왕비 전하가 자리에 오르자 지돈녕사사(知敦寧司事) 등을 거쳐 육군참장(陸軍參將), 육군부장(陸軍副將)에 임명되고 육군찬모관의 요직에 보직되었다. 이왕 전하께서 제위에 오른 후 군대해산 당시 육군부장에서 해관(解官)되었고 해풍부원군(海豐府院君)에 봉작되어 정1품 보국(輔國)에 올라 영돈녕사사(寧敦令司事)에 임명되었다. 이것은 조선 국모의 친정아버지에 대한 통례적 순서로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1909년에 특별히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大金尺大綬章)을 배수하였다.

씨는 천성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교묘하여 둘째 형 윤덕영 씨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경성 정치계에서 유명한 형제들이었다.

이왕비 전하의 책립에 관해 그 이면의 관계들을 개략적으로 언급하면, 이왕 전하는 어릴 적에 병을 앓아서 승계 기대는 없었다. 따라서 뒤를 이를 왕위 계승은 이강공(李岡公, 당시 의친왕(義親王)) 혹은 영친왕(英親王)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왕 전하의 심산이 영친왕에게 있었다는 것은 인정(人情)상으로 보아도 또한 장래 엄비의 세력관계에서 보아도 아무도 의심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이태왕 전하는 이왕 전하 생전에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년 대계를 고려해서 외척 중 가장 번성한 곳을 선정하여 결정하였다.

즉 먼저 비(妃) 전하의 집안은 민씨 집안으로 상당한 세력이 있어 안심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어 윤씨 집안의 5명의 형제 인물과 그 문하의 번영을 숙고한 후 윤비(尹妃)의 책립을 결정했다. 이 이외에 다른 변수의 관계도 존재했다. 즉 엄비(嚴妃)

입장에서는 정실 비가 아니어서 자신의 지위를 불안히 여겨 내부 세력을 키우기 위해 고심하며 영친왕 보호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을 때 민비(당시 황태자비) 전하가 돌아가시게 되었다.

궁중 내의 세력은 자연히 엄비에게 돌아가 엄비가 크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황태자비의 재선(再選)에 즈음해서는 자기세력 범위 내를 생각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비(妃) 전하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지식과 양식을 갖추면 자신의 자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아니 최연소자를 선정하여 자신이 양육하는 방식으로 하여 자기의 세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방침이었다. 마침 영친부총판(英親府總辦) 윤택영 씨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신하를 파견하여 몰래 조사한 후 재빨리 윤택영을 몰래 만나 속마음을 알아보고 왕실과 윤씨 집안과 엄비와의 삼각동맹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두 집을 오가며 알선한 자는 당시 내부지방국장(内部地方局長)인 이용복(李容復)이었다(이용복은 엄비의 종질에 해당한다). 윤비 전하 옹립 당시의 나이는 실제 12세였다. 이리하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옹립된 것은 실로 이상과 같은 이유였다.

또한 이 이외에도 윤택영 씨의 조부(祖父) 윤용선(尹容善) 씨가 의정대신(議政大臣) 시절에 이태왕 전하에게 곤위(坤位)⁶⁾는 하루라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엄비를 황후 자리에 추대하려고 상소하고 세간의 동지를 모으려 여론을 환기시켜 거의 성공할 뻔했으나 지금의 이왕 전하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함으로써 엄비와 윤씨 사이에 불만을 낳게 되었고,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 것도 말하자면 윤씨 형제들이 술책에 능했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1910년 한일합방 때 후작을 받았고, 현재는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빚에 허덕이며 몸을 피해 북경에 유랑하여 아편에 중독되어 있다. 또한 옛날 부자의 그늘, 말하자면 이왕 직의 친척의 채무정리가 다년간 문제가 되고 일생일대 난관이 되었다. 채권자들은 윤씨에 대해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씨는 또한 이왕 전하의 즉위 후 왕세자 전하를 방해하고(阻外) 이강공 전하의 첫째 아들 즉 용길(勇吉) 공을 옹립하려고 구한국시대에 이왕가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에 대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미연에 발각된 사실이 있다. 지금은 대세가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며, 이것을 꿈꾸는 도당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6) 왕후의 지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종3위 후작 박영효(朴泳孝) (본관 반남(蕃南), 노론)

씨는 경기도 수원군에서 태어났다. 영의정(총리대신) 박원양(朴元陽) 씨의 3남이다. 13세 때 철종대왕의 부마로 선정되어 금릉위(錦陵尉)의 영작을 받았다. 씨의 집안은 이조 때 명문의 후예였지만 중세에 실력을 잃어 단지 지조 결백한 집안이 되어 생존했다. 생부 박원양 씨도 한학 선생으로 수원군의 한 지역에서 지인들의 자녀들을 모아 곤궁한 상황 속에서도 육영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박영효 씨가 금릉위에 오르자 한 집안의 번영에 공헌한 것이 되었다.

그 문하생의 대부분은 큰 인물이 되었는데 대신 어윤중(魚允中), 신기선(申基善), 이도재(李道宰)와 같은 인물들이 그 중심인물이다. 그 후 박영효 씨의 죄에 연좌되어 망명하기도 하고 부모 형제가 함께 죄에 연좌되어 가족이 사형 선고를 받아 옥중에서 죽기도 하여 일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을 당했다. 실제로 박영효 씨의 생애는 때로는 일척 건곤(一擲乾坤)⁷⁾의 쾌거를 기획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국에 망명하여 참혹하게 생을 보내기도 하며, 혹은 정치에 참석하여 종묘를 다루기도 하며, 때로는 배고픔을 견디며 유배지의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실로 파란만장했다.

아들을 아는 것은 부모에 따를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박원양은 항상 탄식하며 말하기를 장남 영교(泳敎)는 훗날 잘될 것 같은 희망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벼룩이 있다고 했다. 차남은 의기소침하여 기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3남 영효는 견인침묵(堅忍沈默)의 기질이 있는데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없고 혼자서 작은 간계를 부리는 등 기이한 벼룩이 있다고 했다. 장래에 반드시 화를 불러 우리 집안을 쇠퇴시킬 운이 목전에 있다. 따라서 이를 구할 길은 문하생 중 유일하게 어윤중뿐이다(한 집안이 연좌죄에 의해 아버지 원양, 형 영교는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어윤중 씨는 옛정을 중히 여겨 홀로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을 하고 몰래 유족을 도왔다. 그러다 그 일이 발각되어 어윤중 씨 또한 형을 받았다).

박영효 씨가 철종대왕의 부마가 된 것은 유명한데 그것은 대원군의 정략결혼이었다. 여하튼 이태왕 전하의 책립은 철종파의 반대에 의해 쉽지가 않았다. 조동윤(趙東潤) 남작의 생부 조영하(趙寧夏) 보국(輔國)과 음모하여 익종(翼宗) 대왕 계통을 이어 조 대비(趙大妃) 전하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겨우 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철종 일파에 세

7)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걸음.

력이 발호하면 이태왕 전하의 위치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 철종의 사위는 이름 없는 유학자 집안의 문하생 중 한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점차 민씨 일가의 세력이 발호하여 대원군의 설정은 봉환(奉還)되고 예상외의 국면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대원군과 민비의 알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그 유명한 임오군란이 일어났고, 이때 민비는 민간으로 탈출하여 여러 가지 음모와 밀책을 꾀하여 중국정부에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이홍장(李鴻章)은 장군(將軍) 오장경(吳長慶)에게 명령하여 일개 대대(약 1,500명)의 병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대원군을 포로로 잡고 중국정부의 보정부(保定府)에 감금하였고, 종사관(從事官) 위안 스카이(袁世凱)에게 병사 300명을 주어 경성에 잔류시키게 하였다.

민비의 복위 후 그 일파의 세력은 갑자기 흔천동지(掀天動地)의 느낌을 만나는데 당시 한정(韓廷)은 홍영식, 김옥균, 민영익(閔泳翊), 박영효 이하 다수의 청년명사의 급진파가 크게 내정 개혁을 꾀함과 동시에 대외관계에서는 중국에 대항하고 일본으로 접근을 꾀하고 있었다(일본의 충고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정계의 파란은 일단락되고 1882년 박영효 씨를 대사로 김만식(金晚植)을 부대사로 하여 서광범, 민영익, 김옥균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양국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국교를 수정(修訂)하기도 하였다.

귀국 후 국정의 쇄신을 꾀하고 일본에서 군사고문을 초빙하여 김옥균, 홍영식(洪英植)과 모의하여 조선우정국(朝鮮郵政局)을 설립하여 씨는 전후영사(前後營使, 대장으로서 사단장처럼 실권을 장악한 군사 보직)를 맡아 왕 전하에게 주상하여 국정 일신의 조칙을 내렸다고 한다. 위안 스카이가 청군을 이끌고 입궐하자 싸웠으나 패하여 많은 동지가 살해되는 바람에 잠시 김옥균과 함께 일본에 망명하여 이름을 야마자키 에이하루(山崎永春)라 자칭하며 10년간 이국에서 빈곤과 고독을 맛보았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국왕전하로부터 소환명령을 받아 11월에 귀국하여 같은 해 12월 김홍집 내각에 입각하여 내부대신을 맡아 시정의 일신을 꾀하였지만 평소 부친인 원양(元陽) 씨의 말처럼 잔꾀를 부리는 성격이 있어 이강공 전하의 추대(推戴) 밀책을 세우려고 일을 꾸미다가 중간에 폭로되어 다시 일본에 망명하게 되었다.

내부대신 재직 중에도 각 부서의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여 각 대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민비와 결탁하여 정부각료와의 의견 교환을 소홀히 했었던 것이었다. 마침내는 민비의 이간책에 편승했다는 것을 알고, 러일전쟁 이후로는 일본 외무성의 야마자(山座) 통상국장에게 정부의 의향을 대표하여 조선의 망명자들에게 경거망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때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받고 마침내 귀국길에 오르게 되

었지만, 일본 정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태왕 전하에게 간청하여 몰래 귀국했다. 그리고 바로 궁내대신(宮內大臣)이 되자 이토(伊藤博文) 통감과 갈등을 일으켜 정미정변(丁未政變)으로 대신 직에서 면직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다.

한일합방 후 유배에서 풀려 경성으로 돌아와 후작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항상 불평이 많고 또한 불평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러던 중 배일적(排日的) 언동을 하자 경성 정계의 요주의 인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시절에 크게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만세소요 후에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구(舊)감정을 초월한 넓은 채용정책에 의해 중추원 고문 및 식산은행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또한 훈1등 서보장(瑞寶章)을 받고 현재는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한때는 조선 내외의 불평분자를 규합하여 큰일을 일으키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평온하게 조용해진 것은 전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자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이 사람은 도량이 협소하여 여성에 가까운 점이 있다. 자산은 약 20, 30만 원 이내라고 한다.

중추원 부의장, 정3위 훈1등 후작 이완용(李完用) (본관 우봉(牛峰), 노론)

경기도 광주군(廣州郡)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1품보국(一品輔國) 이호준(李鎬俊) 씨(이태왕 전하 즉위 때 알선의 공이 있어 전하가 덕을 베풀어 중용했다. 조야(朝野)에 큰 세력을 가졌고, 이완용 씨가 이태왕 전하에게 중용된 것은 원래 씨의 비범한 수완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또는 아버지 호준의 권세와 명예에 의한 것이라고도 한다)의 양자로 들어가 이윤용(李允用, 후에 남작을 받음)의 동생이 된다.

이렇게 양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유래(由來)로 조선의 관습상 양반은 서자(庶子)에게 가독(家督)⁸⁾을 상속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의 법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습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서자는 명예로운 요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서자에게 가독을 상속시켜서는 안 된다. 자손대대로 고위 고관을 얻었던 집안도 하루아침에 문지(門地)가 부진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데서 양자(養子)를 삼아 가독을 상속시킨다. 이호준(李鎬俊) 씨도 그 일례로서, 이윤용(李允用)이라는 친자가 있었으나 서자여서 그를 제외하고 면 친척인 이완용 씨를 양자로 들여 승계시켰

8) 집안의 대를 이어갈 맏아들의 신분을 말함.

다. (조선에서는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그 여자의 사위를 양자로 삼는 일은 절대 없어서, 여자는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고 다른 데서 양자를 받아들여 다른 여자와 배필을 맺어주는 제도가 있다. 그 아들이 엄마 성(姓)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씨는 안정(安政) 5년(1858)에 태어나 1882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887년 9월에 주미공사관 참찬관(參贊官)으로 부임하였다. 다음해 5월 귀국한 후 한 달이 지나 정부의 명을 받고 천진(天津) 상해 지방을 다녀왔고, 10월에는 미국 워싱턴 대리공사(代理公使)로 임명되어 약 2년간 재임했으며, 1890년 10월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돌아왔다. 1894년 8월 주일전권공사(駐日全權公使)를 임명받아 부임하여 머물다가 다음해 5월 외무협변(外務協辦)에서 일약(一躍)하여 학부대신이 되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김홍집 등이 일본당 내각을 조직하게 되어 파면징계를 받고 정치를 떠났다.

이범진(李範晉), 이윤용(李允用)과 함께 친러삼이(親露三李)라 불린 것은 이때의 일이다. 여우처럼 러시아공사 유베르와 결탁하여 춘천(春川)의 폭동자들이 한성(漢城)을 습격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히고 궁정(宮廷)을 놀라게 만들어 즉시 위병을 파견하여 이것을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성(皇城) 내의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유베르는 인민의 폭동을 방비하기 위한 명목으로 러시아 수병을 경성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1896년 2월 11일 국왕 및 세자를 러시아공사관 내로 데리고 가서 방에 구금하였다. 러시아공사관 내에서 조칙을 발하여 일본당 내각을 전복시켜 김홍집, 정병하, 어윤중 등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범진과 함께 내각을 조직하여 스스로 외부대신(外部大臣)이 되고 학부농상공부도지부(學部農商工部度支部)의 임시서리대신(臨時署理大臣)을 겸하며 7월에 이르러서는 학부대신을 역임하였다.

이래 수년간 지방 관찰사가 되고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하였다. 이것도 정변과 함께 여러 번 파면을 당하여 일시적으로 세력을 잃은 상태에 빠지지만, 1905년 9월에 이르러 박제순 내각이 조직될 때 학부대신이 되었다. 1907년 5월 즉 황위 양위 3개월 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의 추대에 의해 총리대신이 되어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고 혁신에 종사하여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단행하였다.

그는 기회를 보아 민첩하게 행동하며 결단력이 있어 한번 마음을 정하면 강담강실(剛膽堅實) 즉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결행하였다. 1907년 황위 이양 때에 엄비(嚴妃)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영친왕(이은(李垠) 전하)을 황태자로 즉위시키는 조건이라는 임기응변의 책략을 내세웠다고 한다. 아래 항상 시세에 발맞추는 행동을 취하지만 1909년 12월 흥한(興漢) 이재명(李在明)의 난을 만나 중상을 입고 수개월의 치료를 받고 쾌유하였다. 1910년 데라우치(寺內) 총독시대 정국 세력에 순응하여 한일합방조

약 체결에 연계되었으며 8월 22일을 기해 데라우치 통감과의 사이에 조인을 맺었다. 이 공적에 의해 백작을 수여받고 후에 왕세자 전하의 혼인 때에 후작을 받았다. 현재는 중추원 부의장의 직위에 있으며 조선 총독보좌로서 조선인 중 최고위 관직을 역임했다. 한국시대 대관(大官)에 있었으며 태황제(太皇帝) 내탕금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현재 재산은 조선인 중 최고여서 적어도 3백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추원 고문, 종3위 훈1등 백작 이지용(李址鎔) (본관 전주, 노론, 서인)

씨는 장종(莊宗) 대왕의 5대손 영의정 흥인군(興寅君) 이최옹(李最應: 대원군의 형)의 손자로 예조판서(외무대신에 해당) 완영군(完永君) 이재경(李載競)의 양자로 이태왕 전하의 종질이다. 태어난 본가는 광주군(廣州郡) 궁촌(宮村)으로 그 생부는 이재하(李在夏)이다.

나이 1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씨는 대원군의 종손자였지만 고(故) 민비 전하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 이지용의 부인 홍옥경 씨는 민영달(閔泳達) 부인과 자매 관계여서 민씨 집안의 보호를 받았다.

1894년 김홍집 내각 때 다수의 유학생을 동경에 파견했는데 이지용도 민비의 총애를 받아 1895년 4월 궁내부 유학생으로서 43명의 명문 중에 선발되어 신사유람단의 명의로 씨 동경에 파견되었다. 내각에서 먼저 파견된 유학생의 행동을 탐사 보고하며 시세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년을 지낼 때 경성에서는 민비사건이 일어나고 삼삼오오 숨어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겪었다.

이때 조선의 인심은 모두 참담했고 김홍집 내각은 국가적 미증유의 사변으로 인해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태왕 전하의 명령에 의해 충청도 보은군에 은거 중인 어윤중 씨를 불러들여 이 난국을 수습하게 하였다. 즉 군부대신(軍部大臣) 겸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을 맡아 즉시 왕비를 왕비직에 복위시키고 국장(國葬)을 치르도록 하여 민심을 위무하였다.

당시 책임자로서 전 군부대신(軍部大臣) 조희연(趙羲淵) 이하 당시의 훈련대(訓練隊)의 대대장(大隊長) 이하를 죄로 다스리려 하였지만 범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망명한 뒤였다. 이로써 표면상으로는 질서가 회복되었지만 의구심은 점점 높아졌고,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여 육전대를 인천에 상륙시키고 경성에 들어와 이태왕 전하를 마

침내 러시아공관으로 이어시켰다. 김홍집 내각은 와해되어 태반이 살육당하는 불상사를 당하였다. 이때 이지용은 이근용(李根鎔)과 연계하여 이 음모에 대한 공로가 있어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황해, 경상 두 지역의 관찰사를 거쳐 궁내부협판(宮內府協辦) 및 대신서리(大臣署理)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육군참장(陸軍參將)으로 임명되어 현병사령관이 되었다. 후에 육군부장(陸軍副將)이 되고 원수부검사국총장(元帥府檢查局總長)이 되어 세력을 크게 펼치게 되었다. 이때 경성의 정계는 모두 러시아파가 점거하게 되었다. 민비의 복수를 실천하고 배일(排日)을 실시하기 위해 전 내각의 각료들 중 잔존자들 및 망명자를 잡아내어 처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본에서 고노에 아츠시마로(近衛篤磨) 공작이 조선의 정치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경성에 와서 이태왕 전하를 알현하였고, 궁내부차관이었던 이지용을 만나서 세계의 대세에서 한일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열심히 진술하자 개인적으로 큰 호감을 얻었다. 이것에는 당시 공사관부 무관(公使館附 武官) 노즈(野津) 소좌의 알선이 있었으며, 이전에 이지용을 육군장관으로 추천한 것도 노즈 씨로 하여금 일본 및 여러 외국 황족의 군적(軍籍)을 둘 것을 역설하게 한 결과였다. 이후 일본 공사관원 등과 친밀하게 교제했으며 그 결과 일본당의 주목을 받아 러시아파가 집권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세력을 잃은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태왕 전하는 매우 불안해하여 이지용을 외무대신서리로 임명하여 이지용에게 일본과 교섭하도록 하여 일본의 호의를 구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그날 밤 당시의 공사관부 무관 관사(현재 현병대사령관 관사)에 공사관부 무관 이지치 고스케(伊知地幸介) 소장과 후쿠이(福井) 해군중좌와 경성주재원 노즈 중좌 등이 회합하여 외무대신 이지용 씨를 불러 러일전쟁을 몰래 보여주고 한일의 정서를 은밀히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이태왕 전하에게 시국을 급히 직접 주상하여 친일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역설하여 그 다음날 하야시(林) 공사와 의정서의 조인을 완료하고 국제공법상의 중립지대통과 권한을 얻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편의를 얻었다.

그 후 곧바로 외무대신으로 임명을 받아 한일조약을 7개 조약으로 개정하여 법부대신에게 전달하여 일본국보빙대사의 중요한 임무를 떠고 도일하여 훈1등 육일대수장(勳一等 旭日大綬章)을 수여받고 귀국하였으나, 그 후 조선 내에서 반감을 사서 농상공부대신으로 좌천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전쟁승리가 확실해지자 바로 내무대신으로 영전하였고 특명대사로서 일본에 부임하여 육일동화대수장을 수여받았다.

당시 외교관계가 점점 복잡해져 가자 이지용 씨만을 희생양으로 하고 있어 불쌍하기

도 하여 보호책으로 정계에서 은퇴시켰는데 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불평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노즈 대좌의 충고를 받아들여 정치와의 인연을 끊고 군인으로서 조선의 군정(軍政)에 진력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총감으로 임명되어 정계에서 벗어났다. 군대해산에 즈음해서는부장(副將)에서 해임되고 중추원고문에 임명되어 이태왕 전하 양위라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박람회 시찰관으로 세 번 일본에 건너갔다. 이태왕 전하 양위 후 다음해 2월 대훈위이화대수장을 수여받고 1910년 8월 합방 당시 과거 공로에 의해 특별히 영광스러운 백작을 수여받았다.

씨는 천성적으로 영리하고 임기응변의 수완이 좋았다. 또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아량도 있고 웅변에 매우 능했다. 그렇지만 도박을 좋아하여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명성도 크게 실추하여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시대에 백작의 예우를 중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크게 개선하자 이를 인정하여 사이토 마코토 총독 시대에는 예우 정지를 회복하여 현재는 중추원 고문으로서 친임 대우를 받는 요직에 있다.

정4위 훈2등 백작 민영린(閔泳璘) (본관 여흥(驪興), 작위를 잃음)

씨는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출생하여 보국(輔國) 민태호(閔台鎬) 씨의 양자가 되었으며 창덕궁 이왕비 전하의(윤비(尹妃) 전하의 앞의 비) 친형에 해당한다. 상해에서 사망한 민영의(閔泳翊), 민영선(閔泳璇)과 삼형제이다. 민태호 씨는 친아들인 민영익을 여양부 원군(驪陽府院君)의 종가, 말하자면 죽동궁(竹洞宮)의 상속인으로 양자 보냈기 때문에 부득이 민영린을 양자로 받아들였다. 민영선은 현재 서자인 까닭에 상속권이 없다.

1892년 문과에 급제하여 각 부처를 역임하고 1904년 예식원부경(궁내부)을 명받아 일본국보빙대사 완순군 이재완(李載完)의 수행을 명받아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훈2등 서보장(勳二等 瑞寶章)을 수여받았고, 1907년 일본 궁내성 사무시찰 명령을 받아 도일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장례원경(掌禮院卿)에 임명되었다. 그 뒤에는 규장각 제학으로 전임하여 고등관 1등이 되었다. 한일합방 때 고민비의 오빠에 해당하는 관계로 조선귀족령에 의해 백작을 수여받았다.

씨의 인간성을 보면 성품이 온후하고 그 기풍은 언뜻 보기에도 귀공자와 같으나 위엄을 그 자신 스스로가 갖추지 않은 것이 아쉽다. 아편에 중독되어 지금은 전혀 무용의 인물이다. 1916년 아편을 흡입한 현행법으로 검사의 고소에 의해 구형을 받았다. 1919년 7월에 실작한 데다 자산도 상당히 있었으나 불량한 사람의 권유에 빠져 영리사업에 투자했

다가 실패한 결과 전부 탕진하여 현재는 이왕직으로부터 매월 약간의 생활비를 보조받는 형편이 되었다. 이전에 요직에 있을 때 조금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이태왕 전하에게 누누이 직언을 간하는 충실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졌었는데, 아편에 빠진 것도 국사를 돌보지 못하는 것을 비관한 결과 세상을 걱정하여 신경병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정4위 훈1등 백작 송병준(宋秉畯) (본관 은진(恩津), 노론이라고 자칭, 사망)

씨는 함경남도 함흥군(咸興郡) 경주인(京主人, 경성사람이 숙박하는 여관의 주인으로서 각 군마다 이것이 있었다. 군수 경질 때에는 여비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이자를 부과한다) 송원달(宋元達, 후에 개명하여 송□수(宋□洙)라고 함)의 양자로 함흥 관기(官妓)에게서 태어났다. 출생지는 함경도 장진군(長津)인데 태어날 때부터 영리하고 용모가 수려하여 기이한 미동자(美童子)라 불렸다. 13, 14세 때에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경성의 본가에서 냉대를 받아 분격하여 미성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동궁 이재원 보국집안의 가업을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 이재원(李載元, 대원군의 중형) 씨는 그 용모의 비범함과 아름다움을 어여삐 여겨 서생으로 삼아 문지기로 삼았다. 그때 행동이 영리하여 어느 날 이재원 씨가 말하기를 너는 결코 우리 집에서 하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르고, 분발 노력하여 훗날의 성공을 꾀하라고 하며 퇴거를 명했다(이재원 씨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다고 함). 송병준은 크게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저하고 있을 때 마침 죽동궁(竹洞宮) 민영익 씨(민비의 조카)가 당시 정계의 세력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민씨 집안의 집사로 일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 집사가 되었다.

민씨 집안 내에서 시중을 들며 민비의 편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궁중에 출입하게 된다. 그 행동이 민첩하여 민비 전하에게 크게 총애를 받게 되고 궁중의 대전별감(大殿別監)을 명받아(봉찬의 취급을 받음, 또는 전령으로 사용함) 약방 관기의 남편(포주)이 된다. 통상적으로 대전별감은 기생 남편이 되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하여 궁중의 여러 대신 집안들에 출입하게 되었고, 많은 대신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양반이 되어 관리(官吏)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먼저 관리인 민영익에게 간청하여 무과에 응시, 이에 급제하여 수문장(守門將)에 임명되었고, 훈련주보(訓練主簿), 훈련판관(訓練判官), 훈련첨정(訓練僉正), 도총부도사(都總府都事),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판임관)을 역임하였다.

먼저 양반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송씨 성을 가진 대가(大家)를 찾아가 양자가 되기로 하였다. 당시 회덕군의 은진(恩津) 송씨는 송시열 선생의 후예로서 이조에 유림의 종가로 그 이름을 떨친 명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송씨 집안에 양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열심히 지성을 들이며 노력한 결과, 송씨 집안은 크게 감동하였다. 송씨 집안은 회의를 열어 선대 중 자손이 없는 일가에 후사로서 송병준을 양자로 할 것을 정하였다. 그 후계자가 없는 일가는 우암 송시열 씨의 종증손으로 유학자의 명문이지만 예절을 논함에 일반인들과 의견을 달리하여 조정의 죄를 사서 사약을 받은 송치중(宋致中)의 집안이었다. 이 사람은 손자까지 있었는데 증손자 단계에서 후계자가 끊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연유로 사람들은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송병준은 그 선택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송병준은 오랜 세월의 희망을 달성하여 양반이 되어 관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출신이 명문 집안의 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아 잘 알려진 명문 선비들과는 교류를 가질 수 없게 되자, 권세파인 고관대작에 도저히 오를 수 없음을 깨닫고 분개하면서도 시기가 올 것을 기다렸다. 때는 1876년 구로다(黒田) 대사를 부산에서 환영하는 접반원의 수행원이 되어 처음으로 선진국 일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매우 기뻐했다.

후에 오쿠라 요시하치로(大倉喜八郎) 씨를 알게 되어 장사용(상업) 건물을 송병준 명의로 부산에 신설하였다.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지만 여하튼 일본을 통해 장래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착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당시의 정황 속에서는 선견지명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대원군과 민비가 충돌한 것) 때 폭도들 때문에 재산이 불타게 되었다. 민영익의 문객으로 민비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잠시 난을 피해 생명을 보전했다.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 부인들 및 그 자녀들의 피난을 도와 자신의 자택에 숨겨주고 안전하게 공사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인천에서 일본으로 보내주었다. 일본인은 도미다(富田)라 칭하던 사람으로 일본으로 돌아간 후 송병준에게 편지를 보내어 당시의 은혜에 사례를 베풀고 싶다고 하여 조선을 떠나 일본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관계로 인연이 되어 도미다를 의지하여 도일(渡日)하여 크게 천하의 대세를 깨닫고 망명 중의 김옥균 씨를 찾아가 고견을 들었다.

다음해 1886년 망명자 밀통 혐의로 검거되는데 민씨 집안의 세력이 회복되던 시기여서 그 도움으로 바로 석방되어 중추도사(中樞都事), 친군후영대관(親軍後營隊官, 지금의 중위에 해당)을 명받았다. 이것은 고 민영환 씨 집안의 집사로 있던 관계로 민영환 씨가 알선했다. 그 이전에 민영익 씨가 갑신정변 때에 상해로 도망하였을 때 민씨 가족은 전

부 민영환 씨 권세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민영익 집안을 떠나 민영환 집안의 집사로 옮겼다.

이때부터 궁중에 출입하여 민비의 심부름꾼으로서 상해의 민영익에게 편지를 전달함으로써 민비의 총애가 이전의 배에 달하였고, 1890년 양지(陽智) 현감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그 후 청렴결백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선정(善政)을 베풀자 다음해 친군장위영령관(親軍壯衛營領館, 오늘날의 대위에 해당)에 올랐다.

1894년 청일전쟁 전 동학도의 난 때에 혁명 목적을 가지고 동학도에 침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관리로서 또는 민비 일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신용을 잃고 실패로 끝났다. 청일전쟁 후에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없으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개성의 인삼 종자를 다량으로 밀매하여 1895년 일본으로 건너가 스스로 노다 헤지로(野田平治郎)라 칭하며 인삼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토지를 선택하기 위해 일본 각지를 돌아 북해도, 대만에 이르기까지 족적을 남겼다. 이때 박영효 씨의 소개로 일본 제야의 명사(名士)를 방문하여 야마구치(山口)현 아무(阿武)군 하기마치(萩町)에 양잠 염색 연습소를 창립하여 조선인 남녀학생을 초청하여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는 일본 토지에는 인삼 재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양잠(養蠶)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로 그 희망은 원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04년 러일전쟁 후에 오구라(大倉) 남작의 소개를 받아 데라우치 백작(당시 육군 대신)을 알게 되어 고등통역으로 병참감(兵站監) 오타니(大谷) 소장에게 소속되어 통역을 담당하면서 어용상인으로서 술집을 경영하며 무한한 야심을 품고 시세 변화를 관망했다. 당시의 경성수비대 사령관 사이토(齋藤力三郎)와 손을 잡고 친일파 조선인을 조직하여 일진회를 조직하려 하였다.

스스로가 일진회에 입회하여 다수단체를 장악하여 실세인 동학도 일파의 수장인 이용구와 암묵적 계약을 하고 거짓 사상을 선전하여 민심 규합에 노력하였는데 몇 개월 만에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공사관 방면에 크게 반대했던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 발기회를 성대하게 용산의 평원정(平遠亭)에서 개최했다. 당시 사이토 대좌의 목적은 일진회를 정치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의철도를 신속하게 개통하여 군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인부(人夫)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계획은 훌륭하게 성공하여 경의철도는 예상 외로 빨리 건설되었다. 그 공은 야마네(山根) 씨의 월미도가교 설립에 비할 정도였다. 이것은 일진회 회원들도 마지막까지 알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그 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단체는 점점 더 확대되어 마침내 송병준 씨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단체로 변화하여 조선의 제반 시설에

관여하고 정부 대신을 탄핵할 뿐만 아니라 세력을 떨치고 혹은 현관(顯官)의 사택을 포위하기도 하고 혹은 궁성까지 진출하여 시위운동을 하는 등 여러 종류의 불온한 행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정부는 크게 공포를 느껴 그 처치를 위해 하세카와(長谷川) 군사령관에게 간청하여 그 진무(鎮撫)를 의뢰하기에 이른다. 1908년 한 사건으로 하세카와 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경성현병대에 구금당했으나 수일 후 이토 통감의 명령으로 고야마다(小山田) 현병대 독단(獨斷)으로 석방되었다. 그리하여 현병대장은 바로 근신에 처해지고 마침내는 정직(停職) 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송병준은 군사령부와는 연을 끊고 통감부의 어용이 되었다.

1907년 박제순 내각이 경질되고 이완용 내각이 조직되자 일약 농상공부대신이 되었다. 말하자면 정묘정변에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앞장서서 단행하여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일본으로부터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고 평양홍업소 총재를 명받았다.

황태자 전하(이왕 세자) 일본 유학 중에 동경에 따라가 전하를 모시고 종1품에 승급하였다. 1908년 6월 내무대신으로 전직하고, 1909년 1월에 이왕 전하의 서남지방 순행에 즈음하여 열차 내에서 시종무관(侍從武官) 어담(魚潭)과 논쟁 끝에 충돌하여 격투를 벌였는데 이 일이 후세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송병준은 내부대신을 사직하고 왕세자 전하의 내부 명으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한성(漢城) 정계를 떠나 동경으로 건너가고, 시종무관 어담은 수개월간 징계성 휴직을 당하였다. 같은 해 8월 가회동(嘉會洞) 취운정(翠雲亭)의 야회에서 오쿠보(大久保) 사령관, 총리대신 이완용 씨에게 송병준 씨의 내각 등용을 의뢰하여 바로 중추원고문이 되었다. 이토 통감이 군부대신인 이병무(李秉武)에게 의뢰하여 어담은 군부부(軍部附)에 복귀시키고 송병준 씨는 계속해서 동경에 있게 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귀국하자 일진회를 활용하여 병합선언을 하였으며, 합방 후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왕세자 전하의 결혼 이후 이전의 이사(貳師)⁹⁾ 관계에 의해 작위를 올려 백작이 되었고, 이후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고, 언제나 이완용 후작과 세력을 경쟁했고, 이왕직에 대해서는 왕가의 외척과 결탁하여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

1919년 만세소요 후에는 내선차별철폐운동에 크게 열중하여 자신 스스로를 정무총감이 되게 하려는 운동을 하며 도쿄에 건너가 중앙정계에서 크게 활약했는데 불행하게도 공을 이루지 못하고 1925년 봄에 남산정(南山町) 자택에서 병사했다. 학문을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상식도 있었고 품위도 있으며 용모가 청수하여 언뜻 보아 귀공자다운 면

9)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종1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찬성이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된 관제에는 없었으나, 태조 4년 3월의 기사에 '세자 이사'라는 관직이 나온다.

모가 있었다. 그 시비(是非)는 잠시 제쳐두고 여하튼 이조 말의 한 명의 괴걸(怪傑)이라 불렸다. 자산은 백만 원 이상 소지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정치운동에 경도하여 다액의 부채가 있다고 한다. 아들은 중추원 참의 송종현(宋鐘憲)으로 작위를 승계했다.

이왕직(李王職) 사무관(왕세자부), 정4위 훈2등 백작 고희경(高羲敬) (본관 제주, 중인)

씨는 경성 출생으로 고(故) 자작 고영희(高永喜) 씨의 아들이다. 1892년 관립육영공원(영어학교)에 입학하여, 1894년 가을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1895년 외무아문주사(外務衙門主事)에 임명되었다. 아버지 고영희 씨가 일본전권공사로 근무할 때 수행하여 동경에서 약 반년간 주재하다가 귀국하여 영어학교교관이 되었다. 1897년 궁내부 주사에 전직하여 궁내부의 시종으로 승진하였으며, 또한 궁내부 참서관 겸 예식관(禮式官)이 되었다. 1899년에 정3품에 오르고, 궁내부 예식과장에 임명되었다. 영국특파대사 의양군(義陽郡) 이재각 후작(李載覺侯)의 수행원으로 런던에 갔었고, 귀국 후에는 이태왕 전하의 신임을 크게 얻어 이왕세자 전하(당시 영친왕)의 영어 교사로 근무하며 궁중 외교의 어전 통역을 전임하였다. 구미의 여러 나라에 대한 외교문서 및 전보 등의 기밀을 맡아 이태왕 전하와 구미 여러 나라와의 비밀외교는 거의 고희경 씨의 손을 거쳤다고 한다. 이처럼 신임이 높아져 1902년에 정2품으로 승진해서 예식원부경(禮式院副卿)이 되고 칙임관에 특진하였다. 1904년 가의(嘉義)에 오르고 예식원경에 올랐다.

당시에는 배일파로 지목을 받았지만 1906년 대사 이재완 후작을 수행하여 동경에 건너가 훈3등 육일장을 받고 심기일전하였고 나아가 미국당에 가담하여 왕실 보호를 한다며 미국함대의 육군부대를 상륙시켜 덕수궁의 뒷문 주위에 주둔시켰다. 표면적으로는 공사관 보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강석호(姜錫鎬)와 공모하여 미국공사 알렌과 교섭한 결과였다고 한다. 이때 이태왕 전하의 내탕금(內帑金) 과반을 소진시켰다고 전한다.

이토 통감은 씨의 호탕한 기질과 유창한 영어 실력을 보고 고희경 씨에게 통역을 맡겼다. 1907년 아버지 고영희 씨가 이완용 내각에 입각한 후 집안 번영은 말할 것도 없고 엄비의 신임은 점점 두터워져 왕세자 전하 곁의 특수한 일을 맡겼다. 이태왕 전하의 양위 후 영친왕이 황태자에 오르자 동궁대부의 자리로 특진하여 정2품에 올랐다. 그리고 왕세자 전하의 일본 유학 중 함께 동경에 주재하여 훈2등 육일장을 수여받았다.

1910년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관제개혁으로 이왕직칙임사무관이 되었고 그 후에도 여전히 왕세자의 곁에서 함께 동경에 주재하였고 친아버지는 자작을 수여받았다. 아버지 고영희 씨가 병사하여 고희경 씨가 작위를 세습하였고, 1920년 왕세자 전하의 결혼식에서 종래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히 백작으로 승진하였다.

고희경 씨의 사람됨은 조용하고 단아하며, 외교술에 가장 뛰어나 일본에는 물론 영어에 이르기까지 유창하며, 시세의 추이를 따라가는 것도 기민하고 노력가이며 아부하는 것도 교묘하다. 오히려 사람들은 씨의 특유 기능을 고씨 집안의 유전적 특질이라고도 말하는데, 중인계급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역하지 말라는 가정교육을 받아 훈련되었기 때문이라며 질투하기도 했다.

많은 세력가에게 아부하고 세력이 없는 자들을 경멸하는 것이 있어서 동료 간의 비평은 좋지 않았다. 옛날에는 고 조동윤(趙東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동료들끼리 의사소통이 없다. 조동윤이 왕세자의 곁에 있을 때 오랫동안 동경에 주재하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공에 상을 주지 않은 것은 씨의 시기심(猜忌心)과 중상에 의한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 자산은 수백만 원 이상이라고 하며 자식은 다섯 명이 있는데 모두 상당한 인격자들이라고 한다.

종4위 자작 이완용(李完鎔) (본관 완산, 전주, 노론, 서인)

씨는 경기도 포천군 출생으로 덕안군(德安君) 이재덕(李載德)의 양자이며, 철종 대왕 본가의 근친(近親)에 해당하여 특별임용령에 의하여 조상의 힘으로 임관하여 참봉, 군수, 시강원시종관(侍講院侍從官), 비서관, 중추원의관, 내부회계국장, 부윤, 종정원경, 돈녕원사(敦寧院事), 태복사장(太僕司長) 등을 거쳐 1907년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에 임명되어 정2품으로 특서(特敍)되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며 정치상의 야심은 조금도 없고 단지 이왕가의 친척으로서 통례적인 명예직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왕가의 친척이라는 관계로 자작을 수여받았다.

원래 가계(家系)는 가난했는데 은사(恩賜) 공채(公債)도 사업 실패로 인해 탕진하여 지금은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작위에 상응하는 품위를 지키기 어려운 경지에 빠졌다 고 한다. 인간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고 당도 없으며 야심이 없는 선인(善人)이라 한다. 50세가 되어도 건강은 젊은이 못지않다고 한다.

종4위 자작 이기용(李琦鎔) (본관 전주, 노론)

씨는 경성 출생으로 완림군(完林君) 이재원(李載元)의 아들이며 대원군의 이종사촌에 해당한다. 천성이 영리하나 일찍부터 엄한 아버지와 헤어져 규율적인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귀공자였기 때문에 학덕이 동시에 뛰어났다. 1906년 사립 돈명의숙(敦明義塾)에 들어간 후에 왕세자 전하의 학우로 수학원에 전학하여 1910년에 졸업하였다. 일본어에 정통하였으나 연령이 어린 관계상 관의 경력에 영달(榮達)하지는 못하였다.

참봉시종 등을 거쳐 1910년 정3품에 오르고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이왕가의 친척이라 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아들은 적당한 스승과 친구로 선도하여 장래에 기대가 되는 청년귀족이 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과 자작에 대한 공채를 전부 부정하게 탕진했다. 현재는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왕직의 보조에 의해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상의 제사의례를 행한다는 보종당(保宗黨)의 일파가 되었다.

천성이 영리하지만 고 송병준 등과 결탁하여 채무를 이왕직에게 정리하라는 운동을 맹렬히 벌였는데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왕직에게는 하나의 걱정거리로 존재한다.

정4위 훈1등 자작 박제순(朴齊純) (본관 반남, 사망, 노론)

씨는 경기도 용인군에서 출생했고 문과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전념하는 선비라고 세상에 알려졌다. 박영효 씨와 같은 집안으로 박씨 집안의 유학자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의 일파이다.

씨는 한학에 소양이 있었고 또한 중국어에 정통해 있어서 중국의 외교관 직위에 참여했다.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로 명령받고, 천진종사관, 홍문관부교리, 사헌부장령, 천진독리통상사무, 공조참의, 이조참의, 성균관대사성, 호조참의, 참의내무부사, 인천부사 겸 감리통상사무 등을 거쳐 1889년 협판내무부사 종2품에 올라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5개국의 전권공사를 임명받지만 아직 부임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각 부의 참판, 목사, 부사, 감사(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청일전쟁 후에 씨는 어윤중 씨의 추천으로 경성으로 소환되었다. 1894년 외부협판에 임명되어 김홍집 내각 와해 후

일시적으로 세력을 잃는데 특유의 원만함에 의해 시세에 순응하여 1898년 외부협판에 재임용되고 그 후 대신에 올랐다.

그 후에 농상공부로 옮기고 다시 외부대신으로 복귀하였다가 육군참장, 의정부찬정 등에 임명되었다. 1901년 칙명을 받아 일본의 추계 대연습에 참관하고 특히 폐하를 알현 하였으며 후에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이것은 당시 경성주재 공사관부 무관 우사카와(宇佐川) 대좌(大佐)의 알선에 의해 조선무관을 일본의 육군연습에 참관시키는 것으로 그 효시가 되었다. 이것으로 한일 관계는 상당이 양호해졌고 나중에 외무대신으로 복직하여 의정서리를 겸직하였다가 1902년 내각에서 물러나 청국공사로 임명되어 북경에 부임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소환되어 외부대신을 맡게 되었다.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육군부장 등을 역임하여 세 번 외부대신을 역임하고 러일평화조약 후 이토 대사와 을사늑약(한일보호조약)이 체결되자 한국 외교권은 일본 정부에게 위임되었다. 소위 5조약이라는 것이다.

당시 참정대신 신분으로 맹렬한 반대를 한 사람은 한규설(韓圭爵) 한 명뿐이라고 한다. 원래 이 회의가 공사관에서 열렸는데 심야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여 이토 대사는 하야시 공사를 동반하여 하세카와 군사령관을 대동하고 기병, 헌병, 경찰관 등의 옹호 아래 한국의 왕궁에 들어가 어전회의 형식을 빌려 박제순 외부대신의 일언 하에 조선의 운명을 정해 버리게 되었다. 그 후 바로 한규설 내각을 해체하고 스스로 참정대신이 되어 내부대신 이지용 이하를 내각으로 조직하여 1906년 훈1등 팔괘장을 수여받고 그 후 궁내대신을 겸임하여 이태왕 전하의 양위문제를 토론할 즈음에 몰래 이태왕 전하에게 밀고하고 이토 통감에게는 자신은 이태왕 전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양위를 압박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이완용을 추천하여 중추원 고문으로 은퇴시켰다. 양위 후 1909년에 송병준 씨의 사직 후 다시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어 입각한다. 따라서 한일합방의 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이 있음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6년 화동(花洞) 자택에서 병사하였다. 박부양(朴富陽)이 1916년 9월 작위를 세습하고 현재 5위에 이르고 있다. 자산은 30, 4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정4위 훈1등 자작 조중응(趙重應) (본관 양주(楊洲), 사망, 소론)

씨는 경성에서 태어난 조선의 소론파 명문의 후예로, 친아버지는 조완희(趙完熙)라 칭하며 양주군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한학의 선생으로 교편을 잡으며 참봉이라는 판임관으

로 살았다. 조중옹 씨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고, 당파의 결탁인(結託人)에게 아부하기를 좋아했다. 당파관계상 항상 노론의 압박을 받는 것에 분개하여 기회를 얻으면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자신의 집안을 상당한 견식이 있다고 과장하고 허위의 생활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키야마(牧山) 씨가 편찬한 『조선신사명감』에서 조중옹에 대해 그럴듯하게 큰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1894년 김홍집 내각 성립에 즈음하여 김홍집 씨도 소론파였기 때문에 같은 파중의 유력한 청년의 한 사람을 내세우는 의미에서 조중옹을 일본에 유람 보냈다. 귀국 후에 외무아문참의에 임명되어 1895년 외부교섭국장, 안의 군수, 법부형사국장, 특별법원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김홍집 내각이 와해함과 동시에 일본에 망명하였는데 이 당시의 망명도 한국 조정의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유길준, 조희연(趙羲淵) 씨 등과 교섭하여 스스로를 망명자로 칭하며 중간에서 여러 종류의 운동을 실시한 결과 유, 조, 박 등과 마찬가지로 외무성의 보조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자작도 그 지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에 망명 중에는 고마바(駒場)농학교에서 학원외부생으로서 강습을 받았고 또 외국어학교의 조선어교사가 되었다. 일본어는 부인 광강자(光岡子)로부터 습득하고 간단한 말은 이해했다.

러일전쟁 후 1906년에 아무런 소식도 없이 조선에 건너와 한성 정계의 흑막에 참여하여 시국 구제책을 이태왕 전하에게 몰래 진언하고 박영효 씨와 연락을 취해 한국 정부의 고관다운 운동을 하였고, 조선 양반계의 유림을 망라하여 대동학원을 발기하는 등 여러 종류의 획책을 세우고 후에 이시쓰카 에이조(石塚英藏) 씨의 소개로 처음으로 통감부 촉탁 농사조사원의 직분을 얻었다. 이토 통감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특기인 달변을 가지고 통감과 친교를 맺는 것에 성공하였다. 1907년 이완용 내각 조직 때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의 추천으로 법부대신이 되고 후에 법부 및 군부(軍部)를 그만두고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단행하여 훈1등 옥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1908년에 농상공부대신에 전임되고 1910년 한국대훈위이화대수장을 수여받고 한일합방 때에는 가장 분주한 공로로 자작을 수여받았다. 당시 이완용 총리대신은 해를 당하여 병상에 누워 오로지 치료에 전념했다. 아직 쾌유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거도 부자유스러워서 조중옹 씨가 이를 대신하여 교섭을 실시했다. 통감부와 이완용 씨의 중요 임무는 조중옹 씨가 왕래하며 한일합방의 대사를 수행했다. 합방 후에는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민간사업으로서 사회의 유지를 망라하여 단체적 민족의 힘집결을 역설하며 1918년과 1919년에 배일을 민간에게 암시하고 고취시켰다.

1919년 만세소요 후 자택에서 병사하였다. 내지사관학교 출신 육군 보병 중위 조대호(趙大鎬)는 그 아들로 1919년 9월 작위를 세습하였다. 현재 정5위이며, 자산은 50, 60만 원이 있는데 부인인 광강자(光岡子)¹⁰⁾가 과반을 가지고 동경으로 돌아갔고 그 나머지는 조대호가 방탕하여 탕진했다고 한다.

중추원 고문, 정3위 훈1등 자작 민병석(閔丙奭) (본관 기흥, 노론, 서인)

씨는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태어난 민양식(閔兩植)의 양자이다. 문과 급제 출신자로 그의 관직 경력은 실로 경탄할 만하다. 민비전하의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력을 갖게 된 것은 천성이 온화하고 처세도 원만하며 사람을 받아들이는 아량도 있었기 때문이다. 1879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883년에 예문관검열에 임명되었고, 1881년에 규장각직각이 되었다. 임오군란에 민비가 난을 피해 충주에 은거할 때 민씨 집안의 일파가 결집하여 모의한 결과 중국에 특사(어윤중 씨)를 파견하여 이홍장을 움직여 대원군을 보정부에 구금시키고 민비는 황후에 복위시켜 민씨 집안의 번영은 예전보다 더했다. 이때 민병석 씨의 속부 민옹식 씨는 오로지 복위운동의 수훈이 있고 민병석 씨 또한 공로가 있어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되었다. 그 후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갑신정변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정계에 동요를 일으켰는데, 민씨 집안과 결합하여 이 난국을 견디어, 1885년에 민영익(민비의 조카) 내각에 들어가 호조참판(대장차관)이 되었다. 대원군의 일파와 수많은 횡책을 세워 대원군 특별사면 운동을 벌여 특사(조영하, 조동윤 남작의 생부로 1품보국이 됨)를 중국에 파견하여 이홍장을 움직여 대원군이 귀국하게 되는데, 이때 민병석 씨는 약 2년간 근신하여 침거하였다.

1888년 예조참판이 되어 규장각직제학, 동지돈녕, 강화군수, 육영공원변리(육영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1891년에 정2품 자헌(資憲)이 되었고, 1892년 의금부사를 겸하고 1893년에 평안감사(평안도지사)가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평양에서 청나라 장수 좌복위(佐復尉), 마옥곤(馬玉崑)을 도왔지만 평양이 점령됨과 동시에 대동강의 강에서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경성으로 보내어졌다. 당시 김홍집 내각은 이에 죄를 묻지 않고 민씨 집안을 관대히 다루었다. 1895년 민비사건이 일어나자 민씨 집안은 반감이 커졌고 마침내는 이태왕 전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사건을 일으켰다. 민병석 씨는

10) 일본인 부인 미쓰오카(光岡多汁)를 말함.

민씨 집안과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이 거사에 가담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궁내부특진관, 경연원시강, 시종원경, 의정부참찬, 홍문관학사, 정현, 파리박람회특파원, 농상공부서리대신 등을 거쳐 1898년 농상공부대신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해 궁내대신으로 전직하고 후에 군부대신을 겸직하고 겸직이 풀린 이후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학부대신, 전권공사, 법제교정소심정관, 내부대신, 군부대신서리 등을 역임하였고 일시 내부대신을 사직했다가 1900년에 다시 입각하여 농상공부대신이 되었다. 철도 원총재, 원수부검사국총장, 현병대사령관을 겸임하고 그로부터 군부대신, 탁지부대신, 서리의정, 표훈원총재, 의정부찬정,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1905년 일본국 시찰을 명받아 일본국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고 경성으로 돌아와 시찰 중의 칙명을 받아 이토 공작을 죄고 고문으로 초빙하는 운동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뒷이야기가 있다. 즉 일본과 조선의 책사가 서로 꾀를 내어 이태왕 전하의 친서를 이토 공작에게 전달하였다. 민병석 씨는 표면적으로는 시찰명령이었지만, 그 실체는 밀사였다. 그것은 오히려 이토 공작이 스스로 활동한 것이고 이태왕 전하는 피동이었다. 즉 당시 일본 정계는 조선 통감을 문관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지만 전승을 내세우는 군벌을 압박하기 위한 술책으로 이토 공작이 조선 황실의 신임이 두터운 것을 표명하기 위하여 친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

이 친서도 효력이 미약하여 이강공 전하 개선관병식(凱旋觀兵式) 배관(拜觀)의 명을 받아 도쿄에 도항하여 이태왕 전하의 간청을 메이지 일본국왕에게 알리고, 조선통감의 지위를 안전하게 하려는 몇 가지의 수단을 사용했다. 이런 종류의 밀서를 참모총장 고다마(兒玉) 대장에게 송부하여 군벌의 호의를 청했고 고다마 대장은 이것을 공개하여 외무대신에게 보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태왕 전하와 이토 공작과의 사이는 거리가 생기고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민병석 씨는 이때 원수부 검사국총장으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에 화재가 일어나 그것에 책임을 지고 전라도 고군산(古郡山)에 잠시 유배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유배가 풀리고 육군부장에 임명되고 표훈원 총재, 시종원경 및 내대신(內大臣), 제실제도국총재(帝室制度局總裁), 궁내부특진관, 비서감경에 순차로 임명되었다. 1907년 10월 대훈이화대수장을 수여받고 정1품 보국에 올랐고, 1908년 훈1등 서보장에 올랐다. 이완용 내각의 인사 이동에 의해 이윤용을 대신하여 궁내대신이 되었다. 1909년 친서 봉정을 위해 특사로 도일하여 일본국 훈1등 육일동화대수장을 수여받고 1910년 친서를 가지고 이토 공작의 국장에 참석하여 어명을 대신하여 도일하였다.

한일합방 당시에는 자작을 수여받고 관제 개혁에 의해 이왕직장관에 임명되어 봉직했

는데 1919년 만세소요 때 갑자기 작위를 사직하고 마침내는 관직을 사직하였다. 장관직은 그 바람대로 통제되었지만 작위 반납은 부결되어 여전히 귀족의 자리는 보유하였다. 최근 1925년에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맡고 있다. 자산은 50, 60만 원 이내라고 한다.

종4위 자작 이용직(李容稙) (본관 한산, 노론, 서인, 작위를 반납함)

씨는 경성 출생으로 조선 명문의 후예이다. 매우 과묵한 성격이어서 쉽사리 그 심중을 터놓지 않는다. 유학자로 가장하였지만 실은 이름을 매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과 출신으로 구한국의 정대신 조병세(趙秉世) 씨의 사위이다. 조병세 씨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될 때 순직한 대신이다. 이 순직(殉職)은 이용직 씨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관력을 살펴보면 1875년 권지승문원부정자를 명받고 1877년 시강원에 진출하여 어영랑청(御營郎廳), 용강현령, 시강원문학, 내무부참의, 병형이조참의(兵刑吏曹參議), 한성부소윤, 사헌부대사현, 한성좌윤, 의주부윤, 춘천관찰사, 중추원의관, 학부협판, 의정부참찬, 궁내부특진관, 태의원경 등에 역임하였다. 의정대신 윤용선(尹容善) 씨가 업비의 황후승계운동을 일으킨 동지로 연명하여 상소할 때 당시의 황태자 전하(지금의 이왕 전하)의 지위를 걱정해서 재야의 식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용직 씨는 숙고하여 장래에 황태자 보호의 당파에 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윤용선 의정대신의 무능과 부재를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이것은 민씨 집안 일파와 고 이용의파의 선동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궁정의 의결에 의해 형식상 황해도 철도(鐵島)에 유배되었다. 이것은 조정의 말단에 있는 자가 감히 정부백관의 수장인 일국의 의정대신을 탄핵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체면상의 장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씨의 상용수단이었다. 얼마 후 유배가 해지되어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어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1903년 정1품에 오르고 다음해 학부대신에 올랐으나 바로 사퇴하고 전라도 관찰사, 장례원경 등을 거쳐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1908년 이재곤(李載崑) 씨 대신에 학부대신에 임명되었다. 이것은 이완용 후작의 부인과 이용직 자작의 부인이 사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약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조소하여, 아버지 조병세 의정에게는 국가를 위해 순직할 것을 권유했지만 자신은 이완용 내각에 입각하여 한일합방 당시의 업적을 인정받아 이토 공작과 동반하여 김윤식 씨와 함께 동경을 유람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까지 이토 공작은 이용직 씨를 조선의 유학계의 중진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의 가쓰라

(桂) 내각이 성립하여 조선통감부의 관제개혁 결과 이토 통감은 경질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조선의 원로 김윤식 이하 유림의 중진인 이용직 씨를 보내어 이토 통감의 유임운동을 실시하게 하였으나 이 운동도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통감이 되고 이리하여 1910년 8월 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임명받았다. 후에 경학원부제학에 전직하였으나 1919년 만세소요운동 시 김윤식과 함께 조선독립 선언서를 발부하며 갑자기 배일의 기치를 올려 치안법에 의해 형을 받아 자작을 빼앗기고 형은 집행유예가 되었다. 실제로 늙은 여우처럼 변화에 민감한 요물이라고 일컬어 진다. 자산은 20, 3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정4위 자작 김윤식(金允植) (본관 청풍, 사망, 작위반환)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의 저명한 명문 집안으로 문과 진사급제 출신이다. 경응(慶應) 원년에 문과홍문관부수선, 진하특선교관(陳賀特宣敎官), 순천부사 등을 역임했다. 1881년 영선사(領選使)에 임명되어 학생과 장인들을 인솔하여 텐진(天津)에 건너가 공예미술에 관해 견학하고 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임명되었다. 그 후 강화유수가 되고 기기국총판(機器國總辦)에 임명되었다. 1883년 특명을 가지고 정2품에 올랐으며, 다음해 공조판서, 병조판서가 되었고, 이어서 독판교섭(督辦交涉) 통상사무(通商事務)에 임명되었으며, 1885년에는 전권대신이 되어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고 광주유수(廣州留守)를 거쳤으나, 1887년에 참소를 당해 면천군(沔川郡)에 유배되었다.

1893년 특사를 받고 1894년에 종1품에 오르고 외무아문(外務衙門) 대사로서 김홍집 내각에 입성하였다. 그런데 이태왕 전하가 러시아국 공사관으로 파천한 것과 동시에 정변이 일어나자 김홍집, 정병하(鄭秉夏), 어윤중과 함께 죽음을 피했지만 앞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것은 청일전쟁 후 김홍집 내각 성립 당시에 대원군은 김홍집과 함께 조선의 왕위를 이준공(李浚公)에게 맡기려고 계획을 꾸몄는데 어윤중(魚允中), 김윤식 등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고, 당시의 내각 총서 권중현(權重顯, 권재형(權在衡)이라고도 함)은 이것을 이태왕 전하에게 밀고하여 이태왕 전하는 어, 김 두 대신은 신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하여 굳게 믿었는데 민비사변에 즈음하여 민비 국모 폐위 문서를 김윤식 씨가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해졌다. 어윤중 씨는 사형에 처한다는 소식은 없었고 향리를 향해 길을 가던 중 경기도 용인군에서 인민들의 폭거에 의해 조난을 당하였다. 1901년 제주도에서 지도군(智島郡)으로 유배되어

18년을 보냈다. 1906년에 유배가 해제되어 경성으로 돌아오게 되어 제실제도국총재칙임 일등(帝室制度局總裁勅任一等)에 올랐고, 같은 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 제실회계감 사원경(帝室會計監查院卿)이 되었고, 1908년 4월 22일 중추원의장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7월 칙명을 받아 도일하여 이왕세자 전하에게 승인을 받아(이것이 이토 통감 유임운동) 귀경하여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국조보감편찬찬집관(國朝寶鑑編纂纂輯官) 겸 교정관(校正官)을 맡았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이후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맡고 그 후 경학원대제학(經學院大提學)에 임명되었지만 1919년 만세소요 때 이용직과 함께 조선독립선언서를 발부하여 하라(原) 내각 총리대신에게 서신을 보내 치안법에 저촉되어 작위를 잃는 처분을 받았다. 80세 이상이라 하여 자택에 감금시키는 형(刑)에 처했는데 그 와중에 병에 걸려 사망했다. 씨의 일생은 매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근대에서 희유의 학자로 세상에 알려졌다. 운양집(雲養集, 운양은 호이다)을 편찬하여 동경학사원(東京學士院)에서 수상하는 명문의 후예로서 학식이 있었고 덕망도 높았다. 정치가로서 만년에는 막을 내리고 왕년의 명성을 더럽히고 생을 마감했다. 가세는 빈곤했고 아들은 일찍 죽어서 양자가 집안을 상속해 간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고문, 정4위 훈1등 권중현(權重顯) (본관 안동)

씨는 충청도 영동군(永同郡)에서 태어났다. 한학에 소양이 있고 정부의 변화에 교묘하게 연동하여 세상에서 칭하기를 팔방미인이라 했다. 집안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일찍부터 재능을 갖고 있어 문필에 능하고 이를 가지고 세력을 다투었으며 총애를 받아, 김옥균, 박영효 등의 1884년 갑신정변 때에 부산 감리서 서기관이 되었다. 그 후에 일본인의 교섭이 빈번해져서 일본어는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의 사정에도 비교적 밝았다. 1898년 한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도일하여 체신국(遞信局) 사무를 시찰하고, 귀국 후에는 전보암호(電報暗號) 12권을 편집하고, 다음해 인천항(仁川港)방판통상사무(幫辦通常事務)에 임명되고, 같은 해 서리공사(署理公使)가 되어 동경에 주재하였다. 그러던 중 1892년에 오스트리아(당시 오지리국(奧地利國))과 수호통상항해 등 조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1893년에 귀국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후 김홍집 내각 때에 내각총서(內閣總書: 서기관)가 되고, 민비의 밀정으로서 정부의 행동을 은밀히 보고하여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일본공사관 및 김홍집 내각 행동의 탐사밀고 임무를 맡았던 인물은 이 권중현

과 이하영(李夏榮) 두 사람뿐이며, 이것이 이 두 사람이 궁중의 신임을 얻은 주요 원인이다. 후에 내무부참의(內務部參議) 겸 군국기무처회의원(軍國機務處會議原)에 임명되었는데 김홍집 내각의 와해 이후에는 군무아문협판(軍務衙門協辦), 육군참장(陸軍參將)이 되었다. 그 후 법무협판 겸 고등재판소 판사를 맡았고, 1897년 칙명을 받아 일본의 육군 대연습을 참관하고 귀국 후 한국 대군주(大君主) 폐하를 황제폐하로 존칭해야 한다고 상소하였기 때문에 재야의 선비를 모아 소청을 마련하였다. 이때 권중현 씨도 그 상소를 올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공로로 1년 후 특령으로 정2품에 오르고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서 일약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에 승진하였다. 1899년 의정부찬정으로 옮긴 후 표훈원(表勳院)¹¹⁾ 창설로 첫 번째 부총재가 되었다. 이때까지는 모두 고민영환 씨의 사랑을 받아서 이처럼 영달한 것이었다. 당시 민영환 씨는 구라파에서 귀국하여 이태왕 전하를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慶運宮)으로 천궁(遷宮)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며 개혁을 도모할 때 마침 부하에게 편지를 보내야 했는데 신임할 수 있는 부하로서 권중현을 등용하게 되었다. 그 후 권중현이 혼자 독립하여 만사를 민씨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민씨는 매우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후 농상공부대신, 법무대신, 의정부찬정 등에 역임하고 러일전쟁 당시 육군부장에 승진하여 일본군 위문사가 되어 수행원 조성근(趙性根), 노백린(盧伯麟) 등과 함께 랴오양(遼陽), 뤄순(旅順)에 부임하여 훈1등 팔괘장(勳一等 八卦章)에 오르고, 그 후 군부대신, 농상공부대신을 역임하고, 1907년 5월 박제순 내각 사직으로 인해 그만두고 중추원 고문을 임명받았다. 칙명에 의해 일본박람회를 시찰하였다. 이것은 이태왕 전하 양위문제를 이완용 내각에 양여하고 정계의 풍운을 피하기 위해 도쿄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귀국 후에는 군대 해산 때문에 육군부장을 사직하였으며,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고, 그 후 대세를 자각하고 향리 영동군에 은거하였는데 향리의 선비들은 접근은커녕 매국적이라고 매도하여 거주하기도 힘들어 다시 경성에 돌아왔다. 1919년 독립만세소요 때는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어 갑자기 작위를 반납하고 독립파로 기울어 자작 작위를 잊게 되었다. 현재 귀족 신분은 유지되어 있고 자산은 50, 60만 원 내외라고 한다.

11) 조선 말기에 훈장·기장·상여 등의 일을 맡아본 관청.

총독부 중추원 고문, 정4위 훈1등 자작 이하영(李夏榮)

씨는 경상도 경주군에서 출생하여 매우 비천한 신분에서 영달(榮達)을 이룬 행운아이다. 무학으로 언문을 알지 못했다. 어릴 때 부모를 떠나 양산군 통도사(通度寺)에서 중이 되었다가 56년 후¹²⁾ 다시 부산에 표류하여 일본인 거류지에서 일본인 상점의 점원이 되어 일본어를 배웠고 또한 서양인 ‘미스노블’ 부인의 하인(심부름꾼)이 되었다. 주방에서 요리사의 조수가 되었다가 점차 향상하여 요리사가 되어 영어를 배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미스노블 부인이 폐하를 알현할 때 통역을 하여 궁중에 출입하게 되었고, 미스노블 부인의 추천에 의해 1886년 외부아문주사(外部衙門主事, 지금의 판임서기(判任書記))를 명받아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무위무관인 자는 궁중의 출입을 허락받지 못하므로 미스노블 부인 수행원이라는 명예직을 받게 된 것으로 외국인의 체면을 존중하여 주어진 이름이다. 이때까지는 한국 정부에서 이하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당시 서양인은 지금의 조선은행의 뒤편의 달성위궁(達成尉宮)의 기지에 병원을 세워 오로지 자선을 베풀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전도에 노력하고 있었다. 이씨는 천성이 영리하였기 때문에 서양부인을 맞이하여 앞날을 맡겼다. 부인도 또한 민비를 알현할 때마다 관리에 등용해 주기를 열심히 진언했고 마침내 그 결과 민비 전하께서도 이를 허용하여 궁중과 서양부인의 연락을 위해 이하영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1887년에는 상의원주부(尙衣院主簿), 사헌부감(司憲府監), 전환국위원(典圜局委員), 주차미국공사관서기생을 거쳐 주차미국서리전권공사로 영전하여 미국에 부임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부인들이 민비 전하에게 간청한 결과로 1890년 금의환향의 목적으로 경주 군수를 하려고 운동했지만, 경주군이 일등군(一等郡)이라는 것 때문에 허락받지 못하고 경남 용천의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후에 전북 흥덕현감에 전직하여 1894년 청일전쟁 후에는 씨가 일본어에 정통하다는 것으로 외부의 주임주사가 되어 민비의 밀정으로 하나후사(花房) 공사 및 이노우에(井上) 공사 등에게 민비의 심부름꾼으로서 수없이 많은 교섭 임무를 맡아 공사관에 출입하고 궁중의 신임이 매우 높아져 정부대신을 능가하게 되었다.

1895년 궁내부 영선사장에 임명되어 일본공사관 및 러시아공사관에 궁중의 사신으로 누누이 출입하여 정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밀외교를 행하게 되었고 김홍집 내각은 이를 매우 우려하였지만 민비 전하의 신용이 너무 깊어서 방책이 없었다고 한다. 김홍

12) 필자가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집 내각 와해에 즈음하여 궁내부 회계원장으로 옮기고 연이어 한성부 관찰사가 되어 이태왕 전하께서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그 공로가 많음을 인정받아 1896년 일본주차전권공사에 임명되어 망명자와 일본유학생의 행동을 조사, 밀고하였다. 1897년에 영조(英照) 황태후(皇太后) 폐하 장례식에 특명대사로 참석하였다가 그 덕분으로 일본 황실로부터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정2품에 특진하고 중추원부의장이 되었고, 그 이후 장례원경에 전직하고 후에 다시 중추원의장에 승진하였다. 후에 의정부찬정, 일본국전권대사가 되고 1899년 정현(正憲)에 오르고, 1903년에 궁내부특진관, 외부대신서리에 임명되었다. 이때까지는 배일자의 거두로서, 항상 일본에 망명한 여러 유학생을 일본 정부와 교섭하여 조선에 귀환시켜 형을 집행할 것을 주장하여 이태왕 전하를 기만한 불충스러운 악한이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관직을 탐하게 되고 무학무지임에도 불구하고 실로 강첨무비(剛瞻無比)의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4년 러일전쟁 후 통감부 고문 미국인 스티븐 씨의 추천으로 외부대신에 임명되고, 1905년 다시 훈1등 팔괘장을 수여받고 외교권을 일본에 양여할 것을 예기하여 법부대신으로 옮겨 박제순 내각 경질과 함께 재야로 물러났다. 이태왕 전하의 양위 후 중추원고문에 임명되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이때 도덕상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하영 씨가 빈천한 시절 결혼한 처와 그 적자를 이유 없이 폐하고 첨과 서자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2년 여의 재판을 하여 부도덕한 재판을 거쳐 그 비열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조선귀족령에 의해 상속할 아들을 궁내성에 신고할 때 애첩의 아들 이규원(李圭元)을 아들로 신고하여서 문제가 되었다. 아들 이규삼(李奎三)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소송을 건 일이 발생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영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하영 씨가 이전에 일본 공사 때에 그 후첩을 정실부인으로 사칭하여 황후폐하를 배알하게 하여 그 이후로 식사 때 동석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어서 부당하면서도 이것을 증거로 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이하영을 비웃는다고 한다.

자산은 백만 원 이상 있다고 하는데 계승자 이규원 씨가 인천에서 현미교환(玄米相場) 장사에 실패하여 현재 많은 빚이 있다고 한다. 현재 총독부의 중추원(친임대우(親任待遇)) 고문이다.

종4위 훈1등 자작 이근택(李根澤) (조선 무가(武家), 노론, 서인, 사망)

씨는 충청도 충주 출생으로, 의정부(議政府) 찬정(贊政) 이민승(李敏承) 씨의 둘째 아들이다. 아들이 다섯 명인데 그 중 대신에 오른 것은 세 명이며 나머지 두 명도 칙임관 이상의 고위관직을 역임하는 등 한 가문의 번영이 요즘 보기 드문 집안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래 무가의 명문의 후예로 구한국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尗) 씨는 이근택 씨의 숙부에 해당하며 성격이 영리하여 어릴 때부터 권모술수에 뛰어났는데 그 수완이 악랄하여 자신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가령 그 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여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 등 참으로 부도덕하기 그지없는 탐관오리라는 세평을 받았다.

임오군란(1877년) 때에 민비가 난을 피해 충주군(忠州郡) 안교영(安教榮)의 자택에서 침기 중일 때 집 앞에 흐르는 강에서 낚시를 하며 시세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에 이근택이 나타났다. 이근택은 당시 20세 전후의 청년이었는데 민비라는 것을 모르고 매일 낚시에 따라다니며 도와주어 친절하게 대하자 민비의 마음에 크게 들어 하루는 이근택에게 당신은 양반인가 하고 묻자, 씨는 경성사람인데 지금은 병이 있어 요양을 위해 이곳에 와 있다고 말하고 또한 신분 등에 대해 속임 없이 말하자 그 후부터는 민비의 총애가 점점 깊어졌다. 씨는 또한 그 부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단지 경성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더 친절하게 대하며 인연을 맺어 민비를 숙모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때 민비 나이 34세로, 얼마 안 있어 대원군은 보정부로 보내지고 제물포(인천)조약이 체결되고 민비는 환궁하였다. 씨도 함께 상경하여 1883년 12월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고 후에 희천군수(熙川郡守), 길주목사(吉州牧使), 당상선전관(堂上宣傳官), 무승지, 충청수사(忠淸水使), 총어병방(摠禦兵房), 한성우윤(漢城右尹), 병조참판, 부평부사(富平府使)를 역임하였다.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수많은 죄과가 있어 파면이나 휴직 등의 징계가 있었지만 그 숙부 한규설의 큰 형인 한규직(韓圭稷)(갑신정변 때 사망)이 크나큰 세력가로서 민비의 총애가 깊었기 때문에 항상 비호해서 큰 지장은 없었지만, 나중에 폭거가 심해져 많은 인민을 살상하고 금전을 탐하는 등 매직사건 등을 수차례 일으켜 마침내는 암찰소(暗察所)의 상계에 의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 후에 유배가 풀려 귀경하였고 당시의 내각에서 이전에 발휘했던 수완을 발휘하여 잠시 영락정(永樂町)에서 목면사 등의 포목점을 경영하였다. 당시 조선의 양반으로서는 상법을 실천한다는 것이 전무한 시대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1896년 김홍집 내각 와해와 함께 바로 친위대(親衛隊) 제3대대장이 되고 그 후에 한성판윤(漢城判尹), 함경북도 관찰사, 중추원의관 경부협변(警部協辨), 경부대신서리, 육군참장, 평리원재판장서리(平理院裁判長署理) 등을 거쳐 1902년 정2품에 오르고 뒤이어 의정부찬정, 경위총관(警衛總管)에 발탁되고, 원수부검사국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육군부장, 군부대신 등에 올랐다.

이것은 모두 이태왕 전하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후 악랄한 배일정책을 알려주고 친일당과 망명자 등 이전 일본인과 관계가 있었던 자들은 전부 잡아들여 고문하고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것이 많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씨는 엄비의 여관(女官)¹³⁾ 시대부터 깊이 관련되어 형제의 인연을 맺었고 특히 영친왕(지금의 왕세자 전하)출생 후에는 엄비와 결탁하여 이태왕 전하의 재혼을 막고 종래 왕실의 외척인 민씨 집안의 일파에게 압박하여 엄비의 황후 승계운동을 주장하였는데 그 세력이 실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사직하고 과천군(果川郡)에 은거하였다. 당시 공사관 소속 무관(武官) 이지치(伊地知)¹⁴⁾ 대좌 및 보좌관 노즈(野津) 중좌는 이근택 씨를 데리고 와서 이용익(李容翊)과 함께 일본에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명령하여 일본의 사정을 상세히 알게 하려고 이태왕 전하의 승낙을 받아 관사에 초빙하였는데 이용익 씨는 왔지만 이근택은 은거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용익 씨만 현병보호 아래 도쿄로 행해 출발했다. 이때 이근택을 보내지 않은 원인은 이근택 씨가 당시의 공사관의 통역관 시오카와(塙川)와 암묵의 계약이 있었고 이것으로 알선된 결과 하기하라(萩原) 서기관을 움직여 반대를 주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공사관의 주장은 일본이 외국의 대관을 위압적으로 구인(拘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군인파와 반목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한일외교는 모두 무관(이지치 대좌, 노즈 중좌, 경성주재원 대좌, 경성수비대사령관 사이토(齋藤) 대좌 등)이 현저하게 세력을 펼치고 있었고, 공사관 측의 질투를 사서 상호간에 반목한 결과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더욱이 풍문에 의하면 이근택과 시오카와 사이에는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다는 세평이 있는데 얼마 안 있어 시오카와 통역관은 파직되고 그 후 하세카와 군사령관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근택은 일본유학생 사관학교출신인 사람들과 결탁하여 윤치성(尹致誠), 이갑(李甲), 유동렬(柳東說), 노백린(盧伯麟), 김응선(金應善) 등을 사용하여 군사령부 방면의 양해를 얻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종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자유의 몸이 되

13) 궁중에서 임금·왕비·왕세자를 가까이 모셔 시중들던 사람.

14) 원문에는 伊知地, 오기로 보아 수정.

어 다시 등용의 기회를 얻었고 이용익도 동경에서 돌아왔다.

1905년에 호위대총관(扈衛隊總官)이 되어 궁내부특진관, 주전원경(主殿院卿),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이 되었다. 황태자비 전하 전(前) 이왕비의 장례식 후 훈1등 팔괘장을 수여받고 농상공부대신, 법부대신에 오르고 사법권 위임 후 일본국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은 후 군부대신에 전임되어 반년을 지냈다. 그려던 중 자객을 만나 거의 죽음상태에 이르렀으나 한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나았다. 범인 및 그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1906년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박제순 내각 때에 박제순 씨와 서로 맞지 않아 대신을 사직하였으나 하세카와(長谷川) 군사령관을 찾아가 진언하여 중추원 의장에 복직하고 궁내부특진관으로 옮겼다. 또한 시종무관장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후 조동윤 부장이 시종무관장에 임용되어, 이근택 씨는 중추원고문이 되었다. 한일합방 때에 조선귀족령에 의해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7년 경성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자산은 50, 6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아들 이창훈(李昌薰)이 상속하였고 1920년 2월 작위를 세습하였다. 현재 정5위이다.

종4위 훈1등 자작 임선준(任善準) (본관 풍산, 노론,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고(故) 이조참판(吏曹參判) 임대준(任大準)의 동생이다. 문과 출신으로 명문의 후예이다. 성격은 온화하고 학문에 독실했다. 어릴 때부터 수신 면학하는 것에 충실했고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위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말하자면 빈곤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즐기고 고결한 지조를 가지고 있었다.

내무참의, 비서승, 형조참판, 현령부사(縣令府使) 등을 거쳐 성균관장이 되었다가 1907년 이완용 내각에 입각하여 내무대신이 되었다. 임선준 씨의 친형 임대준(일찍 사망) 씨의 딸이 이완용의 장남 이승구(李升九) 씨와 결혼하여 친인척관계가 성립된 덕분이라고 한다. 같은 해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단행하여 일본국으로부터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조선 훈1등 태극장(朝鮮 勳一等 太極障)을 수여받고 종1품에 특진하였다.

1908년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에 오르고 법부 및 군부를 폐지할 때 이완용 씨와 의견을 달리하여 1909년 6월 사직을 하고 재야에 돌아갔다. 1910년 8월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5년 경성 궁정동(宮井洞)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씨는 생전에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력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적지만 유학자 풍은 있었다. 한 명의 옛 선비

였다. 자산은 20, 30만 원 정도 있었으나 승계자인 임낙호(任洛鎬)가 방탕하여 현재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 임낙호가 작위를 세습하기는 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고치지 않으면 그 지위를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종4위 훈1등 자작 이재곤(李載崑) (본관 완산, 전주, 노론)

씨는 경기도 양주군에 태어났으며 현령 이신응(李慎應)의 아들이다. 즉 완순군 이재완(完順君 李載完)의 본가로, 그의 친동생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가주서(假注書)를 받고 홍문관교리, 장례원정(掌禮院正), 고산현감, 거창부사, 나주목사, 사복사정(司僕寺正), 예조참의,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좌우부승지(左右副承旨), 궁내부참의, 중추원의관, 공주(公州)관찰사, 춘천관찰사, 분비서원승(分秘書院丞), 태복사장(太僕司長), 궁내부특진관, 내부협변, 법부협변, 학부협변, 서북철도국의사장(西北鐵道國議事長), 의정부찬정, 회계원경, 특명전권공사, 내장사장(內藏司長), 중추원찬의, 제실회계심사국장(帝室會計審查局長), 중추원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씨는 유학자를 가장하여 권모술수에 능한 책사로서 학식이 있었으며 고전에 정통했다. 또한 달변가였고 이에 더해 왕실의 근친으로서 그 친형인 이재완은 이태왕 전하의 사촌이라는 관계로 세력을 가졌지만 지금 나열한 것과 같은 자리가 모두 친형 이재완 씨의 원조에 의한 것은 아니다. 친형 이재완 씨는 욕망이 컸지만 조금 무능에 가까워 항상 동생 이재곤 씨의 참모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원래 보종당(保宗黨)이라 자칭하여 이왕가의 중심인물이 되었지만 장기인 간계를 부려 안심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가 1897년에 이태왕 전하에게 황제의 존호(尊號)를 올려 황위에 오르자 국호를 고쳐 대한이라 칭하고 연호(建陽)¹⁵⁾를 고쳐 광무(光武)¹⁶⁾라 칭했다. 덕수궁의 정문을 문호(대안(大安))를 고쳐 대한(大漢)이라 칭해야 한다며 무척 노력하여 전하의 환심을 사고 그 공로로서 요직을 놓지 않고 권력의 일세를 누렸다.

이러한 개정 이유의 설명서에서 말하기를, 조선이라는 국호는 기자(箕子)를 봉했던 것에 대한 국호이기 때문에 당당한 독립국의 국호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새로 한국이라고

15) 1896년부터 사용된 조선시대 최초의 연호.

16) 1897년에 제정된 대한제국의 연호.

한 것은 신라, 고구려, 백제를 통일한 고래(古來)의 위업을 지금 전하(殿下)는 중국의 간섭을 극복하고 독립제국의 황위에 올라, 지금까지의 왕 중 미증유의 과업을 이루었다. 따라서 삼한의 통일을 오늘날에 다시 이룬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연호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데, 건양은 김홍집 등의 내각에서 사용한 창황(創皇) 근거가 없는 연호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해의 연호에는 이전에 없었던 불상사가 많았기 때문에 길조의 연호가 아니다. 또한 광무라 바꾸는 이유는 옛날 중국의 한나라 때 광무제가 국가 중흥의 위업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하와 동일한 위상이며, 때문에 이것을 모방한 것이고 문호(대안(大安))를 대한(大漢)이라 고치는 것은 연호를 광무 즉 대한의 광무제와 동일하다는 의미라고 설명서를 작성하여 상소하였고 허락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일은 축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당시는 국가가 망하느냐 성하느냐의 위급한 순간으로 뜻있는 신하는 폐하를 보필하여 정치의 쇄신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왕가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탐하여 간책을 부려 오로지 미사여구로 장식하여 전하의 환심을 사서 총애를 받으려는 욕심으로 국가의 대사를 망각한 것은 불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조직되자마자 입각하여 학부대신이 되었다. 이것은 이완용 씨가 이태왕 전하 양위의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새 내각을 조직하려할 때 매우 인선에 고심하였다. 즉 문제가 왕위에 관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왕실의 중진을 견제하려는 책략으로 즉 이재완을 견제하려는 책략으로 그를 위해 친동생 이재곤을 내각대신에 임명해야 할지 혹은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런데 이재곤과 교섭한 결과 의외로 쾌답을 얻어 이완용 씨는 거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안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입각한 이재곤은 이완용 총리대신과 함께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압박하고 이를 단행하여 일본으로부터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고, 조선 훈1등 태극장에 올라 정1품에 특훈을 받았다.

이것으로써 옛날에 말한 국호와 연호 개정을 주장한 왕가의 친척인 이재곤은 세상 사람들 모두 그 변심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1908년 칙명을 받아 왕세자 전하의 사신으로 도일하고 다음해 1월 학부대신을 사직하고 1910년 중추원고문에 임명되었다. 한일합방에 즈음하여서는 조선귀족령에 의해 자작을 수여받았고 1919년 만세소요 때에 본색을 나타내어 급변하여 권중현과 함께 작위 반납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총독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현재는 그 동생의 둘째 아들 이권용(李權鎔: 스웨덴 철

학박사)을 각 방면에 활동케 하여 크게 배일운동에 가담하고 있다. 이왕가 종약소(宗約所)의 흑막인 보종당의 필요를 선전하여 이왕가의 결합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자산은 50, 6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중추원 고문, 종3위 훈1등 자작 윤덕영(尹德榮) (본관 해평, 노론)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고(故) 성균진사(成均進士) 윤철구(尹徹求) 씨의 둘째 아들이다. 즉 부원군 후작 윤택영(尹澤榮)의 둘째 형으로 의정대신 윤용선(尹容善) 씨의 손자로서 창덕궁 이왕비 전하의 둘째 삼촌(仲父)에 해당한다. 문과 진사급제 출신으로 문필에 능하고 기략이 있다. 조선의 명문 중의 명사로 사람을 포용하는 아량이 없고 교만하다는 세상의 평판이 있었다. 안중에 사람이 없고 자존심은 매우 강했고 말하자면 재능이 뛰어나서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 관력은 대강 다음과 같다.

1894년 조선 마지막의 문과에 등제하여 다음해 비서감 우비서랑에 올라 민비의 명령에 의해 궁내부에서 파견하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되어 이지용(李址鎔), 민영철(閔泳喆) 등과 동반하여 도일하여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민비 사건이 일어나 귀국하여 이태왕 전하가 러시아공사관에 옮긴 후 박정양(朴定陽)내각에 들어가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겸 참서관이 되어 6품에 올랐다.

1897년 시강원시강관(侍講院侍講官)이 되어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홍문관시강(弘文館侍講)에 전임하고 나아가 비서원승(秘書院承), 봉상시부제조(奉常寺副提調), 농상공부 참서관, 태복사장(太僕司長) 등을 거쳐 내부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올랐다. 1900년 법부법무국장(法部法務局長), 비서경(秘書卿)에 전임하여 가의 품계(嘉義階)에 오르고 전선사 부제조(典膳司副提調)를 겸임하였으며 후에 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 서북 철도국참사장, 경기도관찰사, 철도원부총재가 되었다.

이어서 지계아문부총재(地契衙門總裁)를 거쳐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로서 비서원경(秘書院卿)에 전임하고 내장원감독(內藏院監督), 시강원첨사(侍講院詹事)를 겸하고 정2품에 올랐다. 러일전쟁 개전에 즈음해서는 의정부참찬에 전임하고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평리원재판장(平理院裁判長)을 겸하였다. 얼마 안 있어 의정부찬정, 장례원경, 시종원경을 역임하고 조부 윤용선의 상(喪)을 치르면서 잠시 관직에 오르지 않고 자중하던 중 스스로가 내각을 조직하려고 정치운동을 벌였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형제들의 주택까지 앓고는 이해창가의 가옥 일부에 5명의 형제 전 가족이 모여 생활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

윤택영 씨의 딸이 황태자비에 옹립되자 여기서 윤씨 집안의 영광과 위엄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 씨는 바로 규장각학사(奎章閣學士) 겸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에서 일 약하여 태의원경이 되고, 정헌 품계에 올라 훈2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특히 친임관 대우를 받았다. 이태왕 전하 양위 후, 윤비황후(尹妃皇后)의 자리를 계승하기에 이르자 황후 궁태부(皇后宮太夫)를 겸임하고 훈1등 팔괘장에 올랐다.

1908년 시종원경에 전임하고 종1품에 오르고 다음해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승록 품계(崇祿階)에 올랐다. 1910년 정1품 보국의 영작을 수여받고 대훈위이화대수장을 하사 받았으며 이후 조선 궁중의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궁내대신으로 윤덕영의 명령 없이는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폐하의 섭정을 하듯 실권을 잡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궁내부를 폐하고 이왕직이 되자 특히 이왕 전하로부터 데라우치 총독에게 윤덕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나의 곁에 두고 보필해주는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하는 의뢰가 있어 장시사장이 되어 여전히 권리를 계승했다.

이것도 윤씨의 계략에 의해 나온 것이다. 이후 이태왕 전하가 상을 당하고 만세소요에 의해 윤씨에 대한 소문이 내외에서 일어났다. 즉 이태왕 전하를 윤씨가 독살하려 한다는 것으로 세상에 선전되어 공포를 떨칠 수 없어 민병석(閔丙奭)과 함께 (피해를 보아) 작위와 관직을 사직하고 세상에 자신의 결백 입장을 밝히려 하였다. 그리고 작위 반환을 총독부에 신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지만 직위는 사직하여 5, 6년간 무관으로 지냈다.

궁중의 출입을 근신하고 때때로 전하에게 문안을 드리는 정도에 그쳤는데 1925년 7월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복직하였다. 조선귀족 중 우수한 수완가로 이왕가의 친척 중 중심인물이 되어 항상 왕가의 친척을 조종하여 통일을 꾀하고 보종당(保宗黨) 일파를 일으켜 이재곤 등과 무엇인가를 꾀하려 하였다. 송병준 백작은 생전에는 항상 백작(伯爵) 모임에 가세하여 이완용과 대항하여 이완용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이 정략은 계속되고 있고 자산은 이백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현재 해동은행(海東銀行)의 은행장 겸 전무중역을 맡고 있으며 뒤에서 그 권리 행사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정4위 훈1등 자작 조민희(趙民熙) (본관 양주, 노론)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조선 명문 중의 대가(大家)이다. 고(故) 의정대신(議政大臣) 조병세 씨(趙秉世,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자 순직)의 조카로 이완용 부인의 친동생이다.